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대한 해설서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

2020년 12월 31일 개정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publishing@echr.coe.int에 연락해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전문위원(Jurisconsult)의 승인하에 작성되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0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www.echr.coe.int에서 [Case-law] - [Case-law analysis] - [Case-law guides]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목차

일러두기.....	6
I. 제8조의 구조.....	7
A. 제8조의 적용 범위.....	7
B. 사건을 소극적 의무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는가 적극적 의무의 관점에서 평가 해야 하는가?.....	8
C. 소극적 의무인 경우, 제한이 "법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10
D.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증진하는가?.....	12
E. 제한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13
F. 제8조와 유럽인권협약 및 의정서의 다른 조항들 사이의 관계.....	14
1. 사생활 및 가족생활.....	14
2. 주거 및 통신.....	19
II. 사생활.....	23
A. 사생활의 영역.....	23
1. 일반적 적용 가능성.....	23
2. 직업 및 영업 활동.....	25
B. 신체적, 심리적 또는 도덕적 온전성.....	29
1. 폭력 피해자.....	30
2. 재생산권.....	32
3. 강제치료 및 의무진료.....	33
4. 정신질환.....	34
5. 보건과 의료.....	36
6. 생의 마감 문제.....	38
7. 장애 문제.....	38
8. 장례와 사자 문제.....	39
9. 환경 문제.....	41
10. 성적 지향과 성생활.....	43
C. 프라이버시.....	43
1. 자신의 이미지와 사진에 대한 권리: 사진, 이미지 및 기사 게시.....	44
2. 개인의 명예 보호: 명예훼손.....	46
3. 데이터 보호.....	50
4. 개인정보접근권.....	51
5. 개인의 건강 정보.....	52
6. 정보기관 기타 국가기관에 의한 파일 또는 데이터 수집.....	53

7. 경찰의 감시.....	54
8. 경찰의 검문검색.....	56
9. 주거의 출입, 압수수색.....	57
10. 변호사-의뢰인 관계.....	57
11. 구금 및 수감 중의 사생활.....	58
D. 정체성과 자율성.....	59
1. 자기계발권 및 자기결정권.....	60
2. 혈통을 찾을 권리.....	60
3. 법적 부모-자녀 관계.....	62
4. 종교적, 철학적 신념.....	62
5. 원하는 외모.....	63
6. 이름/신분증명서에 대한 권리.....	63
7. 성 정체성.....	64
8. 민족 정체성에 대한 권리.....	66
9. 무국적, 시민권 및 체류.....	68
10. 국외추방 및 강제퇴거 결정.....	69
11. 혼인 및 부모의 지위.....	70
III. 가족생활.....	71
A. 가족생활의 정의 및 가족의 의미.....	71
B. 절차적 의무.....	72
C. 가족생활에 대한 판단재량.....	73
D. 가족생활 적용 영역.....	73
1. 커플.....	73
2. 부모.....	76
3. 자녀.....	77
4. 기타 가족관계.....	89
5. 이민 및 추방.....	93
6. 물질적 이익.....	97
7. 증언거부 특권.....	98
IV. 주거.....	99
A. 총론.....	99
1. "주거" 개념의 범위.....	99
2. "제한"의 예.....	101
3. 판단재량.....	102
B. 주택.....	103

1. 부동산 소유자.....	104
2. 임차인.....	105
3. 임차인의 동거인, 무단 점유.....	106
4. 소수자 및 취약계층.....	106
5. 주거 방문, 수색 및 압수.....	108
C. 사업장.....	111
D. 법률사무소.....	111
E. 언론인의 주거.....	113
F. 주거 환경.....	114
1. 일반적인 접근법.....	114
2. 소음 공해, 상린관계 기타 생활방해.....	117
3. 오염물질 및 잠재적 위험 활동.....	118
V. 통신.....	119
A. 총론.....	119
1. "통신" 개념의 범위.....	119
2. 적극적 의무.....	121
3. 일반적인 접근법.....	121
B. 재소자의 통신.....	122
1. 일반 원칙.....	122
2. 재소자의 통신제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25
3. 서신.....	126
4. 전화통화.....	127
5. 재소자와 변호사 간의 통신.....	127
6. 재판소와의 통신.....	129
7. 언론인과의 통신.....	131
8. 재소자와 의사와의 통신.....	131
9. 가까운 친척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통신.....	132
10. 재소자와 기타 수신인 간의 통신.....	132
C. 변호사의 통신.....	133
D. 범죄 관련 통신 감시.....	137
E. 개인, 직원 및 기업의 통신.....	139
F. 시민과 단체에 대한 특별 비밀감시.....	140
인용 판례 목록.....	146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8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해당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 국이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 154, 1978년 1월 18일,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ECHR 2016).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 89, no. 30078/06,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협약"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 (*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I. 제8조의 구조

협약 제8조 -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공권력은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HUDOC 키워드

추방(8) - 범죄인 인도(8) - 적극적 의무(8)

사생활에 대한 존중(81) -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81) - 주거에 대한 존중(81) - 통신에 대한 존중(81)

공권력(82) - 제한(82) - 법에 따라(82) - 접근가능성(82) - 예측가능성(82) - 남용에 대한 보호장치(82) - 민주사회에 필요한(82) - 국가 안보(82) - 공공의 안전(82) - 국가의 경제적 복리(82) - 무질서 방지(82) - 범죄방지(82) - 보건 보호(82) - 도덕 보호(82) -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82)

1. 제8조의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자신의 청원이 이 조항에 명시된 4가지 이익인 사생활, 가족생활, 주거, 통신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함을 진술해야 한다. 물론, 둘 이상이 문제되는 사안들도 있다. 첫째, 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가 제8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재판소는 해당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지 또는 그 권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에 관한 사건인지 검토한다. 권리의 행사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제8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한 경우이다. 그 제한은 위에서 제시된 목적들 중 하나의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제한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경우에 허용된다.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심사할 때, 재판소는 종종 제8조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과 협약 및 그 의정서의 다른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이익을 형량하여야 한다.

A. 제8조의 적용 범위

2. 제8조는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구체적인 권리가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8조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했다. 네 가지 권리의 각 범위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 일부 사건에서는 제8조에 명시된 4개의 이익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4개 장 중 1개 이상에서 언급될 수 있다.

B. 사건을 소극적 의무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적극적 의무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는가?

- 제8조의 주요 목적은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에 대한 이익이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한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Libert v. France*, §§ 40-42). 이러한 의무는 전형적인 소극적 유형의 의무로, 재판소는 이 의무를 제8조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Kroo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 31). 그러나 회원국은 또한 제8조의 권리가 사적 당사자 간에도 존중되도록 보장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Bărbulescu v. Romania* [GC], §§ 108-111, 민간 고용주의 조치에 관해). 제8조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공권력의 자의적인 제한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제8조가 국가의 이러한 제한을 억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소극적인 역할에 더하여, 특히 사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존중에 내재한 적극적 의무가 있을 수 있다(*Lozovyye v. Russia*, § 36). 이러한 의무에는 개인 간 관계의 영역에서도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예를 들어,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 75, 참조. 그러나 이 원칙은 *Marckx v. Belgium* 사건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음).
- 협약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원칙은 서로 유사하다.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제8조제2항에서의 목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Hämäläinen v. Finland* [GC], § 65; *Gaskin v. the United Kingdom*, § 42; *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 157). 소극적 의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재판소는 제8조제2항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즉 법에 따른 것인지,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분석한다.
- 적극적 의무의 경우, 재판소는 문제되는 이익의 중요성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극적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국가에 요구되는 적극적 의무의 내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일부는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에는 문제되는 이익의 중요성, 사생활의 "근본적인 가치" 또는 "본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인지 여부, 또는 사회 현실과 법률의 불일치가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있고, 국내 제도에서 행정과 법적 관행의 일관성도 제8조에 기반한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그 밖의 요소로는 주장된 적극적 의무가 해당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주장된 적극적 의무가 좁고 명확한지 아니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Hämäläinen v. Finland* [GC], § 66).
- 소극적 의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일정한 판단의 재량을 행사한다. 이러한 재량의 폭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존재나 정체성의 특히 중요한 측면이 쟁점이 되는 경우,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이 제한된다(예를 들어, *X and Y v. the Netherlands*, §§ 24 and 27;

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GC], § 90; *Pretty v. the United Kingdom*, § 71). 그러나 유럽평의회 회원국 간 당해 이익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해당 사건이 민감한 도덕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재량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다(*X, Y and Z v. the United Kingdom*, § 44; *Fretté v. France*, § 41; *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GC], § 85). 국가가 상충하는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또는 협약상의 권리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종종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될 것이다(*Fretté v. France*, § 42; *Odièvre v. France* [GC], §§ 44-49;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 77; *Dickson v. the United Kingdom* [GC], § 78; *S.H. and Others v. Austria* [GC], § 94).

8. 개인의 행위에 대한 보호의 영역에서 제8조가 확실히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판단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생활의 근본적인 가치와 본질적인 측면이 문제되는 심각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형벌조항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협약 제3조 및 제8조에 내재한 적극적 의무에 따라 강간을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형벌조항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수사과 기소를 통해 이를 실제로 적용할 의무가 있다(*M.C. v. Bulgaria*). 특히 어린이와 기타 취약한 개인은 실효성있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X and Y v. the Netherlands*, §§ 23-24 및 27; *August v. the United Kingdom* (dec.); *M.C. v. Bulgaria*).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재판소는 국가가 미성년자를 그에 관한 악의적 허위광고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K.U. v. Finland*, §§ 45-49).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의 아파트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아파트 안에 도청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 피해자의 신성한 주거에서 사생활의 가장 은밀한 측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대중에 유포함으로써 사생활을 심각하고 노골적이며 극단적으로 침해한 것, 그리고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모욕이라고 판결했다. 나아가, 청구인은 저명한 언론인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침해 행위들은 청구인의 언론 활동과 관련하여 그녀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 116).
9. 국가가 제8조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을 보호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는 범죄수사의 효과성과 관련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Osman v. the United Kingdom*, § 128; *M.C. v. Bulgaria*, § 150;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 117). 세 사건 중 마지막 사건의 경우, 재판소는 제8조에 대한 침해가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탐사보도 기자에 대한 위협적 행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당국에서 해당 위협이 청구인의 언론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누가 해당 위협을 가했는지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결했다(*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 119-120).
10. 개인 간의 덜 심각한 행위로서 심리적 온전성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국가는 보호를 제공하는 적절한 법절차를 실제로 유지하고 적용해야 하는 제8조상의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가 반드시 특정한 행위를 규율하는 효과적인 형벌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민법상 구제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ibid.*, § 47; *X and Y v. the Netherlands*, §§ 24 and 27; *Söderman v. Sweden* [GC], § 85; *Tolić and Others v. Croatia* (dec.), §§ 94-95 and § 99). 뿐만 아니라,

보건에 대한 권리의 경우 회원국은 이와 관련해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여러 적극적 의무를 진다.

11. 요약하자면,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에 관한 형사절차를 적용할 의무가 있음을 내포하는 제8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사적 당사자에 의한 심각한 위반행위의 혐의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관련 형사절차의 적용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8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사안에서 국내 기관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실 여부나 개별 조치의 불이행에 관한 주장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판단할 수도 없다(*B.V. and Others v. Croatia* (dec.), § 151). 재판소가 제8조에 의해 사적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형사절차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판결한 기존 판례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적 학대, 청구인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 혐의, 성인 남성이 13세 아동을 구타하여 여러 신체적 상해를 입힌 사건, 여성이 구타를 당해 머리에 여러 부상을 입고 입원하게 된 사건, 심각한 가정폭력 사례 등이 있다(*ibid.*, § 154, 더 많은 참조가 포함되어 있음). 이와 달리,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해칠 수 있는 개인 간의 덜 심각한 행위에 관한 한, 국가는 보호를 제공하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유지하고 적용해야 하는 제8조에 따른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가 반드시 특정 행위를 규율하는 효과적인 형벌조항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민법상 구제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Nove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 61).
12. 재판소는 제8조에 따른 국가의 절차적 의무도 명확히 하였는데, 이 절차적 의무는 회원국에 부여된 판단의 재량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와 특히 관련이 있다. 재판소의 해석에서 따르면, 협약상 권리의 향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국가기관들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이 규제 체계를 정함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장치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된다. 실제로, 제8조에는 명시적인 절차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한 조치를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8조에서 보호하는 이익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Buckley v. the United Kingdom*, § 76; *Tanda-Muzinga v. France*, § 68; *M.S. M.S. v. Ukraine*, § 70). 이는 특히 청구인이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Lazoriva v. Ukraine*, § 63).
13. 재판소는 유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해당국의 결정이 사생활이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행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청구국의 적극적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Nunez v. Norway*, § 69; *Osman v. Denmark*, § 53; *Konstatinov v. the Netherlands*, § 47).

C. 소극적 의무인 경우, 제한이 "법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14. 재판소는 공권력이 사생활과 통신을 존중받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Klaus Müller v. Germany*, §§ 48-51 참조). 이

표현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해당 국내법의 실질과도 관련이 있으며, 법의 지배와 양립할 것을 요구한다(*Halford v. Urgain*, § 49).

15. 국내법은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며 적절히 접근가능해야 한다(*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87). 국내법은 개인이 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Lebois v. Bulgaria*, §§ 66-67, 교도소 내부 명령과 관련해 더 많은 참조가 포함되어 있음.) 공권력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판소가 감시와 관련하여 명시한 바와 같이, 법은 공권력주체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비밀감시와 정보수집을 할 권한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 용어에 있어서 충분히 명확하여야 한다(*Shimovolovs v. Russia*, § 68). 재판소는 *Vukota-Bojić v. Switzerland* 사건에서 사고 후 보험회사가 청구인을 감시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국내법 조항은 명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6. 명확성 요건은 공권력이 행사하는 재량의 범위에 적용된다. 국내법은 개인이 민주사회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권력에 부여된 관련 재량의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Piechowicz v. Poland*, § 212). 청구인의 사건이 해당 법에 따라 최초로 제기된 사건이고 법원이 그 법과 관련된 EU법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것이 국내 법원의 법 해석과 적용이 자의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50).
17. 예측가능성의 경우, "법에 따라"라는 문구는 무엇보다도 공권력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 협약상 보장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인에게 적절히 고지할 수 있도록, 법은 그 문언상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 117). 예측가능성은 확신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Slivenko v. Latvia* [GC]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적어도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자신들이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리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또한 *Dubská and Krejzová v. the Czech Republic* [GC], § 171 참조). 이 문제에서 절대적인 확실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107). 또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법적 결과를 예측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요소로 청구인의 직업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Versini-Campinchi and Crasnianski v. France*, § 55). 적용이 문제되는 법률이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판소는 대등한 심급의 법원들에서 서로 다른 판례들이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Klaus Müller v. Germany*, §§ 54-60).
18. 또한 합법성은 제8조에 따른 개인의 권리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에는 종종 국가 차원에서 제8조에 따른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적극적 의무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아동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명확한 법령 조항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가 사생활에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Söderman v. Sweden* [GC], § 117).

19. 사건 당시 시행 중인 법 조항의 문언과 취지가 충분히 명확했더라도, 법원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 법 조항을 명백히 불합리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며, 제8조제2항의 의미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Altay v. Turkey* (no. 2) 사건의 경우 법 조항에 대한 확장해석은 합법성에 대한 협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57).
20. 사실관계 심리 결과 문제의 조치가 "법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는 재판소가 협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문제의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는지 또는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M.M. v. the Netherlands*, § 46; *Solska and Rybicka v. Poland*, § 129). 재판소는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한이 제8조제2항에 명시된 다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96). 또한 협약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그 제한은 불법적인 수단의 결과라는 점에서도, "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Blyudik v. Russia*, § 75).

D.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증진하는가?

21. 제8조제2항은 제8조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을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열거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협약 제8조제2항에서 제11조까지의 목적 중에서만 정당한 목적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재판소의 실무는 상당히 간결해질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S.A.S. v. France* [GC], § 114).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은 피청구국이 입증하여야 한다(*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94, *P.T. v. the Republic of Moldova*, § 29).
22. 예를 들어, 재판소는 정부의 목적이 인구 밀도로 인한 노동시장 규제일 경우, 이민정책은 제8조제2항의 목적 중에서 무질서의 방지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보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Berrehab v. the Netherlands*, § 26). 또한 재판소는 경제적 복리 및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모두 공향 확장과 같은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의 정당한 목적이라고 판결했다(*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21 – 산림/환경의 보존 및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한 경우는 *Kaminskas v. Lithuania* § 51 참조).
23. 재판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얼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베일로 완전히 가리는 것을 금지한 조치가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베일로 얼굴을 가릴 때 생성되는 대인관계 장벽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촉진하는 사회화의 공간에서 살아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인정했다(*S.A.S. v. France* [GC], § 122).

24. 하지만, 재판소는 *Toma v. Romania* 사건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언론이 재판에 앞서 구금된 자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정당한 근거를 루마니아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92). 재판소는 *Aliyev v. Azerbaijan* 사건에서 청구인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8조제2항에 열거된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83-188).
25. 일부 사건들에서, 재판소는 문제의 조치가 제8조제2항이 예상한 정당한 목적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나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그 자체로 제8조를 위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해당 제한이 가능한 모든 정당한 목적에 대해 비례원칙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므로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94-196, *P.T. v. the Republic of Moldova*, §§ 30-33)

E. 제한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26. 제8조의 권리에 대한 특정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재판소는 회원국의 이익을 청구인의 권리와 비교형량한다. 제8조에 관한 초기 주요 판례에서, 재판소는 여기서 "필요한(necessary)"이라는 표현은 "유용한(useful)", "합리적인(reasonable)" 또는 "바람직한(desirable)" 등의 표현과 같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문제된 제한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필요(pressing social need)"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각 사건에서 강력한 사회적 필요를 가장 먼저 평가하는 주체는 바로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판단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된다. 협약상 권리에 대한 제한은 다른 무엇보다도,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 한, 관용과 포용력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Dudgeon v. the United Kingdom*, §§ 51-53).
27. 이후 재판소는 문제의 조치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이유가 적절하고 충분했는지, 그리고 그 조치가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과 비례하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Z v. Finland*, § 94). 재판소는 제8조의 목적상 "필요성" 개념은 그 제한이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요건을 더욱 명확히 밝혔다. 제한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재판소는 국가기관에 주어진 판단재량을 고려하겠지만, 피청구국은 그 제한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사회적 필요가 있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Piechowicz v. Poland*, § 212). 재판소는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 179-184) 및 *Klaus Müller v. Germany*, § 66 사건에서 판단재량에 대한 기본 원칙을 거듭 밝혔다.
28. 정부가 취한 일반적인 조치에 관한 재판소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조치의 비례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소는 우선 그 기초가 되는 입법부의 선택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회와 법원의 심사의 질이 특히 중요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판단재량의 행사도 포함된다.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장치는 피청구국이 규제 체계를 정할 때 판단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결정하는 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재판소는 제한 조치를 결정한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와 제8조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을 충분히 존중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A.-M.V. v. Finland*, §§ 82-84).

F. 제8조와 유럽인권협약 및 의정서의 다른 조항들 사이의 관계

29. 재판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법적 쟁점을 정하는 주체이며, 청구인이나 정부가 제시하는 쟁점에 구속되지 않는다(*Soares de Melo v. Portugal*, § 65, *Mitov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49, *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 41, *Havel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 35). 따라서 재판소는 그 청구가 어떤 조항에 따라 심사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 114, *Sudita Keita v. Hungary*, § 24).

1. 사생활 및 가족생활

a. 제2조(생명권) 및 제3조(고문금지)

30. 다른 사람의 행위로부터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가기관의 적극적 의무에 - 일부 사건들에서는 제2조 또는 제3조에 의한, 다른 사건들에서는 제8조 단독으로 또는 협약 제3조와 결합하여(*Buturugă v. Romania*, § 44) - 사인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실제로 유지하고 적용할 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특히, *Söderman v. Sweden* [GC], § 80 및 그 판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들 참조).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은 도로교통 사고 사건에서, 대재판부는 제3조나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대신 제2조를 적용했다(*ibid.*, §§ 128-32).

31. 재판소는 제3조 및 제8조에 관한 판례에서 신체적, 정신적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Wetjen and Others v. Germany*, § 74, *Tlapak and Others v. Germany*, § 87, *A and B v. Croatia*, §§ 106-113). 재판소는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두 사건에서 자녀를 자주 체벌한 사실이 협약 제3조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가혹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Wetjen and Others v. Germany* § 76, *Tlapak and Others v. Germany*, § 89). 이에 따라 재판소는 제3조에 따라 학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경우 이를 훌륭한 조치로 여겼다. 하지만, 제8조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지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이론에 그치지 않도록 비례적인 조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Wetjen and Others v. Germany*, §§ 77-78; *Tlapak and Others v. Germany*, §§ 90-91).

32. 재판소는 어떤 조치가 제3조에서 금지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8조를 위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Wainwright v. the United Kingdom*, § 43, 알몸검색 관련). 특히, 구금

상태는 제3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경우에도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Raninen v. Finland*, § 63). 재판소는 종종 열악한 구금상태를 이유로 협약 제3조 위반을 인정해 왔는데, 감방의 화장실과 나머지 공간이 충분히 분리되지 않는 것은 열악한 구금 상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였다(*Szafrański v. Poland*, §§ 24 및 38). 재판소는 *Szafrański v. Poland*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른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박탈당한 경우 이러한 구금 상태는 국가기관이 청구인에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39-41).

33. 이와 유사하게, 건강권은 협약 및 그 의정서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회원국에게는 제2조 및 제8조에 의해 건강과 관련한 여러 적극적 의무가 있다. 회원국은 우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환자의 신체적 온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둘째, 필요한 경우 의료과실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제2조에 따라 보장된 생명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상해에 대해 제8조에 따라 적용된다(*Vasileva v. Bulgaria*, §§ 63-69, *İbrahim Keskin v. Turkey*, § 61, *Mehmet Ulusoy and Others v. Turkey*, §§ 92-94).
34. 제2조에 따라 생명권 침해 주장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는 제8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Solska and Rybicka v. Poland*, §§ 118-119). 국가기관은 제2조에 따른 효과적인 조사 요구와 조사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121). *Solska and Rybicka v. Poland* 사건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된 사망자 유해발굴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폴란드 국내법은 유해발굴을 명하는 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재판소는 그 제한이 "법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26-128).

b.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5. 제8조의 절차적 측면은 협약 제6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6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반면, 제8조의 절차적 요건은 사법절차는 물론 행정절차를 포함할 뿐 아니라, 특히 가족생활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보장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 또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Tapia Gasca and D. v. Spain*, §§ 111-113, *Bianchi v. Switzerland*, § 112, *McMichael v. the United Kingdom*, § 91, *B. v. the United Kingdom*, §§ 63-65, *Golder v. the United Kingdom*, § 36). 제6조와 제8조가 제공하는 보호수단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 조항 모두로 심사하는 것도 가능하다(*O. v. the United Kingdom*, §§ 65-67, *Golder v. the United Kingdom*, §§ 41-45, *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 41; *Bianchi v. Switzerland*, § 113 비교).

36. 하지만, 가족생활이 쟁점이고 청구인이 그 근거로 제6조 및 제8조를 제시한 사건들에서, 재판소는 제8조만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판소에 따르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제8조는 제한조치에 이르는 의사결정과정의 공정하고 제8조가 보호하는 이익들에 대한 적절한 존중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Soares de Melo v. Portugal*, § 65; *Santos Nunes v. Portugal*, § 56; *Havel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 34-35; *Wallová and Walla v. the Czech Republic*, § 47, *Kutzner v. Germany*, § 56, *McMichael v. the United Kingdom*, § 87; *Mehmet Ulusoy and Others v. Turkey*, § 109). 그러므로 재판소는 제8조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의 방식과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 41). 또한 국가는 부모와 자녀의 재결합을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Santos Nunes v. Portugal*, § 56).
37. 예를 들어, 소송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심리되었는지 여부도(협약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 제8조에 포함된 절차 요건의 일부를 구성한다(*Ribić v. Croatia*, § 92).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결정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청구를 제8조만으로 검토한 바 있다(*Mitov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49).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아예 취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을 청구인에게 부여한 결정의 집행절차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는지에 대해 제8조만으로 심사한다고 결정하였다(*Santos Nunes v. Portugal*, §§ 54-56).
38. 그 밖에도, 제6조와 제8조에 따라 제기된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몇몇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6조에 근거한 주장이 제8조에 근거한 주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Anghel v. Italy*, § 69, *Diamante and Pelliccioni v. San Marino*, § 151, *Kutzner v. Germany* § 57, *Labita v. Italy* [GC], § 187). 재판소는 *G.B. v. Lithuania* 사건에서,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존중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6조제1항 위반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113).
39. 재판소는 *Y. v. Slovenia* 사건에서, 성폭력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은 경우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개인의 온전성에 대한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사실심 법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했는지 심사하였다(§§ 114-116).
40.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에 관한 사건의 경우, 시간의 경과가 사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여 특별히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협약 제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안에 사건을 심리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이 의무는 제8조에 포함된 절차적 요건의 일부이기도 하다(*Süß v. Germany*, § 100, *Strömblad v. Sweden*, § 80, *Ribić v. Croatia*), § 92).
41. *Altay v. Turkey (no. 2)*, §§ 47-52 및 § 56 사건에서,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자신의 변호사와 비밀리에 접견할 권리를 제한당한 조치를 다투는 절차에 협약 제6조의 "시민의(civil)" 부분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토에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질을 "사생활"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재판소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68).

c. 제9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42. 협약 제9조가 사상, 양심, 종교 사안을 규율하지만, 재판소는 개인의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제8조와 관련될 수 있고, 그러한 신념들은 사생활의 가장 내밀한 모습들 가운데 일부와 관련되는 것임을 확고히 하였다(*Folgerø and Others v. Norway* [GC], § 98, 학부모에게 자신의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 당국에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협약 제8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함. 다만 당해 사안에서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신념을 알릴 의무는 없었음).

d. 제10조(표현의 자유)

43.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교형량해야 하는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론적으로, 뉴스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이 협약 제8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뉴스발행인이 협약 제10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실제로, 두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91,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23, *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77). 따라서, 판단재량은 이론상 두 경우 모두 동일해야 한다. 판례들에 나타난 관련 기준들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는지, 대상의 평판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 뉴스보도의 주제, 관련자의 과거 행동, 공표된 내용과 방식 및 결과, 또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사진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이 있다(*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90-93,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08-113;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9-95). 그 밖에도, 제10조에 따라 제기된 청구와 관련해, 재판소는 정보를 취득한 방법과 진실성, 언론인이나 발행인에게 부과되는 처벌의 중대성을 검토한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65). 이러한 기준들 가운데 일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련성이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과세정보에 대한 대규모 수집, 처리, 공표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ibid.*, § 166 참조),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들도 적용될 수 있다(*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88). 정보의 입수 방법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공문서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이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내용에 따라 기사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68, *Mityanin and Leonov v. Russia*, § 109).

44. 재판소는 제10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8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보호범위를 결정하였는데, 구글과 같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Tamiz v. the United Kingdom* (dec.) 사건에서,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M.L. and W.W. v. Germany* 사건에서 그 범위를 결정했다.

e. 제14조(차별금지)

45. 많은 사건에서 제8조는 제14조와 함께 해석되었다.

46. 예를 들어, 재판소는 동성 커플 관련 사건에서 국제사회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를 중요하게 고려했지만(*Oliari and Others v. Italy*, §§ 178 및 180-185), 당사국들이 이성 간의 결혼만 허용하도록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었다(*Schalk and Kopf v. Austria*, § 108).
47.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사건에서는 청구인인 젊은 남성 2명이 자신들의 키스 사진을 공개된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온라인 게시물에는 거친 동성애 혐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청구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기이하고" 리투아니아의 "전통적인 가족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다. 재판소는 동성애 집단에 대한 심한 편견이 청구인과 동성애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 표현을 조장했고, 그 표현들이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인지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들이 유효적절하게 수사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러한 차별적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06-116, § 129).
48. 성차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성평등의 진전은 오늘날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중요한 목표이며, 차별적 처우가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려면 매우 강력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특정 국가에서의 전통이나 일반적인 추정 또는 사회전반의 인식에 근거한 것만으로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 예를 들어, 결혼한 여성이 결혼 전의 성씨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차별금지원칙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회원국들은 가정에서 남성이 일차적 역할을 맡고 여성이 이차적 역할을 맡는 것에서 파생된 전통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였다(*Ünal Tekeli v. Turkey*, § 63). 재판소는 또한 사회의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는 그것이 그 집단 구성원들의 능력과 요구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판시하였다(*Carvalho Pinto de Sousa Morais v. Portugal*, § 46과 그 판결에서 추가로 언급한 판례들 참조).
49. *Alexandru Enache v. Romania* 사건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자녀를 키우고자 했다. 그러나 자녀의 첫 돌까지 형의 집행을 연기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유죄판결을 받은 어머니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남성으로서 그와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여성 수형자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68-69). 그러나 재판소는 국제법을 언급하면서 모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면, 국가기관이 제8조와 함께 해석한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77).
50. 재판소는 혼인중의 출생인지 혼인외의 출생인지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와 관련하여, 그러한 차별적 처우가 협약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려면 매우 강력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Sahin v. Germany* [GC], § 94, *Mazurek v. France*, § 49, *Camp and Bourimi v. the Netherlands*, §§ 37-38).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동거중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Sahin v. Germany* [GC], § 94).

51. 재판소는 출신 국가가 다른 부부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씨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한 결정에 대해 제8조와 관련 지어 해석한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Losonci Rose and Rose v. Switzerland*, § 26). *A.H. and Others v. Russia* 사건에서는 미국 국민에게는 러시아 어린이의 입양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위반을 인정하였다. 국가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넘어 국내법에서 입양에 대한 권리를 창설한 경우, 국가는 해당 권리를 적용함에 있어 제14조에서 의미하는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의 입양 신청에 대한 권리와 그 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른 일반적인 사생활의 범위에 속한다.
52. 친권의 박탈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고려에 따른 차이에 기초한 경우, 재판소는 그러한 조치가 제14조에 비추어 해석할 때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Hoffmann v. Austria*, § 36, 청구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두 자녀의 아버지인 남편과 이혼한 후 친권을 박탈한 조치와 관련된 사건).
53. 집시에 대한 반감으로 형성된 군중들이 사전계획에 따라 집시거주자의 집들을 공격했으나 경찰이 집시거주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4조에 비추어 해석할 때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Burlya and Others v. Ukraine*, §§ 169-170).
54. 또한 재판소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에게는 4시간의 단기면회와 최장 수일간의 장기면회가 허용되는 반면, 미결재소자의 경우 장기면회는 없고 3시간의 단기면회만을 허용하는 것은 제14조와 함께 고려하였을 때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Chaldayev v. Russia*, §§ 69-83).
55. *Cînta v. Romania* 사건에서 루마니아 법원은 청구인에 대해 자신의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였다. 재판소는 루마니아 법원이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보육에 필요한 기능이나 자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근거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으므로 제8조와 관련 지어 해석한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 주거 및 통신

a. 제2조(생명권)

56. 주거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협약 제8조와 제1의정서 제1조에서도 협약 제2조에서의 의무에 상응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확립하였다(*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 216).

b.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57. 통신제한조치에 관하여, 재판소는 수사 방법에 있어서 제8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의 문제와 사실인정의 결과가 제6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문제를 구별하였다(예를 들어, *Dragoş Ioan Rusu v. Romania*, § 52 및 *Dumitru Popescu v. Romania (no. 2)*, § 106과 그 판결에서 추가로 언급한 판례들 참조).

c. 제10조(표현의 자유)

58. 감시 또는 전화감청은 일반적으로 제8조만으로 심사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제10조에 속하는 사안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에는(예컨대, 취재원 보호를 회피하기 위해 특별 권한을 사용한 경우) 재판소는 두 조항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건을 심사하기도 한다(*Telegraaf Media Nederland Landelijke Media B.V.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위 사건에서 재판소는 두 조항 모두에 대한 위반을 인정하였다. 재판소는 문제의 법령이 취재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자를 감시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d. 제13조(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59. 재판소는 주거에 대한 수색에 관한 사건에서 수색을 실시한 경찰관들이 징계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약의 목적을 위한 실효적 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를 제한한 경우, 구제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압수수색의 합법성을 다툴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Posevini v. Bulgaria*, § 84).

60. 전화감청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İrfan Güzel v. Turkey* 판결(§§ 94-99)에서 형사소송 과정 중 청구인에 대해 수행된 전화 도청이 제8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후, 제8조와 관련 지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또한 *Roman Zakharov v. Russia* [GC] 판결에 대한 언급 참조). 비밀감시의 영역에서는 남용이 발생하기 쉽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독권을 원칙적으로 판사에게 맡겨, 사법적 감독을 통해 독립성, 중립성 및 적절한 절차의 최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33, *İrfan Güzel v. Turkey*, § 96). 감시조치의 종료 후에는 그 제한조치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87 이하, *İrfan Güzel v. Turkey*, § 98). 통신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은 통신 제한조치가 내려진 날짜와 그 조치를 명령한 기관 등과 같이 그 결정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91 이하, *İrfan Güzel v. Turkey*, § 105). 결국 비밀감시에 있어서 제13조의 목적상 "실효적 구제"란 "비밀감시라는 제도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임에 유념하면서 가능한 실효적 구제조치"를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İrfan Güzel v. Turkey*, §99).

e. 제14조(차별금지)

61. 재판소는 *Larkos v. Cyprus* [GC] 사건에서 퇴거와 관련하여 민간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과 비교할 때 국유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의 불리한 상황이 제8조와 함께 고려하였을 때 협약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Strunjak and Others v. Croatia* (dec.) 사건에서는 국영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민간 분양 아파트 임차인은 구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차별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소는 *Bah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공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심사했다. 재판소는 *Karner v. Austria* 사건에서 동성커플 간 임차권 승계 문제를 심리했다(*Kozak v. Poland* 사건 또한 참조하고, 동거인을 매일 간병하였으나 동거인 사망 후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었던 사건인 *Korelc v. Slovenia* 사건과 비교). 그 밖에 제14조와 제8조가 함께 관련된 사건들도 있다(*Gillow v. the United Kingdom*, §§ 64-67,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f. 제34조(개별적 제소)

62. 재판소에 송달되거나 재판소가 수신한 서신을 검열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효과적인 개별 제소권 행사에 대한 모든 방해 금지하는 조항인 협약 제34조 또한 적용될 수 있다(*Yefimenko v. Russia*, §§ 152-165, *Kornakovs v. Latvia*, § 157; *Chuka-yev v. Russia*, § 130). 사실, 협약 제34조에 따라 도입된 개별 청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또는 잠재적 청구인이 공권력으로부터 청원의 철회나 변경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재판소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Salman v. Turkey* [GC], § 130). 재판소에 보내는 서신의 발송을 교정당국이 지연시킨 것은 협약 제34조 제2문이 금지하는 방해의 사례에 해당하고(*Poleshchuk v. Russia*, § 28), 구금 중인 청구인이 재판소에 처음으로 보내려는 서신의 발송을 교정당국이 거부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이다(*Kornakovs v. Latvia*, §§ 165-167).

g. 제1의정서 제1조(재산의 보호)

63. "주거"라는 개념과 제1의정서 제1조의 "재산"의 개념 사이에는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거"의 존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이익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Surugiu v. Romania*, § 63). 개인은 제8조에서 의미하는 "주거"에 해당할 만큼 충분한 유대관계 없이도 제1의정서 제1조에서 의미하는 특정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Khamidov v. Russia*, § 128).
64. 개인의 정체성, 자기결정권, 신체적, 정신적 온전성에 대하여 제8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들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택 문제에 대한 국가의 판단재량은 제1의정서 제1조가 보호하는 권리들에서보다 제8조가 보장하는 권리들에서 더 좁다(*Gladysheva v. Russia*, § 93). 제8조의 위반을 구성하는 특정 조치가 반드시 제1의정서 제1조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 62-76). *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사건의 판결은 특히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비례성 요건을 적용할 때, 두 조항이 보호하는 이익의 차이와 그에 따라 두 조항이 제공하는 보호정도의 차이를 강조한다(§ 74).
65. 제8조 위반과 함께 제1의정서 제1조 위반도 함께 인정될 수도 있다(*Doğan and Others v. Turkey*, § 159,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 207, *Sargsyan v. Azerbaijan* [GC], §§ 259-260, *Cyprus v. Turkey* [GC], §§ 175 및 189, *Khamidov v. Russia*, §§ 139 및 146, *Rousk v. Sweden*, §§ 126 및 142,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 217). 아니면, 재판소가 두 조항 중 하나만 위반한 것으로 판결할 수도 있다. 재판소는 또한 2개 청구 중 하나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Öneryıldız v. Turkey* [GC], § 160, *Surugiu v. Romania*, § 75).

66. 다만, 주거의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제1의정서 제1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는데, 특히 일반적인 수용에 관한 사건들이 그러하다(*Mehmet Salih and Abdüsamet Çakmak v. Turkey*, § 22, *Mutlu v. Turkey*, § 23).

h. 제4의정서 제2조제1항(이동의 자유)

67. 국가 영토 내에서 이동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4의정서 제2조제1항은 제8조와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지만, 두 조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제8조는 특정한 장소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 반면(*Ward v. the United Kingdom* (dec.), *Codona v. the United Kingdom* (dec.)), 만약 제4의정서 제2조제1항이 원칙적으로 협약당사국들에게 그 영역에서의 개인의 선택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될 것이다(*Garib v. the Netherlands* [GC], §§ 140-141).

II. 사생활

A. 사생활의 영역

1. 일반적 적용 가능성

68. 사생활은 그것에 포함되는 요소를 망라하여 정의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개념이다 (*Niemietz v. Germany*, § 29; *Pretty v. the United Kingdom*, § 61, *Peck v. the United Kingdom*, § 57). 사생활은 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을 포함하고 "해당인의 신체적, 사회적 정체성의 여러 측면을 내포"할 수 있다(*Denisov v. Ukraine* [GC], § 95, S. 및 *S. and Marper v. the United Kingdom* [GC], § 66). 그러나 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제8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 왔다(*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 159). 또한 개인적 법익을 넓게 인정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판례도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
69. 사생활이라는 관념은 스스로 선택한 자신만의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바깥 세상을 배척하는 "폐쇄된 내부(inner circle)"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Denisov v. Ukraine* [GC], § 96). 제8조는 그것이 인격이든 개인의 자율성이든 개인의 발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이는 협약 제8조의 보장내용에 대한 해석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제8조는 각 개인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접근할 권리, 즉 "사적인 사회생활(private social life)"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Bărbulescu v. Romania* [GC], § 71, *Botta v. Italy*, § 32). 그러나 제8조는 특정인과 관계를 맺을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데,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주고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보았을 때 청구인이 만남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유해한 행동의 피해자인 경우에 그러하다(*Evers v. Germany*, § 54).
70.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영역은 공적인 상황에서도 존재하며, 이는 "사생활"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여러 다른 판례들 중에서도 *Peck v. the United Kingdom*, § 62, *Uzun v. Germany*, § 43,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95, *Altay v. Turkey (no. 2)*, § 49, 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 128-32 참조). 하지만,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들 가운데 사생활의 범위가 "본질적으로 공적인 성격"의 활동에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례는 없다(*Ibid.*, § 128, 또한 정치 지도자의 학력과 경력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사건으로 *Centre fo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v. Ukraine*, §§ 114-116 참조). 모든 사람은 원치 않는 관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 권리가 있다(*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 139). 개인의 집 주소는 사생활의 문제인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점에서 제8조에 따라 보호된다(*Alkaya v. Turkey*, § 30).
71. 일부 사안들에서는 제8조의 적용 여부가 심각성심사(severity test)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환경 문제 관련 판례, 개인의 평판에 대한 공격에 관한 *Denisov v. Ukraine* ([GC], §§ 111-112 및 115-117, 그 판결에서 언급한 판례들, 타인의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에 악영향을 미친 사인의 행위나 조치에 관한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

128),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존엄성에 관한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 109 및 117) 등이 있다. 어떤 조치가 청구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청구는 협약의 물적 관할권(*ratione materiae*)과 부합하며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용가능성의 문제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의 존재는 흔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Vučina v. Croatia* (dec.), § 32).

72. *Vučina v. Croatia* (dec.)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사진이 한 잡지에 실렸고 청구인이 당시 시장의 아내인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다. 재판소는 이 청구의 물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어느 정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사진의 잘못된 표기와 관련된 심각성과 청구인이 겪은 불편함이(청구인의 이미지나 명예와 평판의 보호라는 점에서) 제8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42-51).
73. 장애인이 개인소유 해변을 이용하는 문제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주장된 권리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확실한 범위의 대인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민간 수영시설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치들과 청구인의 사생활 사이에는 생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8조는 적용되지 않았다(*Botta v. Italy*, § 35).
74. 또한, 재판소는 직업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명백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8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해당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따른 직무상의 작위 및 부작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청구인은 그 특정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자신의 사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Gillberg v. Sweden* [GC], § 70, 또한 *Denisov v. Ukraine* [GC], §§ 115-117 참조). 하지만, 형사소송을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함으로써 직업적 의무를 심각히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친 후에는 수습 변호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한 경찰 수사관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정한 직업 활동에 대한 제한이 외부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청구인의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Jankauskas v. Lithuania* (no. 2), §§ 57-58).
75.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대재판부는 청구인이 공공장소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활동으로 부상을 당한 것이고, 모든 이용자들의 도로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교통법규에 의해 심각한 위해의 위험이 최소화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신체적 손해가 제8조에서 의미하는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고는 청구인의 신체적,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에 위해를 가하고자 의도한 폭력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재판소가 이전에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인정했던 다른 유형의 상황들과는 아무런 유사점도 찾을 수 없었다(§§ 125-132).

76. *Ahunbay and Others v. Turkey*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정 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24-25). 재판소는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할 필요성에 관한 유럽과 국제사회의 의견은 언제든지 고려하겠지만, 이러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소수자가 자유롭게 그들 자신의 문화를 즐길 권리와 토착민이 그들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보호할 권리와 관련된 상황과 규율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현행 국제법에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권리는 소수자나 토착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개인의 특정한 지위에 내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77. *Denisov v. Ukraine* [GC] 사건은 제8조가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 문제된 제한의 심각성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110-114). 제8조 적용 여부가 심각성심사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는, 예를 들어, 환경 문제 관련 판례, 개인의 평판에 대한 공격, 면직, 좌천, 전문직 자격 인정 거부 또는 이와 비슷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들, *Denisov v. Ukraine* [GC], (§§ 111-112 및 115-117, 그 판결에서 언급한 판례들, 그리고 *Polyakh and Others v. Ukraine* §§ 207-211, *Vučina v. Croatia* (dec.), §§ 44-50, *Convertito and Others v. Romania*; *Platini v. Switzerland* (dec.) 참조), 타인의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에 악영향을 미친 사인의 행위나 조치에 관한 판례는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 128,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존엄성에 관한 것으로는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 109 및 117 등이 있다.
78. 범죄 또는 이와 유사한 비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결과인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주장을 위해 제8조를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Denisov v. Ukraine* [GC], § 98, *Evers v. Germany*, § 55).
79. 재판소의 제8조 관련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중요성과 사생활과 관련된 가치를 인정한다. 이러한 가치에는 무엇보다도 안녕과 존엄성(*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 117) 인격 발현(*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95),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Söderman v. Sweden*, [GC], § 80), 타인과의 관계(*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83), 개인정보 보호(*M.L. and W.W. v. Germany*, § 87), 개인의 이미지(*Reklos and Davourlis v. Greece*, § 38) 등이 포함된다.
80. 사생활에 포함되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사생활 관념에 포함되는 사건들을 범주화하면 (i)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또는 도덕적 온전성, (ii)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iii) 개인의 정체성과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광범위한 범주로(때로는 중복될 수 있음)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고려하기로 한다.

2. 직업 및 영업 활동

81. 제8조는 "사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므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직업 활동(*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 110, *Bărbulescu v. Romania* [GC], § 71, *Antović and Mirković v. Montenegro*, § 42, *Denisov v. Ukraine* [GC], § 100 추가 참조 포함, *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 92-95) 및 영리 활동(*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30)을 포함할 수 있다.

82. 고용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 공직을 맡을 권리, 특정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제8조에서도 출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개념이 직업 또는 사업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Bărbulescu v. Romania* [GC]), § 71, *Jankauskas v. Lithuania (no. 2)*, §§ 56-57, *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 109-110). 실제로 사생활은 개인이 직업 또는 사업적 성격의 관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개발할 권리를 포함한다(*C. v. Belgium*, § 25, *Oleksandr Volkov v. Ukraine*, § 165).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외부와 관계를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된다(*Niemietz v. Germany*, § 29, *Bărbulescu v. Romania* [GC], § 71 및 그 판결에서 언급한 판례들, *Antović and Mirković v. Montenegro*, § 42 참조).
83. 따라서 직업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사항은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 47, *Bigaeva v. Greece*, §§ 22-25, 범죄전과로 인한 변호사협회 등록 제한과 관련해서는 *Jankauskas v. Lithuania (no. 2)*, § 56 및 *Lekavičienė v. Lithuania* § 36 참조), 실직 또한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 113). 마찬가지로, 공직으로부터의 파면도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Özpinar v. Turkey*, §§ 43-48). 재판소는 *Oleksandr Volkov v. Ukraine* 사건에서 직업윤리 위반으로 판사를 파면한 조치가 제8조에서 의미하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65-167).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이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의 아내가 이슬람 베일을 쓴다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행정적으로 보다 덜 중요한 직위로 전출시킨 것은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Sodan v. Turkey*, §§ 57-60, 청구인의 아내가 베일을 썼다는 이유로 정부가 청구인의 해외교직 임용을 반대한 사건인 *Yilmaz v. Turkey*, §§ 43-49도 참조).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 동등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을 교직에서 배제한 사건에서도 제8조 위반을 인정하였다(*Şahin Kuş v. Turkey*, §§ 51-52).
84. 좀 더 최근에 *Denisov v. Ukraine*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수의 관련 판례(§§ 101, 104-105, 108 및 109)를 상기하면서 고용 관련 분쟁이 제8조에 따른 "사생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115-117, 또한 *J.B. and Others v. Hungary* (dec.), §§ 127-129 참조). 재판소는 이러한 분쟁에서 면직, 좌천, 전문직 자격 인정 거부 또는 이와 비슷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생활의 일부 전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행정업무(관리능력)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장직에서 면직되었다. 그는 법원장직에서 면직되었으나 같은 법원에서 계속 판사직을 수행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소에 따르면, 해당 면직 결정이 오직 관리능력에만 관련된 것인 반면 판사로서의 직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장에서의 면직 결정이 판사로서의 향후 경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청구인의 인격과 성격의 도덕적 또는 윤리적 측면에 의문을 제기한 것도 아니었다. 요컨대, 위의 상황에서, 면직은 청구인의 사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정도가 제한적이었고, 제8조의 문제를 제기할 만큼 "심각성심사의 최소기준 (threshold of seriousness)"을 넘어서지 않았다(*Denisov v. Ukraine* [GC], §§ 126-133, 또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판사에 대한 일시적인 업무정지가 제8조의 적용에 필요한 "심각성심사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결한 *Camelia Bogdan v. Romania*, §§ 83-92 참조). *Denisov* 사건 이후, 고용 관련 분쟁은 일반적으로 사생활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실직한 경우이거나(이유기반 접근법), 실직이 사생활에 영향을 미친 경우(결과기반 접근법)에만 제8조가 적용된다(§§ 115-117).

85. *Mile Novaković v. Croatia* 사건에서는 이유기반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세르비아계 출신인 청구인은 수업에서 표준 크로아티아어를 구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등학교 교사직에서 면직되었다. 청구인은 면직 당시 55세였고 29년간 교사로 근무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면직된 결정적인 이유가 세르비아계라는 출신 민족 및 그의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생활과 충분히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제8조가 적용되었다(§§ 48-49). 재판소는 나아가 문제의 조치가 면직 대신 다른 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추구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지 않았다고 제8조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57-70).
86. *Polyakh and Others v. Ukraine* 사건에서, 재판소는 과거사 청산절차의 사안에서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면서 결과기반 접근법을 사용했다(§§ 207-211). 청구인들은 공직에서 파면되었고, 10년 동안 공직 진출이 금지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청산 기록부(Lustration Register)에 기재되었다. 재판소는 이들 조치를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능력과 사회적, 직업적 평판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87. *Bagirov v. Azerbaijan* 사건은 결과기반 접근법이 사용된 사례로서, 변호사가 경찰의 만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와 사법제도의 기능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자격을 정지한 데 이어 그 자격을 박탈한 사안이었다(§§ 91-104, 제8조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 87 참조). 재판소는 변호사자격 박탈이 법률가로서의 직업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법조 직역에서 가장 가혹한 징계라는 점과 변호사가 사법행정과 기본권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 99, 101).
88. *Pişkin v. Turkey* 사건에서, 청구인은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인해 입법적 긴급명령에 따라 지방개발청에서 면직되었다. 재판소가 볼 때, 면직의 사유는 청구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쳤고, 고용계약의 해지가 "청구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예견가능한 결과"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졌고 직업적, 개인적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심각성심사의 최소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했다(§§ 179-188). 재판소는 나아가 문제된 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전적으로 불충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자의적인 제한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면서 제8조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216-229).

89. *Platini v. Switzerland*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스포츠 직업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결과기반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54-58). 청구인은 축구관련 활동에 대해 4년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재판소는 해당 자격정지 처분이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심각성심사 최소기준을 충족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청구인은 (평생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축구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금지되었고 자격정지는 그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킬 가능성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재판소는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와 같은 민간기구와 연방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을 통해 청구인이 충분한 제도적, 절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 이들 기관이 관련된 이익들을 성실하게 비교형량한 후 청구인의 모든 주장들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가 누리는 상당한 판단재량을 고려할 때, 스위스가 협약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었다.
90. *Convertito and Others v. Romania* 사건에서, 재판소는 *Denisov v. Ukraine* [GC]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학교 1학년 등록절차에서 중에 행정상의 하자로 인해 청구인들의 대학입학자격이 취소된 것에 대해 제8조가 적용되는지를 심사하였다(§ 29). 청구인들이 6년 동안의 학업을 통해 얻은 대학입학자격을 취소한 것은 청구인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했던 방법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자격 수준을 의심받게 됨에 따라 그들이 구상했던 경력을 막 시작하려던 계획이 갑자기 좌절된 만큼 그들의 직업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91. 영업장소에서의 통신은 제8조에서 의미하는 "사생활" 및 "통신"의 개념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Bărbulescu v. Romania* [GC], § 73, *Libert v. France*, §§ 23-25 및 그 판결에서 인용된 판례 참조),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적인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도 같다(*Ibid*, § 25). 사생활과 통신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정하기 위해, 재판소는 여러 사건들에서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이 존중받고 보호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소는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는 중요하지만 반드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Bărbulescu v. Romania* [GC] 사건에서 재판소가 청구인이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는 것인데, 재판소는 그 이유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고용주의 지침이 직장에서의 사적인 사회생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사생활에 대한 존중과 통신의 비밀에 대한 존중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8조가 적용되었다. 요컨대, 개인이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통신은 사생활과 통신의 개념에 의해 보호된다(§ 80).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직장에서 비업무적 성격의 통신과 관련하여 협약 제8조에 따라 요구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관한 요소들을 자세히 열거했다(§§ 121-122).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직원의 부재중에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개인적인 데이터를 열어보는 것에 관한 *Libert v. France*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판단재량을 일탈하지 않았고 고용주의 컴퓨터 사용 정책에 포함된 명확한 지침을 분명히 준수했다고 판결했다(§§ 52-53).

92. 또한, *Antović and Mirković v. Montenegro* 사건에서, 재판소는 촬영사실의 비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서의 비디오 감시가 "사생활"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44). 이 사건은 한 대학의 강당에 비디오 감시장치가 설치된 것과 관련된 사건이다. *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사건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근무시간 내내 직원들을 비밀리에 비디오로 감시한 것이 문제되었다. 재판소는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체계적 또는 영구적인 녹화와 이후의 영상 처리는 관련된 개인들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기할 있으므로, 제8조("사생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93). 재판소는 비디오감시에서의 상충하는 이익들과 비례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열거하면서, *Bărbulescu* 사건과 *Köpke*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을 적용했다(§§ 116-117). 사생활을 존중받을 청구인의 권리는 재산권 보호에 대한 고용주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국가에는 판단재량이 주어진다.
93. 모든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사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그 상황에서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협약 제8조와 양립할 수 있다(*Jankauskas v. Lithuania (no. 2)*, § 76). 제8조는 예컨대 범죄의 실행과 같이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예견가능한 결과로서의 명예실추에 대해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 49 및 *Pişkin v. Turkey*, §§ 180-183과 대조). 이 원칙은 범죄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예견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다른 위법행위에도 적용된다(*Denisov v. Ukraine* [GC], § 98, 그 판결에서 인용하는 판례들 포함).

B. 신체적, 심리적 또는 도덕적 온전성

94. 재판소는 *X and Y v. the Netherlands*, (§ 22) 사건에서 처음으로 사생활의 개념이 개인의 신체적, 도덕적 온전성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정신장애가 있는 16세 소녀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그녀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형벌조항의 미비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을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가기관의 적극적 의무에는(일부 사건에서 협약 제2조 또는 제3조에 의해, 다른 사건들에서는 제8조만으로, 또는 협약 제3조와 함께 발생하는 의무) 사인에 의한 폭력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충분한 법 체계를 유지하고 실제로 적용할 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Osman v. the United Kingdom*, §§ 128-130, *Bevacqua and S. v. Bulgaria*, § 65, *San-dra Janković v. Croatia* § 45, *A v. Croatia*, § 60, *Đorđević v. Croatia*, §§ 141-143, *Söderman v. Sweden* [GC], § 80). 이와 관련하여 제8조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판례와 한계를 요약한 것으로는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판결이 있다([GC], §§ 125-132).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에 위해를 가하고자 의도한 폭력행위의 결과로 발생하지 않은 도로 교통사고에는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29-132).
95. 재판소는 제8조가 신체적 및 심리적 온전성을 실질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자국 국민에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각 회원국에 부과한다고 판결했다(*Milićević v. Montenegro*, § 54, *Nitecki v. Poland* (dec.), *Sentges v. the Netherlands* (dec.), *Odièvre v. France* [GC], § 42, *Glass v. the United Kingdom*, §§ 74-83, *Pentiacova and Others v. Moldova*). 이

의무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이용가능한 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특정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과 관련된다(*Airey v. Ireland*, § 33, *McGinley and Egan v. the United Kingdom*, § 101, *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 162). 이러한 조치에는 사법기구와 집행기구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A, B and C v. Ireland* [GC], § 245). 예를 들어, *Hadzhieva v. Bulgaria* 사건에서, 정부는 청구인이 14살이었을 때 청구인 앞에서 부모를 체포했고, 어린 청구인은 그대로 방치되었다. 관련 국내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재판소는 정부가 청구인의 복지를 유념하여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보호와 보살핌을 받도록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62-66). 병역의무 이행 중 신체적 온전성을 보호해야 할 적극적 의무와 관련된 판례로는 예컨대, *Demir v. Turkey* § 29-40과 그 판례에서 언급한 판례들을 참조하라.

1. 폭력 피해자

96. 재판소는 국가가 제3자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아동과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제2조 및 제3조 위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폭력이 신체적 온전성과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제8조 또한 적용된다(*Milićević v. Monte-negro*, §§ 54-56, *E.S. and Others v. Slovakia*, § 44). 특히, 국가는 제8조에 따라 동거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의한 사이버폭력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적, 도덕적 온전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Buturugă v. Romania*, §§ 74, 78-79). 국가는 이를 위해 사인에 의한 폭력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충분한 법 체계를 유지하고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Sandra Janković v. Croatia*, § 45).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을 함께 거주하는 공공주택에서 내보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국가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제8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Levchuk v. Ukraine*, § 90).
97. 특히 피해자가 되기 쉬운 아동과 관련해서는, 제8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폭력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시행한 조치가 실효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가 이러한 심각한 개인의 온전성 침해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할 학대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합리적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73, *M.P. and Others v. Bulgaria*, § 108, *A and B v. Croatia*, §§ 106-113). 이러한 조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한다(*Pretty v. the United Kingdom*, § 65, *C.A.S. and C.S. v. Romania*, § 82). *Wetjen and Others v. Germany* 사건에서, 재판소는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체벌의 위험이 친권의 일부를 박탈하고 아동을 보호소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적절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78)(또한 *Tlapak and Others v. Germany*, § 91 참조).
98. 아동에 대한 강간과 성적 학대와 같이 사생활의 근본적인 가치와 본질적 측면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실효적인 형벌조항이 시행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고(*X and Y v. the Netherlands*, § 27, *M.C. v. Bulgaria*, § 150 및 § 185, 수사관과

검사가 취한 조치가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내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M.G.C. v. Romania*, § 74, *A and B v. Croatia*, § 112),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보장할 책임도 있으며(*C.A.S. and C.S. v. Romania*, § 72; *M.P. and Others v. Bulgaria*, §§ 109-110, *M.C. v. Bulgaria*, § 152, *A, B and C v. Latvia*, § 174, *Y v. Bulgaria*, §§ 95-96), 배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C.A.S. and C.S. v. Romania*, § 72). 그러나 범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과 재판 과정에 비난할 만한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을 구하는 절대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Brecknell v. the United Kingdom*, § 64, *Szula v. the United Kingdom* (dec.)).

99.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재판소는 특히 공무원이 폭력의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때에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인정한다(*Levchuk v. Ukraine*, *Bevacqua and S. v. Bulgaria*, *Hajduová v. Slovakia*, *Kaluczka v. Hungary*, *B. v. Moldova*). 국가는 또한 아동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재판소는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법리 또한 적용하려고 하는데(아래 판례), 주거에서의 가정폭력 유형에 근거한 분리결정을 특히 존중한다(*Y. v. Slovenia*). 재판소는 *Buturugă v. Romania* 사건에서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가정용 컴퓨터를 검색해 달라는 그녀의 요청을 심사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가정폭력을 신고했으나 국가기관이 가정폭력과 관련성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통신의 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새로운 고발장을 제출해야만 했다. 국가기관은 그것을 별도로 취급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
100. 재판소는 *Y. v. Slovenia*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해자인 성폭행 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는 청구인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인격적 온전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114-116).
101. 국가는 또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나, 얼굴에 산성 물질에 의한 테러를 당하는 사건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Sandra Janković v. Croatia*, *Ebcin v. Turkey*). 이는 국가가 특정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유기견이 자주 문제되었던 지역에서 한 여성이 유기견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에서 국가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Georgel and Georgeta Stoicescu v. Romania*, § 62).
102. 다만, 재판소는 청구인이 입은 상해와 국가 사이에 연관성을 요구한다.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벌어진 싸움과 같이, 문제된 피해와 국가의 작위(또는 부작위)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재판소는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Đurđević v. Croatia*).
103. 구금조건은 제3조 위반에 필요한 심각성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제8조 위반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Raninen v. Finland*, § 63, *Szafrański v. Poland*, § 39). 또한, 알몸수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8조에 따른 제한에 해당한다(*Milka v. Poland*, § 45).

2. 재생산권

104. 재판소는 건강 또는 행복을 이유로 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범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제8조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A, B and C v. Ireland* [GC], §§ 214 및 245). 특히, 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는 사법기구와 집행기구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필요하다면 특정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ibid.*, § 245, *Tysiāc v. Poland*, § 110, *R.R. v. Poland*, § 184). 실제로, 국가가 판단재량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상황에서의 낙태를 허용하는 규율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법 체계는 협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관련된 다양한 정당한 이익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A, B and C v. Ireland* [GC], § 249, *R.R. v. Poland*, § 187, *P. and S. v. Poland*, § 99, *Tysiāc v. Poland*, § 116).
105. *P. and S. v. Poland*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에서 의미하는 사생활 개념이 자녀를 갖거나 갖지 않기로 하는 결정 모두에 적용된다고 거듭 밝혔다(예를 들어,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 71, *R.R. v. Poland*, § 180, *Dickson v. the United Kingdom* [GC], § 66,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 163 및 215 참조). 사실, "사생활"의 개념은 전통적인 친족관계 이외의 상황에서 성인과 아동 사이에 형성되고 발달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유대관계 또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생물학적 혈연관계나 법적 연결고리가 없는 성인과 아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일부 사건의 경우 이처럼 생물학적 혈연관계나 법적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생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 161).
106. 출산의 환경이 제8조가 의미하는 사생활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Ternovszky v. Hungary*, § 22).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가정에서의 출산과 관련하여, 의료인들이 언제든지 기소될 위험에 직면해 있고 그 문제를 규율하는 분명하고 종합적인 입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 가정에서의 출산을 사실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의료 정책과 자원 배분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다. 현재 유럽평의회 회원국 사이에 가정 출산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출산하면서 산모가 산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국가정책이 제8조 위반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다(*Dubská and Krejzová v. the Czech Republic* [GC]).
107. 부부가 자녀를 임신할 권리와 이를 위해 의료적 도움을 이용할 권리는, 그러한 선택이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한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8조에 의해 보호된다(*S.H. and Others v. Austria* [GC], § 82, *Knecht v. Romania*, § 54). 이러한 보호는 의학적인 이유에서 인공생식과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 착상전 진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Costa and Pavan v. Italy*). 이 사건은 낭포성섬유증의 무증상보균자인 이탈리아인 부부가 의료적 도움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그들의 자녀에게 낭포성섬유증의 유전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과 관련된 사건이다. 재판소는, 태아가 그 질병의 증상을 보일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면서도 그 부부가 배아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이탈리아 법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제8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산전 의료검사와 관련하여, 태아의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을 위험을 알려줌으로써 임신의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임신중 선별검사를 통한, 적절한 시기와 방식의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라트비아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절차적 측면에서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A.K. v. Latvia*, §§ 93-94).

108. 청구인들이 통상적인 입양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부모 모두와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에서는 불법적인 인공생식기술을 통해 임신되었던 아이를 외국에서 이탈리아로 데려온 사건에서, 재판소는 아이와 청구인들 사이에 가족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청구인들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그 아이와의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얻는 청구인들의 인격적 발전에 대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 165 및 215).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윤리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입양, 아동의 양육, 인공생식과 대리모에 관한 것이었는데, 회원국들은 이러한 사안에서 폭넓은 판단재량을 행사한다(§§ 182-184 및 194).
109. 제8조는 불임시술에도 적용된다. 불임시술은 인간의 필수적인 신체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행복과 정서적 삶, 정신적 삶, 가족생활을 비롯한 개인의 온전성의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V.C. v. Slovakia*, § 106). 재판소는 집시 여성에 대한 생식기능의 건강 보호를 특히 강조하면서, 강제적인 불임시술로부터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실효적인 법적 보호수단을 보장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일부 사건들에서, 재판소는 그 취약한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적인 불임시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집시 여성들에 대해서는 불임시술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ibid.*, §§ 154-155, *I.G. and Others v. Slovakia*, §§ 143-146). 이러한 법리는 낙태 시술 과정에서 의사가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의도하지 않았던 불임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적용된다(*Csoma v. Romania*, §§ 65-68).
110. 재판소는 청구인이 태아의 운명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개인적인 삶과 자기결정권, 따라서 사생활의 내밀한 측면에 관한 것이라고 판결했다(*Parrillo v. Italy* [GC], § 159). 다만, 유럽 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폭넓은 판단재량을 갖고 있다(§§ 180-183). 따라서 청구인이 체외수정 시술에 따라 만들어진 냉동배아를 연구에 기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제치료 및 의무진료

111. 재판소는 제8조가 (불임시술 외에) 강제치료 또는 의료상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 대해 갖는 의미도 다뤘다. 일부 사건들에서, 재판소의 전신인 위원회(Commission)와

재판소는 비교적 가벼운 검진들 중에서 의무적인 검진들(*Acmanne and Others v. Belgium* (위원회 결정), *Boffa and Others v. San Marino* (위원회 결정), *Salveti v. Italy* (dec.))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검진들(*X v. Austria*, (위원회 결정), *Peters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제8조에 따라 허용되는 비례적인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12. 이와 달리, 재판소는 부모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의사가 중증 장애아동을 치료하기로 한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Glass v. the United Kingdom*).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학대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 부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혈액검사를 실시한 의사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자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M.A.K. and R.K. v. the United Kingdom*). 반면, *Gar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말기의 불치병을 앓는 유아에 대해 부모의 희망과 달리 치료를 중단한 것은 제8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또한 경찰이 구금하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구금과는 무관한 산부인과 검진을 받게 한 것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Y.F. v. Turkey*, §§ 41-44).
113. 나아가 재판소는, 국가가 감압표와 관련한 건강위험 정보를 다이버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경우(*Vilnes and Others v. Norway*, § 244), 그리고 국가기관에 속하는 의사의 의료과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 사건(*Codarcea v. Romania*)에서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국가가 강제하지 않은 백신접종으로 상해를 입은 개인에게 보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터키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Baytüre and Others v. Turkey* (dec.)).
114. 형사절차에서의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혈액과 타액 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강제적인 의료적 처치에 해당하며, 이러한 처치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생활 침해로 보아야 한다(*Jalloh v. Germany* [GC], § 70, *Schmidt v. Germany* (dec.)). 다만, 협약은 피의자가 범죄 실행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Jalloh v. Germany* [GC], § 70). 재판소는 *Caruana v. Malta* (dec.) 사건에서, 검사대상이 범죄자가 아닌 관련 증인인 경우에도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32).

4. 정신질환

115. 정신질환을 앓는 취약계층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의무에 관하여, 재판소는 정신건강도 도덕적 온전성 측면과 관련된 사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점에서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Bensaid v. the United Kingdom*, § 47).

116. 재판소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제8조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위의 판례 참조). 치료거부권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학적 약물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의료개입을 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X. v. Finland*, § 212). 상황에 따라서는 환자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 환자에게 강제적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명확한 법적 지침을 바탕으로 사법적 심사의 가능성이 마련된 상황에서 내려져야 한다(*ibid.*, § 220. (*Storck v. Germany*, §§ 164-169, *Shopov v. Bulgaria*, § 47).
117. 또한 재판소는 특히 정신질환자의 자녀가 국가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국가는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국가는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이 자녀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B. v. Romania (no. 2)*, § 117; *K. and T. v. Finland* [GC]). 이러한 사안들은 제8조의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되는데(아래 참조), 특히, 예컨대 정신장애 여성이 아들의 입양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입양절차에 참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건이 있다(*A.K. and L. v. Croatia*).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에 대해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친권을 박탈한 *S.S. v. Slovenia* 사건이 있다. 이 판결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한 후 그 자녀가 입양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관한 판례를 요약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83-87).
118.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적 무능력 지위를 부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소는 종종 제8조 위반을 제5조 및 제6조에 비추어 설명한다. 재판소는 의사결정 절차의 질적 측면을 강조한다(*Salontaji-Drobnjak v. Serbia*, §§ 144-145). 재판소는 법적 능력의 박탈이 제8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N. v. Lithuan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능력을 박탈하는 리투아니아 법원의 결정을 심리했다. 해당 시기에 청구인은 혼자서 재산을 사거나 팔 수 없었고, 일하는 것,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 결혼하는 것 또는 리투아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할 수 없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결했다(§ 111). 능력상실 결정 절차, 보호시설 배치 결정,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 자녀와 관련한 절차들에 있어서(위 판례 참조), 재판소는 정신질환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각 절차는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개별화되도록 국가가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Zehentner v. Austria*, § 65, *Shtukurov v. Russia*, §§ 94-96, *Herczegfalvy v. Austria*, § 91). 예컨대, 법적 무능력에 관한 소송에서 정신질환을 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는 충분히 최근의 것이어야 한다(*Nikolyan v. Armenia*, § 124). 나아가 재판소는 *Nikolyan v. Armenia* (§ 122) 사건에서, 비록 중증인 경우에도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자유 박탈에 관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적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가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119. 지적장애인의 거주지 선택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과 그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인 능력이나 상황으로 인해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A.-M.V. v. Finland*, § 90). 재판소는 현재 시행중인 절차적 보호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82-84). 위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제인권법의 기준이 요구하는 대로, 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국내 절차에 수립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호장치를 통해 청구인의 권리, 의사, 선호가 고려되었다. 청구인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했고, 직접 설명을 들었으며,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었다. 국가기관이 청구인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청구인의 의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제8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5. 보건과 의료

120. 건강권은 협약이나 그 의정서에 따라 보장된 권리는 아니지만, 협약 회원국은 협약 제2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와 병행하여 제8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적극적 의무를 가지는데, 첫째,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환자의 신체적 온전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시행해야 하고, 둘째, 의료과실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Vasileva v. Bulgaria*, § 63; *Jurica v. Croatia*, § 84, *Mehmet Ulusoy and Others v. Turkey*, § 82). 따라서 적극적 의무는 병원과 의료인들이 환자의 온전성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실효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할 의무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의료과실이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통은 재판소가 제8조 또는 제2조의 실제적 측면에서 그 위반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작위와 부작위를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환자의 생명이 위협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생명구조를 위한 치료를 거부한 경우, 환자가 병원의 체계적 또는 구조적 기능 장애로 인해 응급치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경우, 국가가 이러한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Mehmet Ulusoy and Others v. Turkey*, §§ 83-84,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사건 인용). 협약 제2조에 관한 판례로부터 도출된 이 원칙은 제2조에 따라 보장되는 생명권을 위협하는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상해의 경우에 제8조에 의해 적용된다(*İbrahim Keskin v. Turkey*, § 61).

121. 재판소의 임무는 청구인에 제공되는 구제의 효과를 검증하여 사법제도가 환자의 신체적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 및 법령 체계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İbrahim Keskin v. Turkey*, § 68, *Mehmet Ulusoy and Others v. Turkey*, § 90). 어느 경우에도, 개인의 온전성을 침해하는 원인이 의료인의 책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문제된 침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에서 각 기관이 수직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들이 현실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ehmet Ulusoy and Others v. Turkey*, § 93). 의료과실의 사안에서는 신속성(promptness)과 상당한 주의(reasonable diligence)가 요건이 된다(*Enyigit v. Turkey*, § 49). 예를 들어, 거의 7년 동안 진행된 소송은 제8조에 부합하지 않는다(*İbrahim Keskin v. Turkey*, §§ 69-70).

122. 의료과실 사건에서의 전문가의견은 그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이라는 사실때문에 그 의견의 객관성을 무조건 의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전문가가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전문가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과실 소송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때, 전문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절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미리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Jurica v. Croatia*, § 93). 또한, 의학적 전문지식은 판사가 잘 알지 못하는 기술적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평가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해당 증거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Mehmet Ulusoy and Others v. Turkey*, §§ 109-110).
123. 의료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엄청난 국가 자원의 투입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제8조를 확대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계획하는 문제에서, 국제법원보다는 해당 국가가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기에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Pentiacova and Others v. Moldova* (dec.)).
124. 재판소는 교도소 내 마약 중독자를 위한 주사바늘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영국 당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Shelley v. the United Kingdom*) (dec.).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에 따라 회원국에 부과된 어떠한 의무도 특정한 예방적 보건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소는 불가리아가 말기 환자에 대해 승인받지 않은 실험용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였고(*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Durisotto v. Italy* (dec.)), 대마초성분의 의약품처방에 관한 법령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면서(*A.M. and A.K.v. Hungary* (dec.)), 이 분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언급했다(§§ 46-47). *Abdyusheva and Others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오피오이드(opioid) 중독자를 위한 메타돈(methadon)이나 부프레놀핀(buprenorphine) 대체요법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대체요법이 갖는 공중보건상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국가의 판단재량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2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중증장애인이 거동을 도와줄 로봇 팔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사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Sentges v. the Netherlands* (dec.)). 반면, 재판소는 몸이 불편한 여성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축소한 조치는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였는데, 영국이 스스로 정한 법령을 지키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McDonald v. the United Kingdom*).
126. *Gar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중증 질환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의 아들을 치료하는 문제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각하하였는데, 부모와 병원 간의 분쟁은 병원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시하였다(§ 117).

6. 생의 마감 문제

127. *Pretty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재판소는 자신이 죽을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제8조가 의미하는 사생활의 한 요소라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67). 이후 판례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할 방법과 시점을 결정할 권리가 협약 제8조에서 의미하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한 측면임을 명확히 밝혔다(*Haas v. Switzerland*, § 51).
128. 재판소는 회원국이 조력 자살에 관한 문제에서 폭넓은 판단재량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령에는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의 제공은 오로지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요건이 포함된다(*Haas v. Switzerland*, § 52). 실제로 재판소는 *Haas v. Switzerland* 사건과 *Pretty v. the United Kingdom* 사건을 구별했다. *Pretty* 사건과는 달리, *Haas v. Switzerland*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을 얻지 못하면 자살행위 자체로 자신의 존엄성이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Pretty* 사건과는 다른 점으로, 청구인은 스스로는 목숨을 끊을 수 없는 정도의 불치의 퇴행성질환의 말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식약한 것도 아니었다.
129. *Koch v. Germany* 사건에서 청구인은 연방기관이 자신의 아내에게 치사량의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의 구입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독일 법원이 본안심리를 거부한 것은 협약 제8조에 따른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원이 본안 심리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본안심리를 거부한 독일법원의 결정이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130. 재판소는 조력자살금지가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국내 법원들이 본안판단을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협약 회원국에게 부과하는 정도까지 제8조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Nicklinson and Lamb v. the United Kingdom* (dec.), § 84).
131. *Gar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사건에서 의사들은 치명적인 유전질환을 앓는 유아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했다. 해당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진 절차와 결정이유를 철저히 검토한 후, 재판소는 부모의 의사에 반해 내려진 연명치료중단 결정이 제8조를 자의적으로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118-124).

7. 장애 문제

132. “2006 유엔장애인권리협약(The 2006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을 위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원칙을 명시한다. 그러나 제8조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가능성 결여로 청구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여, 개인적 발달에 대한 권리와 타인 및 외부와의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침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Glaisen v. Switzerland* (dec.), §§ 43-46, 그 판결에서 언급한 판례들, 예를 들어, *Zehnalova and Zehnal v. the Czech Republic* (dec.); *Botta v. Italy* 그리고 *Mółka v. Poland* (dec.) 참조).

133. 재판소는 양육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각장애인 부모로부터 자녀를 격리한 결정이 그 사정으로 인해 정당화될 수 없고 제8조의 가족생활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Saviny v. Ukraine*). 이와는 반대로, 재판소는 만약 국립병원이 유전적 결함을 오진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갖지 않았을 경우에도 장애아동 돌봄비용을 부모에게 보상하는 프랑스의 법제는 제8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Maurice v. France* [GC], *Draon v. France* [GC]). 재판소는 또한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가에 넓은 판단재량을 부여하며(*La Parola and Others v. Italy* (dec.)), 출산 당시 부적절한 보호로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면 제8조 위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pyra and Kranczkowski v. Poland*, §§ 99-100).
134. *Kholodov v. Ukraine* (dec.) 사건은 신체적 장애(관절의 여러 질환)가 있는 청구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된 사건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질환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9개월간 운전을 금지한 처분이 청구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다. 이 점에서 해당 처벌은 제8조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8. 장례와 사자(死者) 문제

135. 가족생활과 사생활에 관한 제8조 권리의 행사는 주로 살아있는 인간 사이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사망한 친척의 시신을 다루는 방식과 장례식에 참석하고 친척의 묘소에 참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가족생활이나 사생활 존중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Solska and Rybicka v. Poland*, §§ 104-108 및 이 사건에서 인용된 참조).
136. 예를 들어, *Lozovyye v. Russia* 사건은 살인 사건의 피해자 부모에게 사망 소식이 전달되기 전 이미 매장 절차가 완료된 것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모든 사람은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32),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할 권리가 제8조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혔다. 국가기관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으나 다른 가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최소한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38). 재판소는 국내 관련 법령과 관행에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는 제8조를 위반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42). 다른 한편으로, 재판소는 사망자의 부모를 식별하고 소재를 파악하여 소식을 알리기 위해 러시아 당국이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를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46).

137. *Hadri-Vionnet v. Switzerland* 사건에서 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산아의 매장 장소와 시간을 산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제8조에 따른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Pannullo and Forte v. France*). 마찬가지로, *Zorica Jovanović v. Serb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어린 아들이 1983년에 사망했음에도 병원측에서 사망 사실과 이후 시신이 사라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발생한 일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또한 러시아가 여성의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법령상의 추정을 이유로 청구인이 사산아의 이름에 남편 대신 친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가 그 여성이 친부의 이름으로 아이를 매장할 수 있는 제8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Znamenskaya v. Russia*).
138. 가족들은 또한 사망과 장례 사이의 기간과 사망자의 시신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 전 시신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경찰이 청구인의 딸의 몸에서 채취한 시료를 장기간 반환하지 않아 제때 장례식을 치를 수 없었던 경우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청구인의 제8조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Girard v. France*). 재판소는 또한 병원이 사망자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장기를 적출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8조에 따른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Petrova v. Latvia*, §§ 97-98). 재판소는 이 판례에 따라 배우자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사망자의 조식을 적출한 행위에 대해, 법률의 명확성이 결여되었고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할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8조 위반을 인정하였다(*Elberte v. Latvia*, § 115).
139. 하지만 *Elli Poluhas Dödsbo v. Sweden* 사건에서 재판소는 스웨덴 당국이 가족과 함께 사망자의 유골을 찾기 위해 납골함의 이전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 남겨진 부인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이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폭넓은 판단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제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흥미로운 것은 납골함 이전 거부 "가족생활" 또는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고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이다(§ 24). 재판소는 *Dražković v. Montenegro* 사건에서 사망자의 유해를 새로운 안식처로 이장해달라는 가까운 친척의 요청이 원칙적으로 "사생활"과 "가족생활"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권리의 성격과 범위 및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국가가 지는 협약상 의무의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 및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48). 이처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에 폭넓은 판단재량이 부여되나,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3자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청구를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또 사망한 사람의 대리인이 친자소송에서 국가가 고인의 DNA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범위에 속하는 주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인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Estate of Kresten Filtenborg Mortensen v. Denmark* (dec.)).
140. 재판소는 또한 장례를 위한 테러 용의자 시신반환을 금지하는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재판소는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해 국가의 공공안전 보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테러 용의자의 시신 반환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국가의 이익과 유가족의 제8조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Sabanchiyeva and Others v. Russia*, § 146).

141. *Solska and Rybicka v. Poland* 사건에서, 재판소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사망자 시신발굴에 제8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107-108). 재판소는 시신 발굴을 명령한 검찰의 결정과 관련해 폴란드 법률이 자의적 집행을 방지할 충분한 보호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는 제8조 위반이었다(§§ 124-127).

9. 환경 문제

142. 협약에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96), 재판소는 안전하지 않거나 파괴적인 환경 조건이 개인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개인의 주변 환경의 질이 쟁점이 되었던 다양한 사건을 결정했다(*Cordella and Others v. Italy*, §§ 157-160). 그러나 개인이 문제의 생활방해로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생활방해가 삶의 질에 직접 미친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8조에 따른 쟁점이 발생한다(*Çiçek and Others v. Turkey* (dec.), 대기오염과 관련한 판례들의 요약으로는 § 32 및 §§ 22-29, 제8조를 적용하려면 공해가 개인의 건강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일정한 수준의 최소한의 악영향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는 *Fadeyeva v. Russia*, §§ 68-69). 환경 관련 사건에서는 국가가 해당 오염을 직접 유발했는지 또는 민간부문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제8조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제8조의 적용 여부는 심각성심사를 통해 결정되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관련 판례는 *Denisov v. Ukraine* ([GC], §§ 111) 사건을 참조할 수 있다.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안전한 식수 이용이 제8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계속해서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과 인간 존엄성에 악영향을 미쳐 사생활의 핵심 부분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촉발될 수 있다(§ 116).

143. 본안심리에서는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충돌하는 이익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공정한 균형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는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때 일정한 판단재량을 행사한다(*Powell and Rayner v. the United Kingdom*; *López Ostra v. Spain*, § 51; *Giacomelli v. Italy*, § 78).

144. *López Ostra v. Spain* (§ 51) 사건에서, 재판소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잠재적으로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주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12미터 떨어진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에 국고보조금으로 건설된 민간 가족 재처리공장에서 발생한 오염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Giacomelli v. Italy*, §§ 97-98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집에서 30미터 떨어진 개인 소유의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오염이 제8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Fadeyeva v. Russia* 사건(§§ 133-134)에서는 오염이 심각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러시아 최대의 제련소 주변의 위험한 "위생 보호 구역"으로부터 청구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가 청구인의 주거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145. 환경상의 위협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들에서 제8조 위반이 인정되었다(*Tătar v. Romania*, § 97에서는 광산회사가 유발한 환경 위험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Guerra and Others v. Italy*에서는 1994년 비료생산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지역주민들은 화학공장 인근에 계속 거주할 경우 자신과 가족이 겪을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146. 인근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제철소 대기오염과 관련된 *Cordella and Others v. Italy*, §§ 167-172 사건에서는 오염지역의 오염을 제거하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한 국가의 조치가 제8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 환경오염이 청구인들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과학적 연구가 있었음에도 그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었고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정화작업의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
147. 재판소는 또한 수년 간 수형자가 지낼 유일한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감방까지 도달하는 인근 쓰레기 처리장의 악취 문제가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으며(*Brândușe v. Romania*, §§ 64-67) 국가가 쓰레기의 수거, 처리, 폐기 작업을 확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Di Sarno and Others v. Italy*, § 112).
148. 재판소는 제한조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의 공정해야 하며 제8조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하였다(국가가 청구인에게 금광 운영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인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 118, *Hardy and Maile v. the United Kingdom*, § 217).
149. 재판소는 히드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질과 가족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범위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제8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Powell and Rayner v. the United Kingdom*, § 40).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소수의 사람만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히드로 공항에서의 야간비행을 줄이지 못한 것이 비행경로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제8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또한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29-130 참조).
150. 이후의 소음공해 사건들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주거 및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로는,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집 인근의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지 못한 것(*Moreno Gómez v. Spain*, §§ 62-63), 통행량 변화로 청구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Deés v.*

Hungary, § 23), 아파트를 얻어 운영하는 PC방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Mileva and Others v. Bulgaria*, § 97) 등이 있다.

10. 성적 지향과 성생활

151. 재판소는 성별, 이름, 성적 지향, 성생활과 같은 요소가 제8조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 영역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결했다(*Sousa Goucha v. Portugal*, § 27, *B. v. France*, § 63, *Burghartz v. Switzerland*, § 24, *Dudgeon v. the United Kingdom*, § 41, *Laskey, Jaggard and Brown v. the United Kingdom*, § 36, *P.G. and J.H. v. the United Kingdom*,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109).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령은 제8조를 위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A.D.T. v. the United Kingdom*, §§ 36-39, *Dudgeon v. the United Kingdom*, § 41). 또한 동성 커플의 관계는 제8조에서 의미하는 "사생활"의 개념에 포함된다(*Orlandi and Others v. Italy*, § 143). 하지만, 제8조가 근친상간(*Stübing v. Germany*)이나 가학피학적 성행위(*Laskey, Jaggard and Brown v. the United Kingdom*)와 같은 모든 성행위에 대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52. 재판소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동성연애자의 입대 금지 조치가 제8조에 따라 보호받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판결했다(*Lustig-Prean and Beckett v. the United Kingdom*, *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Perkins and R. v. the United Kingdom*, *Beck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C. 프라이버시

153. 재판소가 일관되게 판결한 바와 같이, 사생활 개념은 이름, 사진 또는 신체적, 도덕적 온전성과 같은 개인의 정체성 측면으로 확장된다. 협약 제8조가 제공하는 보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각 개인의 인격을 외부의 제한 없이 발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영역이 있으며, 이는 "사생활"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95).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모든 요소를 망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용어로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을 포괄하며 따라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이름 또는 개인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요소를 비롯해 개인 정체성의 여러 측면을 포괄한다. 사생활 개념에는 자신의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개인정보도 포함된다(*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3). 또한 "사생활"의 개념은 자녀 입양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X and Others v. Russia*, §§ 62-67, 법원결정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에 관한 사건으로, 청구인의 이름과 입양 자녀의 이름을 언급).
154.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 및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는 협약 제8조제1항 목적상 "사생활"의 범위에 속한다. 일부 정보가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졌고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Rotaru v. Romania* [GC], § 44). 재판소는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의 주거나 사적인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사생활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요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보고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는 의도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Benedik v. Slovenia*, § 101).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습이 노출된다. 마찬가지로 공공장소의 기술적 수단에 의한 감시도(예컨대, 경비원이 CCTV를 통해 지켜보는 것)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공공 영역에서 체계적 또는 영구적 기록이 존재할 경우 사생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기관이 특정한 개인에 대해 수집한 파일은 그것이 침해적인 방법 또는 비밀리에 수집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8조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P.G. and J.H. v. the United Kingdom*, § 57).

155.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한 유동 IP주소 정보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 사용은 제8조의 적용 범위에 속할 수 있다(*Benedik v. Slovenia*, §§ 107-108). 그런 점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유동 IP주소를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생활에 대한 그의 기대가 합리적이었는지 평가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다(§ 116). 이와 달리, 온라인 활동과 연계된 익명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17).

1. 자신의 이미지와 사진에 대한 권리: 사진, 이미지 및 기사 게시

156. 사진과 관련해 재판소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해준다는 점에서 그 사람이 가진 개성의 주요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의 이미지를 보호할 권리는 개인적 발달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 87-91 및 이 사건에서 인용된 판결들 참조). 표현의 자유에는 사진을 출판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재판소는 사진이 개인이나 가족에 관한 매우 개인적인 정보나 내밀한 정보까지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명예에 대한 보호가 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결했다(*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03). 부정적인 시각에서 개인을 묘사한 이야기에 사진이 함께 실린 경우, 해당 사진이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사진의 주인공이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진은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Rodina v. Latvia*, § 131). 재판소는 제8조에 따른 명예에 대한 권리와 제10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명시하였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는지, 당사자가 얼마나 유명한지와 해당 보도의 주제, 당사자의 과거 행동, 게재 내용, 방식 및 결과, 사진 촬영 당시의 상황, 부과된 제재의 강도 등이었다(*ibid.*, §§ 108-113,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9-95, *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90-93, *Dupate v. Latvia*, §§ 49-76, *Rodina v. Latvia*, § 104).
157. 따라서,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50-53 및 95-99, *Sciacca v. Italy*, § 29, *Reklos and Davourlis v. Greece*, § 40, 유명한 여배우의 개인 주소의 보호에 관한 *Alkaya v. Turkey* 사건). 하지만, 정당한 기대가 언제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Bărbulescu v. Romania* [GC], § 73). 재판소의 판례는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주요 전제로 하며, 여기에는 자신의 이미지가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부모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사설병원에서 신생아의 사진을 촬영한 사건으로 *Reklos and Davourlis v. Greece* § 40 및 43; 공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출산 후 퇴원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잡지에 공개한 사건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96, *Dupate v. Latvia*, §§ 49-76,).

158. 국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을 금지하는 효과적인 형벌조항이나 민법조항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Söderman v. Sweden* [GC] 사건은 의붓아버지가 발가벗은 14세 소녀를 비밀리에 촬영하려고 했던 사건으로, 청구인은 당시 스웨덴 법제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개인적 온전성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구인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사건은 한 언론인을 그녀의 집에서 비밀리에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었고 실제로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침해에 대해 실효성있는 범죄수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할 적극적 의무가 있음에도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59. 재판소는 영상 자료가 녹화, 저장, 공개되는 공공장소에 대한 비디오 감시가 제8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Peck v. the United Kingdom*, §§ 57-63). 특히 감시카메라에 찍힌 청구인의 자살시도 장면을 방송에서 사용하도록 언론에 공개한 것은 당시 청구인의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ibid.*, § 87). 슈퍼마켓에서 고용주의 비디오 감시(*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 93)와 대학 원형극장에서의 비디오 감시(*Antović and Mirković v. Montenegro*)는 협약 제8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160. 체포된 사람이나 피고인의 경우, 재판소는 여러 사건들에서, 법 집행 상황에서의 비디오 녹화 또는 경찰이 청구인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이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소는 경찰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 파일에 있는 청구인의 사진을 언론에서 이용하도록 한 사건(*Khuzhin and Others v. Russia*, §§ 115-118, *Sciacca v. Italy*, §§ 29-31, *Khmel v. Russia*, § 40, *Toma v. Romania*, §§ 90-93), 그리고 법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청구인의 사진을 공개수배 게시판에 올린 사건(*Giorgi Nikolaishvili v. Georgia*, §§ 129-131)에서 제8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161. *Gaughran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경찰은 청구인을 체포한 후 범인식별 목적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 사진들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무기한 보관되었고, 경찰은 얼굴인식과 얼굴매핑(facial mapping) 기술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한 것이 청구인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70). 이어, 재판소는 해당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97). 반면, 재판소는 재범자의 사진을

5년 동안만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 기간을 제한하고 법원이 청구인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존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8조 위반이 없었다고 판결했다(*P.N. v. Germany*, §§ 76-90). 또한, 재판소는 동의없이 테러용의자의 사진을 찍고 보관한 조치가 테러방지라는 민주사회의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Murray v. the United Kingdom*, § 93).

162. 제8조에 의하더라도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피해자에게 반드시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Kahn v. Germany*, § 75). 이 사건에서 전 독일 축구대표팀 골키퍼의 두 자녀의 사진을 게재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출판사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또한 *Egill Einarsson v. Iceland (no. 2)*, §§ 36-37 및 § 39와 그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들 참조).

2. 개인의 명예 보호: 명예훼손

163. 명예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일부로서 협약 제8조의 보호를 받는다(*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3, *Chauvy and Others v. France*, § 70, *Pfeifer v. Austria*, § 35, *Petrina v. Romania*, § 28, *Polanco Torres and Movilla Polanco v. Spain*, § 40).
164. 제8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 일정 수준의 심각성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3, *Bédat v. Switzerland* [GC], § 72, [GC], § 76, *Denisov v. Ukraine* [GC], § 112, *Balaskas v. Greece*, § 40, *Vučina v. Croatia* (dec.), § 31, *Miljević v. Croatia*, §§ 61-62). 이 요건은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평판 모두에 적용된다(*Denisov v. Ukraine* [GC], § 112). 또한 청구인과 그 명예에 대한 공격 사이에 충분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Putistin v. Ukraine*, § 40).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든 사람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범죄혐의에 대해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Jishkariani v. Georgia*, § 41).
165. 재판소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방송된 시청각 녹화물에 관한 사건에서, 그 방송은 청구인이 아니라 특정 산업의 상업적 관행을 비판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제8조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Haldimann and Others v. Switzerland*, § 52). 반면, 청구인을 "외국인 종교 보따리장수"으로 묘사한 텔레비전 보도에 대해서는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Bremner v. Turkey*, §§ 72 및 84).
166. 재판소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언급되었던 당시 청구인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일반 시민과 비교할 때 공인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비판의 강도, 발언의 주제를 고려한다(*Jishkariani v. Georgia*). 인권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 공공기관에 의해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인권 전공의 대학교수는, 훨씬 강도높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인과 같을 수 없다(*Kaboğlu and Oran v. Turkey*, § 74). 다만, 공인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개인은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Balaskas v. Greece*, § 50). 사인도 그 자신에 의해서 또는 공인과의 관계 때문에 공적 영역에 속하게 될 수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노출에 취약해질 수

있지만, 공인의 배우자가 단지 사적인 또는 가족생활에서의 관계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Dupate v. Latvia*, §§ 54-57).

167. 공무원이 개인의 범죄사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경우, 일반 대중은 그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비난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인 개인이 그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idem*, §§ 59-62). 같은 취지에서 *Egill Einarrsson v. Iceland* 사건에서는 아이슬란드의 한 유명 인사가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에 첨부된 댓글을 통해 “강간범”이라는 표현으로 공격받았다. 재판소는 이러한 유형의 댓글이 일정 수준의 심각성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인의 사생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52). 재판소는, 비록 자신의 행동과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논란을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공개적인 비난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8조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52).
168. 동시에, 제8조의 관련 판례들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의 구제를 위한 반론절차를 일반적인 구체절차로 규정할 의무는 없다(*Gülen v. Turkey* (dec.), § 64).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터키법에 규정된 반론권 행사는 예외적인 비상절차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명예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론권 절차를 거친 것은 국내의 구체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69. 인터넷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심각성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Tamiz v. the United Kingdom* (dec.), §§ 80-81). 어쨌든 수백만의 인터넷 사용자는 매일 온라인에 댓글을 달고 그중 많은 사용자는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댓글은 너무 사소한 성격의 댓글일 가능성이 크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기에는 댓글의 도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블로그에 달린 댓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심각성심사의 최소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소한 대부분의 댓글이 분명 모욕적이고, 대체로 좀 더 천박한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많은 인터넷포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저속한 욕설”에 불과하다는 영국 법원의 판단에 동의를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청구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표현들 중 많은 부분은, 그것이 작성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독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억측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하였다.
170. *Tamiz v. the United Kingdom*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범위를 구글과 같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장되는 제10조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하였다(§§ 83-84). 재판소는 관련 국가가 폭넓은 판단재량을 가진다고 판결하면서,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광범위한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주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토론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인터넷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90). 다른 사람이 블로그에 게시하는 댓글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8조에는 회원국이 그 관할에 속하는 사람들이 갖는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Pihl v. Sweden* (dec.), § 28, 또한 *Høiness v. Norway* 참조). *Egill Einarsson v. Iceland (no. 2)* 사건에서 아이슬란드 법원은 페이스북에서의 명예훼손 발언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비용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배상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자체는 제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는, 해당 발언이 페이스북 페이지의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다른 댓글 중 하나로 게시되었다는 사실이나 청구인이 요청하는 즉시 작성자가 해당 댓글을 삭제했다는 사실 등이 고려되었다(§§ 38-39).

171. *Denisov v. Ukraine* [GC] 사건은 고용 분쟁과 관련하여 "직업적, 사회적 평판"에 대한 기존의 주요한 판례 원칙을 제시했다(§§ 115-117 및 앞의 '직업 또는 영업 활동' 참조).
172. 제8조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로 예견할 수 있었던 명예훼손에 대해 제소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Gillberg v. Sweden* [GC], §§ 67-68에서, 청구인은 유죄판결 자체가 명예와 평판을 훼손하여 "사생활" 향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 49, *Mikolajová v. Slovakia*, § 57, *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76 등 참조). 유죄판결 자체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또한 "사생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법적 책임을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와도 관련된다(*Denisov v. Ukraine* [GC], § 98 및 앞의 '직업 또는 영업 활동' 참조). 이와 달리, *Vicent Del Campo v. Spain*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고 소송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법원에 출석하도록 소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는 청구인의 이름과 청구인이 저질렀다는 괴롭힘 행위가 자세하게 언급되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판결은 청구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결과로 볼 수 없고 설득력 있는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39-42 및 48-56).
173. 재판소는 또한 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특정 수준에 이르는 경우 집단의 정체성과 집단 구성원의 자존감,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점에서 부정적 고정관념은 집단 구성원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집시 출신인 청구인이 집시 공동체를 주제로 저술된 저서인 "터키의 집시(The Gypsies of Turkey)"에 포함된 일부 구절에 모욕감을 느낀 사건으로 *Aksu v. Turkey* [GC], §§ 58-61,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언어적인 위협과 협박을 나타낸 반집시(anti-Roma) 시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Király and Dömötör v. Hungary*, § 43.). 재판소는 또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서 (이질적인)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마우트하우젠(Mauthausen) 수용소의 수감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부정적 고정관념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Lewit v. Austria*, § 46).

174. 제8조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협약상의 다른 권리들을 형량하는 경우, 재판소는 국가가 두 권리 모두 보장해야 하고, 만약 한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권리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다면 그 제한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도록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 123). 이 사건은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와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관한 사건이었다. 재판소는 "결혼한 사제"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가톨릭종교와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직의 재계약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89).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된 부모에 대해, 재판소는 비밀정보의 무단 공개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제6조제2항)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제8조 위반으로 판결했다(*Ageyevy v. Russia*, § 155).
175. 재판소는 제10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제8조에 규정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형량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러한 기준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는지, 관련 당사자가 얼마나 유명한지와 해당 보도의 주제, 관련 당사자의 과거 행동, 정보 획득 방법 및 진실성, 게재된 내용, 방식 및 결과, 부과된 제재의 강도 등이 포함된다(*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9-95). 이러한 기준이 모든 요소를 포괄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조정해야 한다(*Axel Springer SE and RTL Television GmbH v. Germany*, § 42, *Jishkariani v. Georgia*, § 46).
176.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은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Kaboğlu and Oran v. Turkey*, § 74), 언론의 임무는 (책무 및 책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익에 관한 모든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며, 일반 대중은 이러한 정보와 생각을 전달받을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보도와 논평도 포함된다(*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79). 재판소는 또한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 즉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나고 사회적 담론을 생성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그러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114). 기자는 특정 사건을 취재할 때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140).

Tamiz v. the United Kingdom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범위를 구글과 같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장되는 제10조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하였다(§§ 83-84). 재판소는 관련 국가가 폭넓은 판단재량을 가진다고 판결하면서,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광범위한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주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토론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인터넷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90). 다른 사람이 블로그에 게시하는 댓글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8조에는 회원국이 그 관할에 속하는 사람들이 갖는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Pihl v. Sweden* (dec.), § 28). *Egill Einarsson v. Iceland* (no. 2) 사건에서 아이슬란드 법원은 페이스북에서의 명예훼손 발언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비용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배상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자체는 제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는,

해당 발언이 페이스북 페이지의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다른 댓글 중 하나로 게시되었다는 사실이나 청구인이 요청하는 즉시 작성자가 해당 댓글을 삭제했다는 사실 등이 고려되었다(§§ 38-39).

177. *Sousa Goucha v. Portugal* 사건에서 재판소는 풍자물과 관련된 사안의 접근법으로 "합리적인 독자(reasonable reader)" 기준을 제시했다(§50, 또한 *Nikowitz and 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 24-26 참조). 또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패러디에 대해 특히 넓은 판단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Sousa Goucha v. Portugal*, § 50). 이 사건에서 한 유명 연예인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 발표한 직후 한 TV 프로그램 방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해당 농담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의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Alves da Silva v. Portugal*, 및 *Welsh and Silva Canha v. Portugal* 참조), 문제의 발언이 제10조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제8조에 따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Sousa Goucha v. Portugal*, § 51). 담배 광고에서 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동의없이 사용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것이 광고의 재미를 위한 것이라는 점, 해당 광고의 상업적 특성, 청구인의 과거 행동 등이 제8조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견해보다 더 설득력을 지닌다고 판결했다(*Bohlen v. Germany*, §§ 58-60, 또한 *Ernst August von Hannover v. Germany*, § 57 참조).
178. 제8조의 사생활 보호에 회사의 평판에 대한 보호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판소는 논의를 열어두고 있다(*Firma EDV für Sie, EfS Elektronische Datenverarbeitung Dienstleistungs GmbH v. Germany* (dec.), § 23). 그러나 제10조에서, 재판소는 기관의 "존엄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같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Kharlamov v. Russia*, § 29). 재판소의 관점으로 볼 때, 대학의 권한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제도적 이익에 불과하며, 이러한 이익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에 대한 보호"와 동일한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개인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명성을 훼손하는 것과 도덕적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상업적 평판을 훼손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판결한 *Uj v. Hungary*, § 22도 함께 참조).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Margulev v. Russia*, § 45 사건에서 법인의 평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평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자는 개인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자에는 그러한 도덕적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평판에 대한 권리를 원용하는 주체가 공권력인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179. 제8조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사망한 가족구성원의 명예는 상황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8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Jakovljević v. Serbia* (dec.), §§ 30-31).

3. 데이터 보호

180. 개인정보보호는 제8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을 향유하는 데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정보가 이미 공공 영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에 따른 보호 범위에서 반드시 제외되지는 않는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33-134). 제8조는 정보의 자기결정(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이라는 방식의 권리를 규정하며, 독립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제8조의 권리들이 관련될 수 있는 형태나 방식으로 수집, 처리, 배포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특정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모아져 있거나,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정도와 방식을 넘어 관련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사생활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국가의 법률은 제8조의 보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개인정보의 사용도 방지하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ibid.*, §§ 136-138).

이 주제는 관련 판례해설서인 “데이터 보호”(Case-Law Guide: Data protection)에서 상세히 검토되어 있다(유럽인권재판소 웹사이트: www.echr.coe.int – Case-law – Case-law analysis) 참조).

4. 개인정보접근권

181. 개인적 발달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세부 정보뿐만 아니라 부모, 출신, 어린 시절과 유년기의 성장과 같이 개인적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에 관한 진실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관련해 협약이 보호하는 핵심적인 이익이 포함된다(*Mikulić v. Croatia*, §§ 54 및 64, *Odièvre v. France* [GC], §§ 42 및 44). 출생, 특히 아이가 태어난 환경은 협약 제8조가 보장하는 아동의 사생활과 그 이후 성인의 사생활의 일부를 형성한다(*ibid.*, § 29).
182. 재판소는 개인이 사생활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기록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기록을 작성하는 데 참여한 자를 찾을 수 없거나 그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하지 않는 때에도 그 정보의 이용을 구하는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여자가 답변하지 않거나 동의를 보류하는 경우 기록에 대한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기관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제도가 비례원칙에 부합한다(*Gaskin v. the United Kingdom*, § 49, *M.G. v. the United Kingdom*, § 27).
183. 자신의 출신과 친생부모의 신원 정보의 이용 문제는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관한 사건 기록이나 부성추정에 관련된 증거의 이용 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Odièvre v. France* [GC], § 43).
184. 재판소는 안보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Haralambie v. Romania*, § 96, *Joanna Szulc v. Poland*, § 87). 다만, 재판소는 테러 용의자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국가안보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국가의 이익이, 정보기관이 보관중인 자신들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청구인들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Segerstedt-Wiberg and Others v. Sweden*, § 91). 재판소는, 특히 국가안보기관의 공작과 관련된 소송에서, 특정 문서와 기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정당성은 과거사청산 절차와 관련하여 그 효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Turek v. Slovakia*, § 115)

185. 법은 청구인이 자신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Yonchev v. Bulgaria*, §§ 49-53). 이 사건의 청구인인 경찰관은 해외파견 직위에 지원했지만 두 차례 심리검사 결과 해당 직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특정 문서가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무부 인사파일, 특히 심리검사 결과 열람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5. 개인의 건강 정보

186. 건강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모든 협약 회원국 법제도의 필수 원칙이다. 이는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그리고 의료서비스 전체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건강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성격의 정보를 밝히는 것을 주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의료서비스의 도움 자체를 단념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의 건강이 위태롭게 되고, 전염병인 경우에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법률은 협약 제8조의 보장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 건강정보의 교환과 공개를 방지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Mockutė v. Lithuania*, §§ 93-94, *Kotilainen and Others v. Finland*, § 83).

187.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기타 고려는 특히 에이즈(HIV)에 관한 정보의 비밀 보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낙인과 배제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과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Z v. Finland*, § 96, *C.C. v. Spain*, § 33, *Y v. Turkey* (dec.), § 68).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 이익은 그 제한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지를 형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그 제한은 가장 중요한 요구들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제8조와 양립할 수 없는데, 공공의 이익(*Z v. Finland*, § 96, *Y v. Turkey* (dec.) § 78), 청구인 자신의 이익 또는 병원 직원들의 안전(*ibid.*, § 77-78) 등에서의 요구들이다. 운전면허 취득이나 구직신청과 같은 다양한 경우에 필요한 증명서에서 민감한 의료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에도 비례하지 않는다(*P.T. v. the Republic of Moldova*, §§ 31-32).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의 수혈거부 이후 국립병원이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신도들의 진료 파일을 검찰에 공개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서 제8조에 위반된다(*Avilkina and Others v. Russia*, § 54). 반면, 심리전문가가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것은 공익을 위한 토론에 기여하므로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Fürst-Pfeifer v. Austria*, § 45).

188. 재판소는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장기간 수집 및 보관하고 원래 수집 사유와 무관한 목적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공개 및 사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사생활 존중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하였다(*Surikov v. Ukraine*, §§ 70 및 89, 고용주에게 종업원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의료기록을 공개한 것에 관한 사건).

189. 병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Office)과 더 광범위하게는 공공기관에 낙태 관련 정보를 포함한 의료기록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환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M.S. v. Sweden*, § 35).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비공개심리신청을 형사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이 개별적인 비례성 심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8조 위반이라고 하였다(*Frâncu v. Romania*, §§ 63-75). 의료기관이 언론과 검찰에 의료자료를 공개한 행위와 의료의 질을 감시하는 기관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보았다(*Mockuté v. Lithuania*, § 95).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정보를 공개한 것 또한 제8조에 대한 제한으로 인정되었다(§ 100).

190. 건강권 및 재산권 관련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제8조에서 의미하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범위에 속한다(*K.H. and Others v. Slovakia*, § 44). 국가는 사생활이나 가족생활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데 내재하는 적극적 의무로서 건강을 위협하는 필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Guerra and Others v. Italy*, §§ 58 및 60). 특히, 국가가 위험 활동에 관여하고, 드러나지 않은 요인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은 그들 개인이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이용가능한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McGinley and Egan v. the United Kingdom*, §§ 97 및 101, *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 167).

6. 정보기관 기타 국가기관에 의한 파일 또는 데이터 수집

191. 재판소는 국가가 비밀감시를 수행하는 경우 감시대상이 이를 알지 못해 해당 감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개인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가기관이나 협약상 기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로 제8조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Klass and Others v. Germany*, § 36). 이는 기술의 개발로 첩보 및 감시 수단이 발달한 경우에, 그리고 국가가 무질서, 범죄 또는 테러를 방지하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상황과 특히 관련이 있다(*ibid.*, § 48). 특정한 상황에서는 비밀감시조치가 있었던 사실 또는 그러한 조치를 허용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171-172).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감시조치의 경우 비밀성으로 인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이나 재판소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케네디 판례의 접근법(*Kennedy v. the United Kingdom*, § 124)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92. 통신에 대한 비밀감청을 허용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법령의 모든 적용 대상은 감시 위협을 받게 된다(*Weber and Saravia v. Germany* (dec.), § 78). 입법부와 국가기관은 어떤 감시체계가 필요한지 검토할 때 일정한 판단재량을 행사하지만, 회원국이 비밀감시에 관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소는 회원국이 간첩행위와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미명 하에 국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종류의 감시체계를 채택하든 간에, 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ibid.*, § 106). 시민들에 대한 비밀감시 권한은 민주제도를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용인할 수 있다(*Klass and Others v. Germany*, § 42; *Szabó and Vissy v Hungary*, §§ 72-73) 이러한 제한은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한 목적 또는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Segerstedt-Wiberg and Others v. Sweden*, § 88).

193. 재판소는 절차적 보호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비밀작전 중 원격 무선전송장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대화의 녹음이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Bykov v. Russia* [GC], §§ 81 및 83; *Oleynik v. Russia*, §§ 75-79).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정보 수집 및 저장 활동은 해당 정보가 공공장소에서 수집되었거나(*Peck v. the United Kingdom*, § 59; *P.G. and J.H. v. the United Kingdom*, §§ 57-59) 개인의 직업적 또는 공적 활동에만 관련된 경우에도(*Amann v. Switzerland* [GC], §§ 65-67; *Rotaru v. Romania* [GC], §§ 43-44)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제한으로 보았다. 개인의 자동차에 GPS 장치를 부착하여 공적인 공간에서 위치와 동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 행위 또한 사생활에 대한 제한으로 보았다(*Uzun v. Germany*, §§ 51-53).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국내 기관에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와 행사 방법이 국내법에 충분히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히 남용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수단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협약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사생활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Shimovolos v. Russia*, § 66, 청구인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러시아에서 기차나 항공으로 이동한 정보가 보관된 감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사건). 각국의 법률은 감시조치의 명령, 실행 및 필요한 경우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충분히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Szabó and Vissy v Hungary*). 이 판결에 따르면, 해당 제한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모든 조치가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개별 작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비밀감시는 공권력의 남용이 되기 쉽다(§§ 72-73).

194. 재판소는 또한 변호사의 은행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이 사생활의 범위에 속하는 직업상 비밀유지를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 판결했다(*Brito Ferrinho Bexiga Villa-Nova v. Portugal*, § 59).

7. 경찰의 감시

195. 재판소는 테러 용의자에 대한 GPS 감시와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처리 및 사용이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Uzun v. Germany*, § 81).

196. 그러나 재판소는 경찰이 인권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한 개인의 이름을 비밀감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그의 동선을 추적한 조치가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Shimovolos v. Russia*, § 66, 청구인의 이름이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는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구축된 것으로 공표되지 않았고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어떤 이유로 등록되었는지, 어떤 유형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알 수 없었다).

197. 서신과 전화통화(사업장 및 가정에서의 통화 포함)에 대한 감시는 제8조에 따른 사생활과 통신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은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다(*Halford v. the United Kingdom*, § 44; *Malone v. the United Kingdom*, § 64; *Weber and Saravia v. Germany* (dec.), §§ 76-79). 이것이 반드시 비밀요원의 활동을 지시한 것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Lüdi v. Switzerland*, § 40).
198. 도청 및 기타 형태의 전화 감청은 사생활과 통신에 대한 심각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명확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ruslin v. France*, § 33). 청구인의 사생활 존중권에 대한 침해의 심각성과 비밀감시를 통해 국가안보를 유지하고자 하는 피청구국의 이익을 형량할 때, 국가기관은 국가안보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일정한 판단재량을 누린다. 그러나 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가능한 조치의 성격, 범위, 기간, 조치를 명령할 때 필요한 근거, 해당 조치를 승인, 수행, 감독하는 관할기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구제수단의 유형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한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32; *Irfan Güzel v. Turkey*, § 85).
199. *Hambardzumyan v. Armenia*, §§ 63-68 사건에서, 경찰이 음성을 녹음하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허가받은 영장에 청구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은 영장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을 감시하고 전화를 감청했다. 재판소는 비밀감시의 근거가 되는 법원의 허가는 그 내용과, 특히 그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자의 신원에 대해, 추측과 추정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는 비밀감시에 대해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는 비밀감시가 협약 제8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법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 재판소는 범죄 기소 목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전화통화를 감청하거나, 통화 시간을 기록하거나, 청취한 경우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Malone v. the United Kingdom*, *Khan v. the United Kingdom*). "법에 따라"라는 문구는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해당 법령의 실질과도 관련이 있으며, 법의 지배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Halford v. the United Kingdom*, § 49). 공권력의 비밀감시와 관련하여 법은 제8조가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의적 제한을 방지하는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칸 대 영국, §§ 26-28). 또한, 법은 공권력이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비밀감시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적절히 알릴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한 표현으로 명시되어야 한다(*ibid.*). 비밀감청장치 사용을 규제할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관한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일반 국민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제한은 협약 제8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법에 따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ibid.*, §§ 27-28).

201. 대화 상대방이 사적인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제8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 조사기관의 업무를 위해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사인이 해당 기관의 목인과 기술적 지원 아래 비밀리에 대화를 감시하고 녹취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Van Vondel v. the Netherlands*, § 49). 전화 도청을 통해 획득한 특정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Drakšas v. Lithuania*, § 62).
202. 재판소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특히 이 관계의 특징인 대화 내용의 비밀성을 보호하고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서 안에서 변호사와 접견 중인 사람을 감시하는 행위를 변호사와 의뢰인의 통화를 감청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본다(*R.E. v. the United Kingdom*, § 131).

8. 경찰의 검문검색

203. 재판소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영역이 있으며, 이는 "사생활"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Gillan and Quinton v. the United Kingdom*, § 61).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권력이 충분히 억제되지 않았고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적 보호수단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법행위를 범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없는 사람을 공공장소에서 불러 세워 수색한 조치가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ibid.*, § 87).
204. *Beghal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재판소는 경찰, 출입국관리공무원, 세관공무원이 테러방지법에 따라 항만, 공항, 국제철도 터미널에서 승객을 정지, 조사, 수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검토했다.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데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고 테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없어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생활 존중권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지, 조사, 수색 권한을 충분히 제한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권한의 지리적, 시간적 범위, 권한행사의 조건과 시기의 결정에 부여된 재량, 권한행사로 발생하는 침해의 차단, 권한행사에 대해 사법적 심사의 가능성, 권한 사용에 대한 독립기관의 감독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했다. 재판소는 테러리스트의 국제적인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했고 국가기관이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에서 폭넓은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으나, 해당 권한이 충분히 억제되지 않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한 법적 보호수단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205.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의 부재중에 무질서나 범죄의 위험이 거의 없는 집에 경찰관이 들어간 것은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McLeod v. the United Kingdom*, § 58; *Funke v. France*, § 48).
206. 테러 관련 범죄용의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인이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국가가 제8조제2항에 따라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Murray v. the United Kingdom*, §§ 90-91)

9. 주거의 출입, 압수수색

207. 일부 사건들에서 재판소는 "주거에 대한 권리"가 아닌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의 관점에서 퇴거 조치를 심리한다(*Hirtu and Others v. France*, §§ 65-66;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 107).
208. 재판소는 "주거에 대한 권리"나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관점에서도 수색을 심리할 수 있다(*Vinks and Ribicka v. Latvia*, § 92; 청구인의 수하물 및 핸드백 조사에 관한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 148). 제한은 제8조제2항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제한은 "법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해당 조항에 명시된 정당한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추구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Vinks and Ribicka v. Latvia*, §§ 93-104, 추가 참조 포함). *Vinks* 및 *Ribicka* 사건은 대테러 특공대가 경제범죄 혐의와 관련해 두 청구인의 집을 이른 아침에 급습한 것과 관련된 사건이다. 회원국은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범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같은 방법이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이나 일반예방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특공대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로 개인이 겪는 사생활 존중권에 대한 침해의 심각성과 공권력의 남용 및 인간의 존엄성 침해 위험을 고려할 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13-114, 118).

10. 변호사-의뢰인 관계

209. 재판소는 직무상 비밀유지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의 기초이며, 직무상 비밀유지를 보호하는 것은 특히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의뢰인의 권리에서 도출되는 필연적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위법행위를 입증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André and Another v. France*, § 41).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변호사와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자유롭게 도움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분명히 공익과 부합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원칙적으로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이 원칙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도움을 받는 상황이든 일반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상황이든 관계없이 변호사와 상담하는 사람은 자신이 변호사와 나누는 대화가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Altay v. Turkey (no. 2)*, §§ 49-51 및 추가 참조 포함).
210. *Altay v. Turkey (no. 2)* 사건에서, 재판소는 개인이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 경우 이는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사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처음으로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변호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은밀한 개인적인 문제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도움을 받는 상황이든 일반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상황이든 관계없이 변호사와 상담하는 사람은 자신이 변호사와 나누는 대화가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49).

211. 변호사와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자유롭게 도움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분명히 공익과 부합한다(§ 50, *Campbell v. the United Kingdom*, § 46 사건에 대한 참조 포함). 원칙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와 서신의 교환은 제8조에 따라 특권을 인정받는다(§ 51).
212. 변호사와 비밀리에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 부과되는 제한이 그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약화시키고 권리의 실효성을 박탈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판소는 그 제한이 관련 당사자에게 예견가능하고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달성하려는 목적과 비례관계에 있는,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임을 수증할 수 있어야 한다.
213. 변호사와의 상담 및 대화의 비공개성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국가가 행사하는 판단재량은 좁다. 따라서, 중대 범죄의 실행이나 교도소의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52).

11. 구금 및 수감 중의 사생활

214. 합법적이고 정당한 구금은 제8조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구금자 관련 사건에서 제8조의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는 개별 사건의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구금자가 외부와 접촉하는 문제의 경우 면회의 횟수나 지속시간에 대한 제한을 비롯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제8조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구금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Khoroshenko v. Russia* [GC], §§ 106, 109, 116-149; 또한 면회 및 전화통화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Lebois v. Bulgaria*, §§ 61-64, *Bădulescu v. Portugal*, § 35 및 36 참조).
215. 자유를 박탈당한 재소자의 상황과 관련해, 재판소는 *Altay v. Turkey (no. 2)*. 사건에서 처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기밀성을 강조했다. 재판소는 개인이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 경우 이는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49-50).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두의 대면 대화와 서신 교환은 원칙적으로 제8조에 따라 특권을 인정받는다(§ 51). 재판소는 또한 교도관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변호사와 소통할 권리가 개인의 방어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6조제3항제(c)호와 관련된다고 언급했다. 교도관이 참석하여 변호사를 접견할 경우 재소자는 진행중인 소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복을 우려하여 교도소 내의 학대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특권과 재소자와 그가 선임한 대리인 사이의 대화의 비공개성을 보장할 국가기관의 의무는 널리 인정되는 국제규범에 속한다(§ 50).

216. 이 사건은 재소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 의무적으로 교도관이 참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피구금자와 변호사 간에 비밀리에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 변호사와의 상담 및 대화의 비공개성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국가가 행사하는 판단재량은 좁다. 따라서, 중대 범죄의 실행이나 교도소의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52).
217. 해당 사건의 경우, 터키 법원은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는 동안 교도관이 참석하도록 명령했는데, 과거 그 변호사가 청구인에게 변호와 관련이 없는 책과 정기 간행물을 보낸 것이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재판소는 문제의 조치가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재판소는 의뢰인과의 관계와 관련한 특정한 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협약상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변호사가 범죄에 관여되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거나, 특정한 폐습을 막으려는 노력과 관련한 경우이다. 그러나 변호사가 사법행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소송당사자와 법원 사이의 중개자로서 수행하는 역할에 비추어 법의 담당자라고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들에 관하여는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6).
218. *Gorlov and Others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감방에 있는 재소자에 대한 상시적인 비디오감시에 대해, 자의적인 집행으로부터 재소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비디오감시의 범위와 방식을 충분히 명확한 문구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디오감시는 협약 제8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교도소 당국이 미결재소자와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재소자에 대해, 교도소 내의 모든 구역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기간의 정함도 없고 정기적인 심사절차도 없이 상시적인 비디오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법에는 담당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19. 재판소는 *Szafrański v. Poland*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른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박탈당한 것은 국가가 청구인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39-41).

D. 정체성과 자율성

220. 제8조는 개인이 인격 발달과 인격 실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을 개인에게 보장한다(*A.-M.V. v. Finland*, § 76; *Brüggemann and Scheuten v. Germany*, 위원회 결정; *National Federation of Sportspersons' Associations and Unions (FNASS) and Others v. France*, § 153).

1. 자기계발권 및 자기결정권

221. 제8조는 개인적 발달에 대한 권리와 다른 사람 및 외부와의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호한다(*Niemietz v. Germany*, § 29; *Pretty v. the United Kingdom*, §§ 61 및 67; *Oleksandr Volkov v. Ukraine*, §§ 165-167; *El 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248-250, 청구인의 비밀 및 비사법적 납치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사건).
222. 입양을 신청할 권리와 입양 신청을 공정하게 심사받을 권리는 부모가 되기로 한 부부의 결정을 고려할 때 "사생활"의 범위에 속한다(*A.H. and Others v. Russia*, § 383). 재판소는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사건에서 대리모 계약을 통해 부부가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다시는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아이와 헤어지게 된 것과 그러한 상황이 부부의 사생활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재판소는 자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청구인들의 이익과 사안에서 문제되는 공익을 형량한 후, 이탈리아 법원이 청구인들과 그 유아의 분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이익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했다고 판결했다(§ 215). *Lazoriva v. Ukraine*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다섯살 난 조카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 조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희망이 충분한 법적, 사실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러한 희망 또한 사생활의 문제라고 판결했다(§ 66). 이에 따라, 조카와 청구인의 법적 관계를 단절하고 조카를 양육하려는 청구인의 요구를 가로막는 제3자의 입양은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제한에 해당했다(§ 68).
223. 자기계발권과 자기결정권이 개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공적 활동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Frien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 40-43, 사냥개를 동반한 야생 동물의 사냥에 관한 사건). 실제로 모든 유형의 관계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를 기를 권리는 제8조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X. v. Iceland*, 위원회 결정).

2. 혈통을 찾을 권리

224. 재판소는 자신의 혈통과 부모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사생활권 및 가족생활권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의 정체성의 필수 요소임을 인정했다(*Odièvre v. France*, [GC], § 29; *Gaskin v. the United Kingdom*, § 39; *Çapın v. Turkey*, §§ 33- 34; *Boljević v. Serbia*, § 28).
225. 사망자의 DNA 샘플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사망 후 DNA 샘플 채취 요청은 사망자의 사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없다(*Jäggi v. Switzerland*, § 42; *Boljević v. Serbia*, § 54).
226. 재판소는 국가가 친생추정을 받는 부에 대해 DNA 검사를 수행할 의무는 없지만, 독립적인 기관이 친자관계의 존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하는 대안이 법체계 안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Mikulić v. Croatia* (§§ 52-55) 사건에서 혼외관계에서 출생한 청구인은 크로아티아 사법제도의 친자관계확인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이러한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크로아티아 법원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청구인이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크로아티아가 협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생활의 "존중"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ibid.*, § 68). 재판소는 또한 장애아동과 같이 특히 취약한 아동들이 자신의 친자관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A.M.M. v. Romania*, §§ 58-65). 재판소는 *Jaggi v. Switzerland* 사건에서 친생추정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친자관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사망한 남성을 상대로 요청한 DNA 검사 허가를 거부한 국가기관의 결정이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청구인의 이익이 DNA 샘플 채취에 반대한 다른 유족들의 이익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었다(§§ 40-44). *Boljević v. Serbia*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 사건의 특수한 사정, 즉 제척기간이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는데, 그 사건은 사망한 남성에게 DNA 검사를 통해 그가 사망하기 전에 확정된 친생부인 최종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제척기간 경과로 불가능하게 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판결은 DNA 검사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 내려진 것이었고 청구인은 그 판결을 알지 못했다. 청구인은 친자관계확인 소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판소는 법적안정성의 확보만으로는 친자관계를 확인하려는 청구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55).

227. 재판소는 과거 친자관계확인소송 당시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하여 관련 당사자 모두가 친자관계에 관한 생물학적 진실을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법원이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건에 대해 제8조 위반으로 판결했다(*Bocu v. Romania*, §§ 33-36).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인지하였다는 이유로 친부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친자관계를 확인받지 못하였고, 법원이 이에 대해 자세히 심리하지 않은 사건에서 제8조 위반을 인정했다(*Koychev v. Bulgaria*, §§ 59-68).
228. 재판소는 친자관계확인소송에 대한 제척기간이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며 따라서 그 자체로 협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소는 *Çapin v. Turkey* 사건에서 자신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가진 아동의 이익과 수년 전 사정들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추정상의 아버지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87).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의 예외적인 사정, 즉 어린시절 친부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고, 18세에 조국을 떠나 25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어머니와 친척들로부터 멀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이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건에서 충돌하는 이익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75-76). 재판소는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알고 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229. *Odièvre v. France* [GC] 사건에서 어린 시절에 입양된 청구인은 친모와 친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했으나, 자녀를 입양 보낸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하는 특별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요청이 거부되었다. 재판소는 국가가 충돌하는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했으므로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44-49).

230. 그러나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 권리와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출생 직후 버려진 아동이 자신의 혈통 또는 어머니의 신원에 관한 비식별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8조 위반으로 인정되었다(*Godelli v. Italy*, §§ 57-58).

3. 법적 부모-자녀 관계

231.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모든 사람이 개별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여기에는 법적 부모-자녀 관계가 포함된다(*Mennesson v. France*, § 96). 따라서 제8조는 아동이 회원국 밖의 다른 국가에서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났고 이 아동의 법적 부모가 대리모 출산을 인정하지 않는 외국의 국내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아동을 보호한다. 재판소는 국가가 대리모 출산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나아가 국가는 아동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기에 앞서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따라 법률은 해외에서 대리모 계약을 통해 태어난 아동과 그의 아버지가 되려는 자(이 사건에서는 친부) 사이에 법적 부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여야 한다(*Mennesson v. France*; *Labassee v. France*; *Foulon and Bouvet v. France*).

재판소는 첫번째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제3자가 기증한 난자를 이용한 대리모 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어머니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출생증명서에 "법률상 모(legal mother)"로 기재된 경우, 그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따라 국내법에서도 그 아동과 어머니가 되려는 사람 사이에 법적 모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아동과 그의 어머니가 되려는 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국가의 판단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아동과 어머니가 되려는 사람의 모자 관계가 "실제 현실"이 되었다면, 법률이 그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대리모 계약을 통해 태어난 아동과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국내법상의 인정에 관한 권고적 의견 [GC]). 재판소는 *Mennesson v. France* 사건의 원칙과 위에서 언급한 권고적 의견을 적용하여 대리모 계약에 따라 태어난 아동의 유전적 어머니(genetic mother)가 그 아동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아동의 입양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유전적 어머니의 사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D v. France*).

4. 종교적, 철학적 신념

232. 제9조가 대부분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안을 규율하나, 재판소는 개인의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관한 정보 공개가 제8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신념이 사생활의 가장 내밀한 측면 가운데 일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Folgerø and Others v. Norway* [GC], § 98, 학부모에게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 당국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협약 제8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원하는 외모

233. 재판소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든 다른 사람이 없는 곳이든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외모를 선택하는 문제는 해당 개인의 인격 표현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사생활의 개념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이발(*Popa v. Romania* (dec.), §§ 32-33), 턱수염을 기른다는 이유로 대학 출입을 금지한 것(*Tiğ v. Turkey* (dec.)), 신념과 관련된 이유로 얼굴을 모두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고자 하는 여성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한 조치(*S.A.S. v. France*, [GC], §§ 106-107), 공공 장소에서 옷을 입지 않은 것(*Gough v. the United Kingdom*, §§ 182-184)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서 재판소는 외모에 대한 제한이 비례적인 조치였다고 판결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교도소에서 턱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는 협약 제8조 위반으로 보았는데, 이 사건에서 정부는 턱수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사회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Biržietis v. Lithuania*, §§ 54 및 57-58).

6. 이름/신분증명서에 대한 권리

234. 재판소는 이름과 성에 관련된 사안이 사생활권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Mentzen v. Latvia* (dec.); *Henry Kismoun v. France*). 재판소는 개인의 정체성 및 가족과 연결되는 수단으로서 개인의 이름은 사생활 및 가족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이 과거 아내의 성을 따라 등록되었던 성을 자기 가족의 성을 따라 변경하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한 국가기관의 결정이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Burghartz v. Switzerland*, § 24).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두 명의 터키 남성이 자신들의 성을 "터키어"가 아닌 단어로 변경하려는 것을 거부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터키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구체적인 개인사정을 참작하거나 충돌하는 이익에 대한 형량도 없이, 오로지 법령상 문언들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만을 했다면 제8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Aktaş and Aslaniskender v. Turkey*).
235. 재판소는 이름 또한 "사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Guillot v. France*, §§ 21-22; *Güzel Erdagöz v. Turkey*, § 43; *Garnaga v. Ukraine*, § 36). 그러나 재판소는 이름 등록과 관련된 법령들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한 사건도 있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사건들도 있다(*Guillot v. France* 사건과 *Johansson v. Finland* 사건 비교). 성전환 과정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S.V. v. Italy*, §§ 70-75 사건을 참조하라(아래 성 정체성 참조).
236. 재판소는 기혼 여성이 남편의 성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단합을 나타내는 전통은 더 이상 협약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Ünal Tekeli v. Turkey*, §§ 67-68). 재판소는 국적이 서로 다른 부부가 결혼 후 각자의 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기관의 차별적인 대우가 제8조와 함께 해석한 제14조(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Losonci Rose and Rose v. Switzerland*, § 26). 기존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결정이 자동으로 제8조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Stjerna v. Finland*, § 42; *Siskina and Siskins v. Latvia* (dec.); *Macalin Moxamed Sed Dahir v. Switzerland* (dec.), § 31).

237. 신원증명에 필요한 서류의 압수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신분증이 개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하므로, 법원이 청구인을 석방하면서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Smirnova v. Russia*, §§ 95-97). 그러나 재판소는 새로운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 결정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정부가 재외국민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M. v. Switzerland*, § 67).

7. 성 정체성

238. 제8조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 문제(*Hämäläinen v. Finland*, [GC], § 68), 성전환수술을 받을 수 있는 조건(*L. v. Lithuania*, §§ 56-57; *Schlumpf v. Switzerland*, § 107; *Y.Y. v. Turkey*, §§ 65-66) 및 성전환 시술을 받지 않았거나 원치 않는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 문제에 적용된다(*A.P., Garçon and Nicot v. France*, §§ 95-96).

239. 재판소는 성전환수술을 마친 성전환자가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 되었던 여러 사건을 결정했다(*Rees v. the United Kingdom*; *Cos-sey v. the United Kingdom*; *X, Y and Z v. the United Kingdom*; *Sheffield and Horsham v. the United Kingdom*; *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GC]; *I. v. the United Kingdom* [GC]). 재판소는 *Christine Goodwin*과 *I. v. the United Kingdom*에서 무엇보다도 성전환자가 새롭게 취득한 성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유럽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Goodwin* 사건에서는 특히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 변경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수술을 받은 청구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피청구국이 준수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우선하는 중요한 공익적 요소들이 없다며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93).

240. 재판소는, 21세기에 성전환자의 개인적 발달에 대한 권리와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체적, 도덕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는 그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논쟁적인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간단히 말해, 수술 이후의 성전환자가 두 성별 중 어느 하나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살아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 90; *Grant v. the United Kingdom*, § 40; *L. v. Lithuania*, § 59).

241. 다만, 회원국은 성전환자의 새로운 성을 반영해 공식 문서를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 일정한 판단재량을 가진다. *Hämäläinen v. Finland* [GC] 사건에서 청구인은 혼인 관계를 ‘등록동반자관계(registered partnership)’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성별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제8조가 사생활과 가족생활 모두에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60-61). 재판소는 청구인의 혼인 관계가 ‘시민결합(civil partnership)’ 관계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국가가 성전환 이후 청구인의

새로운 여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례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재판소는 협약이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협약국에 부과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유럽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안이 민감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 성전환자의 새로운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의 제정 여부와 충돌하는 사익과 공익 또는 협약상의 권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핀란드에 폭넓은 판단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67).

242. 성전환자의 새로운 성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A.P., Garçon and Nicot v. France*에서 새로운 성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청구인들이 원치 않는 불임 시술 또는 치료("불임요건")를 받도록 한 불임요건에 대해, 이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협약 제8조뿐 아니라 제3조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의 온전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서(§ 131), 청구인들의 사생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 135). 사실, 불임요건에 관한 국가의 판단재량은 두 가지 이유로 그 폭이 제한되는데, 첫째,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외모를 변화시키는 조건은 개인의 내밀한 정체성과 나아가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측면을 건드리는 것이고, 둘째,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서는 이러한 불임요건을 폐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국가가 폭넓은 판단재량에 따라 "성별 불쾌감 증후군(gender dysphoria syndrome)"에 대한 진단을 사전에 요구하는 것과(§ 139-143) 성전환 사실을 확인하는 검진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150-154).
243. *S.V. v. Italy* 사건에서 국가는 성전환수술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청구인의 개명허가를 불허하였다. 재판소는 그 불허결정이 순전히 형식적인 이유에 근거하였고 신체적 외모와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성전환 과정을 청구인이 수년간 겪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70-75). 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은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인정에 관한 사법절차의 경직성으로 인해 2년 반이라는 불합리한 기간 동안 무력감, 모욕감,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비정상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72).
244. *L. v. Lithuania* 사건에서, 성전환자인 청구인은 부분적인 성전환수술만을 받았는데, 법규정의 미비로 완전한 성전환수술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완전한 성전환수술을 규율하는 법령이 없었으므로, 완전한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새로 발급받는 출생증명서, 여권, 대학졸업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수정될 리 없었다. 재판소는 국가가 공익과 청구인의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실제로, 입법적 공백으로 인해 청구인은 사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4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공공의료서비스에서의 예산제약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Ibid.*, § 59).
245. 보다 최근에는, 성전환자인 청구인이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인정을 규율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완전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해 주고 있다며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출생증명서상 성전환자의 성별을 변경하는 "신속하고 투명하며 이용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X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70). 국가는 시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별 표기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 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생활 존중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이고 이용가능한 절차를 시행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46. *Y.T. v. Bulgar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성전환자의 신체적 외모와 사회적, 가족적 정체성이 달라진 지 오래임에도 성전환자의 새로운 성별을 시민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조치가 청구인의 사생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불가리아 법원은 성별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다른 사례에서는 왜 성전환이 인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74).
247. 성전환수술과 성전환을 위한 다른 시술에 대한 이용가능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다. 재판소는 그러한 시술을 이용할 일반적인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Y.Y. v. Turkey*, § 65), 이러한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절차는 제8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Van Kuck v. Germany*, §§ 82-86; *Schlumpf v. Switzerland*, §§ 115-116). *Schlumpf* 사건에서 재판소는 개인의 성 정체성이라는 사생활의 가장 내밀한 측면 중 하나에 관한 문제에서 국가는 제한적인 판단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104 및 115). *Schlumpf* 사건의 경우, 국가에 수술비를 요청했을 때 67세가 넘었던 청구인의 매우 특정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는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2년의 대기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재판소는 보험회사와 청구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15).
248. 성전환수술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Y.Y. v. Turkey* 사건의 청구인은 성전환수술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터키 정부는 청구인이 영구적 불임에 대한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44). 재판소는 수년 동안 청구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국가의 불허 결정이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121-122).

8. 민족 정체성에 대한 권리

249. 재판소는 민족 정체성, 특히 소수민족 구성원들이 전통에 따라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제8조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국가는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고, 비례성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유럽평의회의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뿐 아니라, 소수민족 구성원들이 가지는 자유로운 자기식별(*self-identification*) 권리의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에 관한 최근의 국제법상 견해들을 언급하면서, 모든 소수민족 구성원들은 그러한 처우를 받지 않기로 선택할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Tasev v. North Macedonia*, §§ 32-33).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자기식별은 소수민족 보호에 있어 국제법의 "초석"이다. 이는 특히 권리의 소극적 측면에 적용된다. 소수민족 보호 측면에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약이나 기타 문서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별한 체제에 종속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3).

250. 재판소는 개인이 속하는 민족을 그가 신고한 대로 등록하기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이 효과적으로 존중받도록 보장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Ciubotaru v. Moldova*, § 53). 집시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적대감의 일부를 형성한 사건의 배경이 된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실효적인 형사절차의 시행 또한 민족 정체성이 존중받도록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R.B. v. Hungary*, §§ 88-91).
251. 민족 집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촉발된 시위에서 물리적 폭력보다는 주로 협박이 발생했던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10조 관련 사건들에서 확립된 원칙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적인 요소는 모욕적 발언이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배경으로 한 것인지, 이러한 발언이 폭력, 증오 또는 편협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촉구에 해당하는지,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다(*Király and Dömötör v. Hungary*, § 72 이하). 반(反) 소수집단 시위를 형사처벌하는 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괴롭힘, 위협, 언어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러한 언어적 협박과 혼란을 용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80).
252.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청구인들의 주거에 대한 공격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에서, 실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 전반적으로 집시에 대한 편견이 팽배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제14조에 비추어 해석할 때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Burlya and Others v. Ukraine*, §§ 169-170).
253. 집시 여성이 이동식주택(caravan)에 거주하는 것은 그 여성의 민족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므로, 국가는 강제퇴거 조치를 시행할 때 이러한 민족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 73; *McCann v. the United Kingdom*, § 55). *Hirtu and Others v. France* 사건에서 재판소는 무허가 정착촌의 집시 집단에 대한 퇴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은 비례성을 판단할 때, 집시들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며 이 점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75).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13년 이상 거주한 이동식주택의 부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즉시퇴거(summary eviction)를 당한 사건에서 절차적 이유를 근거로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처럼 중대한 제한의 경우 "특히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가 필요하며 국가의 판단재량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Connors v. the United Kingdom*, § 86). 그러나 과거에 재판소는 국가적 도시계획 정책이 해당 부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개인적 권리와 지역사회 환경권(및 기타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경우, 이동식주택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Jane Smith v. the United Kingdom* [GC], §§ 119-120; *Lee v. the United Kingdom* [GC]; *Beard v. the United Kingdom* [GC]; *Coster v. the United Kingdom* [GC]).
254. 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국가가 청구인의 지문, 세포 검체, DNA 프로필을 계속 보관하고 청구인의 출신 민족을 알아내기 위해 그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제8조에 따른 청구인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S. and Marper v. the United Kingdom* [GC], § 66).

255. 재판소는 또한 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 집단의 정체성과 그 구성원의 자존감 및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부정적 고정관념은 집단 구성원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집시 출신인 청구인이 집시 공동체를 주제로 저술된 저서인 "터키의 집시(The Gypsies of Turkey)"의 일부 구절에 모욕감을 느낀 사건인 *Aksu v. Turkey*, [GC], §§ 58-61;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언어적 위협과 협박을 가한 반집시 시위와 관련된 사건인 *Király and Dömötör v. Hungary*, § 43.). 재판소는 또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서 (이질적인) 사회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 마우트하우젠(Mauthausen)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부정적 고정관념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Lewit v. Austria*, § 46).
256. 가족의 재결합을 돕는 조치를 시행해야 할 적극적 의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특히 친모로부터 아동을 영구적으로 분리할 경우 아동이 집시 정체성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으므로, 영구적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Jansen v. Norway*, § 103).

9. 무국적, 시민권 및 체류

257. 특정 상황에서 재판소는 국적에 관한 권리가 사생활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Genovese v. Malta*). 협약에서 특정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재판소는 특정 한 상황에서는, 국적취득 신청에 대한 자의적인 거부결정이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8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Karashev v. Finland* (dec.); *Slivenko and Others v. Latvia* (dec.) [GC]; *Genovese v. Malta*). 이미 취득한 국적의 상실은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더 심각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제한할 수 있다(*Ramadan v. Malta*, § 85; 테러 관련 활동과 관련해서는 *K2 v. the United Kingdom* (dec.) § 49 참조; *Ghoumid and Others v. France*, § 43 (사생활 관련 부분); *Usmanov v. Russia*, §§ 59-62). 그 제한이 제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쟁점, 즉 국적을 취소하는 결정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비례성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 그리고 해당 결정이 청구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야 한다(*Ramadan v. Malta*, §§ 86-89; *K2 v. the United Kingdom* (dec.), § 50; 10년 전에 저지른 테러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기초한 국적 박탈에 관한 *Ghoumid and Others v. France*, § 44; *Usmanov v. Russia*, §§ 63-70). 국가기관이 청구인에게 신분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Ahmadov v. Azerbaijan*, § 45).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국가기관에서 아제르바이잔 국민으로 간주되었고 청구인의 소련 여권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민임을 확인하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음에도 국가기관은 청구인이 아제르바이잔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아제르바이잔 국민도 아니라고 하였다. 청구인의 국적을 부인한 결정은 필요한 절차적 보호수단이 동반되지 않았고, 자의적이면서 협약 제8조를 위반한 결정이었다.
258. 제8조는 특정한 유형의 체류허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허가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국가만이 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Kaftailova v. Latvia*, 심리종료결정(striking out) [GC], § 51). 그러나 제시된 해결책은 해당 개인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A.C. v. Greece*, § 35; *Hoti v. Croatia*, § 121). 일정한 사건들에서, 한 국가에 거주할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족생활, 또는 사생활과 가족생활 모두에 대해 비례성에 위반하여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Hoti v. Croatia*, § 122).

259.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제8조는 청구인의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의 실효적인 향유를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포함할 수 있다(*Hoti v. Croatia*, § 122). 이 사건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수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청구인을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무국적 이민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 126).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이익을 적절히 존중하여 청구인이 크로아티아에서의 지위와 체류 연장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이용가능한 절차나 기구를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41). *Sudita Keita v. Hungary* 사건에서도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이익을 적절히 존중하여 사실상 무국적 상태인 청구인이 헝가리에서의 지위와 체류 연장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이용가능한 절차나 기구를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1). 특히, 청구인은 15년 동안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청구인의 의료서비스와 일자리에 대한 접근, 그리고 결혼할 권리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260. 재판소는 슬로베니아 독립 후 영주권등록부에서 "삭제"된 사람의 거주에 대한 규율을 두지 않은 것이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 339).

261. 강제퇴거가 비국민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다툼 만한 청구가 제기된 경우, 협약 제8조와 관련 지어 해석한 제13조는 국외추방이나 체류허가 거부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여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충분히 담보된 적절한 기구에 의해 충분한 절차적 보장과 철저한 심리를 통해 관련 문제를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De Souza Ribeiro v. France* [GC], § 83; *M. and Others v. Bulgaria*, §§ 122-132; *Al-Nashif v. Bulgaria*, § 133).

10. 국외추방 및 강제퇴거 결정

262. 제8조가 다른 사람 및 외부와의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호하고 때때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의 측면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재판소는 정착한 이민자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간의 사회적 유대관계의 총체성이 제8조에서 의미하는 "사생활" 개념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정착한 이민자의 추방은 "가족생활" 유무와 관계없이 사생활 존중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Maslov and Others v. Austria* [GC], §§ 63). 그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과 국내 체류를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협약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체류하거나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회원국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이 있다(*ibid.*, § 68; *Üner v.*

the Netherlands [GC], § 68). 사생활권에 대한 제한의 비례성을 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정착한 이민자에 관하여는 *Üner v. the Netherlands* [GC] 사건에서 확립된 심사기준을 적용했다(예컨대, *Zakharchuk v. Russia*, §§ 46-49 참조). 예를 들어, *Levakovic v. Denmark*, §§ 42-45) 사건에서, 위너 심사기준을 적용한 재판소는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나 형제를 부양할 필요성도 없었던, 그리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음이 지속적으로 드러난 성인 이민자의 추방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63.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거의 대부분을 합법적으로 거주국에서 보낸 정착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대한 사유가 필요하다(*Maslov v. Austria* [GC], § 75). 매우 특수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어렸을 때 관광비자로 입국한 직후 관광비자가 만료되었으나 17세까지 불법체류 사실을 몰랐던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거주국 거주가 적법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을 "정착 이민자"로 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체류허가 거부 제8조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매우 중대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8조 위반이 인정될 것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대신, 그 평가는 청구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관점에서부터 수행되어야 한다(*Pormes v. the Netherlands*, § 61).

11. 혼인 및 부모의 지위

264. 재판소는 개인의 결혼 또는 부모의 지위와 관련된 사건이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특히, 개인의 민사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혼인신고는 분명히 사생활과 가족생활 모두와 관련이 있으며 제8조제1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Dadouch v. Malta*, § 48). 오스트리아 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혼인무효 결정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전반적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그 결혼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제한은 비례성원칙을 충족하였다(베네스 대 오스트리아(*Benes v. Austria*, 위원회 결정)).

265. 마찬가지로, 부모로서의 신분과 관련된 절차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 재판소는 부의 친생추정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건이 사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Rasmussen v. Denmark*, § 33; *Yildirim v. Austria* (dec.); *Krušković v. Croatia*, § 20; *Ahrens v. Germany*, § 60; *Tsvetelin Petkov v. Bulgaria*, §§ 49-59; *Marinis v. Greece*, § 58), 친생추정 관계에 있는 아버지에 의한 친생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결했다(*R.L. and Others v. Denmark*, § 30; *Shofman v. Russia*, §§ 30-32). 또한 부모가 되고자 입양신청을 할 권리도 사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A.H. and Others v. Russia*, § 383).

III. 가족생활

A. 가족생활의 정의 및 가족의 의미

266. 함께 살 권리는 가족생활의 필수 요소로 가족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Marckx v. Belgium*, § 31),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준다(*Olsson v. Sweden (no. 1)*, § 59). 가족생활이란 자율적인 개념이다(*Marckx v. Belgium*, § 31). 따라서, 본질적으로 "가족생활"의 존재 여부는 친밀한 개인적 유대관계의 실제 존재 여부에 달린 사실의 문제이다(*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 140). 그러므로 재판소는 가족생활에 대해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한 채 함께 사는 청구인들의 사례에서처럼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살펴본다(*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 56). 다른 요소로는 그 관계의 기간이나, 부부의 경우 아이를 함께 가짐으로써 서로에 대한 헌신을 증명했는지 여부 등이 있다(*X, Y and Z v. the United Kingdom*, § 36). 재판소는 *Ahrens v. Germany* 에서(§ 59) 아동의 어머니와 청구인 사이의 관계가 아동을 임신하기 약 1년 전에 끝났고 이후의 관계는 오로지 성적 의미만 있었던 경우 사실상의 가족생활(*de facto family life*)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Evers v. Germany*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의 매우 특수한 사정상 청구인이 그의 동거인 및 정신장애가 있는 동거인의 딸과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그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가 보호하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5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신장애 딸을 성적으로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법원은 청구인과의 접촉이 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소는 제8조가 형사범죄 또는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위법행위의 결과로서 "사생활"에 초래되는 예견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제소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ibid*, § 55). 재판소는 또한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법령 준수 여부도 고려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267.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 사실 자체로 출생 시점부터 법령상 "가족"의 일원이 된다(*Berrehab v. the Netherlands*, § 21). 따라서, 아동과 부모 사이에는 가족생활에 해당하는 유대가 존재한다. 제8조에서 의미하는 "가족생활"의 존재 여부는 예컨대 아버지가 출생 전후 자녀에게 관심과 헌신을 보였는지를 비롯해 친밀한 개인적 유대관계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린 사실의 문제이다(*L. v. the Netherlands*, § 36).
268. 아동과의 가족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국가는 이러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고 출생 순간부터 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아동과 가족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Kroo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 32).
269. 생물학적 관계가 없고 피청구국이 법적으로 인정한 부모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위탁부모와 해당 아동 사이의 친밀한 개인적 유대관계, 아동에 대해 위탁부모가 성인으로서 하는 역할,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을 고려할 때 임시로 아동을 돌본 위탁부모와 해당 아동 사이에 가족생활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Moretti and*

Benedetti v. Italy, § 48; *Kopf and Liberda v. Austria*, § 37). 그 밖에도, 첫 번째 청구인이 두 번째 청구인을 완전 입양했다고 선언한 페루 법원의 결정이 룩셈부르크에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에 관한 사건인 *Wagner and J.M.W.L. v. Luxembourg*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 입양이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가족생활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 사이에 사실상의 가족관계가 10년 이상 존재했고 첫 번째 청구인이 모든 면에서 미성년 아동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했다. 이 사건에서, 관련 기관들은 청구인들에 대한 아동의 인도(placement)를 인정하거나 용인했다. 이와는 반대로,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육아계획을 세우고 정서적인 유대도 좋다고 보면서도, 부모가 되고자 하는 커플과 아동 간 생물학적 관계가 없고, 아동과 관계를 맺은 기간이 짧으며(약 8개월), 법적 관점에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가족생활이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56-157)(*D. and Others v. Belgium* (dec.) 비교).

270. 제8조는 가족을 이룰 권리나 입양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는 단순히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 권리가 전제로 하는 것은 가족의 존재, 혹은 예를 들자면 최소한, 혼외자와 그 친부 사이의 잠재적인 관계, 또는 가족생활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진정한 결혼에서 생겨나는 관계, 또는 나중에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고 입증된 경우라 하더라도 아버지와 그의 혼인중의 자녀 사이의 관계 등이다(*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 141). 조카의 법정후견인이 되어 조카와 함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조카와의 "가족생활"을 발전시키려는 청구인의 의사는 제8조 따라 보호받는 "가족생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Lazoriva v. Ukraine*, § 65).

271. 하지만, 가족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사생활권의 관점에서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다(*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 165; *Lazoriva v. Ukraine*, §§ 61 및 66; *Azerkane v. the Netherlands*, § 65).

B. 절차적 의무

27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8조에는 절차적 요건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제한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은 제8조가 보호하는 이익을 적절히 존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충분해야 하며(*Petrov and X v. Russia*, § 101), 특히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과 관련해 제8조가 보호하는 이익(*W. v. the United Kingdom*, §§ 62 및 64; *McMichael v. the United Kingdom*, § 92; *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GC], §§ 72-73) 및 부모의 친권포기와 입양동의와 관련해 제8조가 보호하는 이익(*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 212-213, 220)을 적절히 존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충분해야 한다. 또한, 재판소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청구인의 가족생활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접근법이 요구되며, 법이 정한 구제절차는 예방적 기능과 보상조치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 48; *Kuppinger v. Germany*, § 137).

C. 가족생활에 대한 판단재량

273. 제8조와 관련된 사건을 결정할 때, 국가가 누릴 수 있는 판단재량의 폭을 확정하는 문제에서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재판소는 특히 양육권을 결정할 때, 긴급명령 형식으로 아동을 보호시설에 맡길 필요성을 평가할 때(*R.K. and A.K. v. the United Kingdom*), 또는 이혼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Babiarz v. Poland*, § 47) 또는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Fröhlich v. Germany*, § 41) 국가의 폭넓은 판단재량을 인정한다.
274. 그러나 그 이상의 제한들, 예를 들어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이나 부모와 자녀의 가족생활 존중을 위한 권리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경우에는 더 엄격한 심사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강화된 제한은 어린 아동과 부모 사이 또는 부모 중 한 명과의 사이에서 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Sahin v. Germany* [GC], § 65; *Sommerfeld v. Germany* [GC], § 63).
275. 면접교섭권이나 자녀의 상황을 통지받을 권리에 관한 문제에서 판단재량은 더 제한적이며(*Fröhlich v. Germany*), 부모와 아동이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던 경우 판단재량의 폭이 훨씬 좁다. 이 경우, 국가는 부모와 아동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Elsholz v. Germany* [GC]; *K.A. v. Finland*).

D. 가족생활 적용 영역

1. 커플

a. 관례에 따르지 않은 결혼, 사실혼

276. 협약 제8조가 의미하는 "가족"의 개념은 결혼에 기초한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혼인 관계 이외의 상태(즉, 혼외)에서 함께 사는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 56; *Van der Heijden v. the Netherlands* [GC], § 50. 오랫동안 동거한 동반자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청구인에게 강요하려고 한 사건). 또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생활을 인정받기에 충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Kroo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 30; 두 사람이 동거하지 않았고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던 사건인 *Azerkane v. the Netherlands*, § 65와 비교). 이는 안정적인 결합의 존재가 동거와 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 49 및 73). 다만, 이것은 사실상의 가족 및 가족관계에 대해 특정한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않는다(*Babiarz v. Poland*, § 54).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는 청구인이 새로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후 그와 재혼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56-57). 게다가, 오늘날 동거가 장기간의 안정적 관계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닐 수 있으나,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다른 징표들을 반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임에는 틀림없다(*Concetta Schembri v. Malta* (dec.), § 52, 결혼의 진정성을 부인한 사건).

277. 그 밖에도 재판소는 특히 가족생활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것이 청구인 때문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에서, 꾸리려고 한 가족생활이 예외적으로 제8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Pini and Others v. Romania*, §§ 143 및 146). 특히,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족생활은 혼외 자녀와 친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관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실제 친밀한 개인적 유대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친부모들 간의 관계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 그리고 출생 전후 친부가 자녀에게 관심과 헌신을 보였는지 등이 포함된다(*Nylund v. Finland* (dec.); *L. v. the Netherlands*, § 36; *Anayo v. Germany*, § 57).
278.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거가 부모와 자녀 간 가족생활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Berrehab v. the Netherlands*, § 21).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결혼이라고 해서 가족생활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 63).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고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인정되는 결혼을 한 부부도 제8조에서 의미하는 가족생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제8조는 상속권 및 퇴직연금의 유족승계(*Şerife Yiğit v. Turkey* [GC], §§ 97-98 및 102) 또는 14세 자녀의 계약결혼(*Z.H. and R.H. v. Switzerland*, § 44) 등과 관련하여 종교적 결혼을 인정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79. 마지막으로, 약혼만으로 가족생활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Wakefield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b. 동성 커플

280.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가족생활과 사생활에 대한 개념에 포함된다(*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 73-74; *X and Others v. Austria* [GC], §§ 95; *P.B. and J.S. v. Austria*, § 30; *Schalk and Kopf v. Austria*, §§ 92-94). 이 원칙은 *Schalk and Kopf v. Austria* 사건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의 목적상 동성 커플이 다른 이성 커플과는 달리 "가족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다. 그 결과, 동성 커플로 사실상의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같이 살고 있는 청구인들의 관계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이성 커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재판소는 또한 시민결합(civil partnership)의 형태로 함께 살고 있는 두 여성과, 그 여성 중 한 명이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하여 두 사람이 함께 양육하는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8조에서 의미하는 가족생활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Gas and Dubois v. France* (dec.); *X and Others v. Austria* [GC], § 96).
281. 2010년 재판소는,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승인 문제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진전되어 유럽 차원의 공감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Schalk and Kopf v. Austria*, § 105; 또한 *Orlandi and Others v. Italy*, §§ 204-206 참조). *Schalk and Kopf v. Austria*, § 108 사건과 *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 48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와 관련 지어 해석한 제14조 의하면 국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성 커플에게만 한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282. 그러나 재판소는 동성 커플의 시민결합을 금지한 법률이 제8조와 함께 해석한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는데, 19개 협약당사국이 결혼 이외에 일정한 형태의 동반자관계를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오직 2개의 국가에서만 그 관계를 이성 커플에게만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 91-92). 재판소는 법적 승인을 향한 지속적인 국제적 추세를 언급하고 이탈리아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후, 청구인들이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제8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이탈리아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Oliari and Others v. Italy*, §§ 178 및 180-185). 재판소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가운데 24개 국가가 이미 동성 커플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178). 이탈리아에서는 동성 커플로서 공개적으로 살고 있는 청구인들의 사회적 현실과 그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고 재판소는 보았다. 재판소는 동성 결합을 인정하고 보호하더라도 이탈리아에 특별한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청구인과 같은 동성 커플이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결합(civil union) 또는 등록동반자(registered partner)의 형태로 살아갈 선택권을 갖는 것은 청구인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자, 불필요한 방해 없이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과 관련된 핵심적인 권리의 형태로) 그에 관한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173-174).
283. 해외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에 대해 등록을 거부한 사건인 *Orlandi and Others v. Italy* 사건에서, 이탈리아는 (청구인들의 관계를 보호할 어떠한 결합체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청구인의 동성 결합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제공하지 못했다. 청구인의 동성 결합을 인정하고 보호할 구체적인 법 체계를 보장하지 않는 법적 공백은 제8조를 위반하였다(§ 201).
284. 재판소는 두 사건에서 동성 커플의 상황과 이성 커플의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Aldeguer Tomás v. Spain* 사건에서 재판소는 동성결혼이 인정되기 전인 2005년, 이성 커플의 경우와는 달리, 동성 커플 중 한 명이 사망한 동성 커플의 연금을 승계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협약 제8조 및 제1의정서 제1조와 관련 지어 해석한 제1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88-90). *Taddeuci and McCall v. Italy* 사건에서 재판소는 동성 커플 청구인 중 EU 회원국 국민이 아닌 한 명에게 가족 목적의 체류허가를 거부하여 이들이 이탈리아에서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거부조치가 제8조와 관련 지어 해석한 협약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98-99). 재판소는 커플 중 한 명이 EU회원국 국민이 아닌 경우, 동성 커플은 (결혼을 통한 체류허가의 기회 면에서) 이성 커플과는 다른 상황에 있으므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85).
285. 그러나 가족 재결합을 위한 체류허가에 관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Pajić v. Croatia*, § 73). 재판소는 크로아티아 법률이 동성 커플을 암묵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했으며 따라서 협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79-84).

286. 청구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남성에서 여성으로 주민번호를 변경하고자 한 사건에서, 혼인 관계를 등록동반자 관계로 변경해야만 새로운 성별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쳤다(*Hämäläinen v. Finland* [GC], § §60-61).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이 결혼 상태를 등록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제8조의 가족생활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ibid.*, § 86).

2. 부모

의료보조출산/유전적 부모가 될 권리

287. 사생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위의 "재생산권" 참조), 가족생활의 개념에는 자신의 아이를 낳아 유전적 부모가 되기로 한 결정을 존중받을 권리가 포함된다(*Dickson v. the United Kingdom* [GC], § 66;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 72). 따라서, 커플이 의료적 도움을 받아 출산할 권리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제8조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된다(*S.H. and Others v. Austria* [GC], § 82). 그러나 제8조의 조항들이 그 자체로 가족을 이룰 권리나 입양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E.B. v. France* [GC], § 41; *Petithory Lanzmann v. France* (dec.), § 18). 또한,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청구인의 개인적 열망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제8조는 조부모가 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Petithory Lanzmann v. France* (dec.), § 20).

288. 재판소는 도덕적 고려 또는 사회적 수용성에 기초한 우려가 인공생식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S. H. and Others v. Austria* [GC], § 100). 그러나 이러한 우려 자체가 난자 기증과 같은 특정 인공생식 기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회원국은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리지만, 이러한 목적을 위한 법체계는 관련된 각기 다른 정당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일관적인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ibid.*)

289. 재판소는 청구인과 함께 배아를 생성한 청구인의 과거 동반자가 그 배아에 관한 청구인의 보관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한 영국의 법률에 대해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 82).

290. 제8조는 회원국이 대리모 출산을 합법화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서 대리모 계약을 통해 태어난 아동과 그 아동의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승인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들이 함께 가족생활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와 자녀의 가족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특히,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난 직후 그 가족이 회원국에 정착할 수 있고, 그 가족의 특수한 사정때문에 국가가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킬 위험이 없는 한, 가족생활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Mennesson v. France*, §§ 92-94; *Labassee v. France*, §§ 71-73; *Foulon and Bouvet v. France*, § 58). 또한, 재판소는 협약에 의하더라도,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 입국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D. and Others v. Belgium*, § 59). 따라서, 청구인이 대리모 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자신들의 출신 국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한 사건의 경우, 발급거부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실질적으로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청은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D. and Others v. Belgium*, § 64).

291.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사건은 대리모를 통해 외국에서 출산한 후 이탈리아 입양법을 위반하여 이탈리아로 데려온 자녀의 분리(separation) 및 인도(placement)에 관한 사건이다(§ 215). 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가족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사생활"의 개념에 따라 심리했다.

3. 자녀

a. 서로에 대한 향유

292. (부부 관계가 파탄났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협약 제8조에서 의미하는 가족생활의 기본 요소를 구성하고, 이러한 향유를 방해하는 국가기관의 조치는 협약 제8조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Monory v. Romania and Hungary*, § 70; *Zorica Jovanović v. Serbia*, § 68; *Kutzner v. Germany*, § 58; *Elsholz v. Germany* [GC], § 43; *K. and T. v. Finland* [GC] § 151).

293. 재판소는 청구인을 비밀리에,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인치하여 자의적 구금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서로에 대한 향유를 박탈당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제8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 248-250).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1년 넘게 격리되어 있었고 가족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건에서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Nasr and Ghaliv. Italy*, § 305).

294. 재판소는 또한 국가가 청구인에게 아들의 운명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서로에 대한 향유의 권리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판결했다(*Zorica Jovanović v. Serbia*, §§ 74-75).

295. 대학원 유학을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어머니를 따라 외국으로 나가려는 아동에 대해, 부모 양쪽의 동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심리하여야 한다(*Penchevi v. Bulgaria*, § 75).

b. 모자 간 유대

296. 친모의 지위는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를 대신하여 재판소에 청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M.D. and Others v. Malta*, § 27; *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 156-159).

297. 재판소는 독신 여성과 그 자녀를 다른 가족 형태와 다름없이 가족의 한 형태로 본다. 미혼모와 그 자녀의 가족생활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적인 조치들에서 국가는 출생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방지하여야 한다(*Marckx v. Belgium*, §§ 31 및 34). 미혼모의 자녀가 모의 가족구성원이 될 수 없고, 인지의 효력이 모자 관계에만 미친다면 미혼모와 그녀가 인지한 자녀의 가족생활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ibid.*, § 45; *Kearns v. France*, § 72).
298. 입양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한 친부모는 나중에 면접교섭권과 입양 아동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I.S. v. Germany*).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양 결정은 친모의 가족생활권을 침해한다(*Zhou v. Italy*).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부당하게 보호시설에 맡겨 친모와 헤어지게 하고 그 문제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친모는 딸의 양육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기회를 잃었고 이에 따라 해당 이익에 대해 요구되는 보호를 받지 못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가족생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GC], § 83). 또한, 부모의 친권포기와 입양동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가는 아동의 이익과 그의 생물학적 가족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아동과 생물학적 가족의 재결합할 가능성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재판소는 국가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신속히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 205). 이 점에서, 국가는 양육권의 소멸된 이후에도 아동과 친부모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최근의 전문가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 220-225). *Y.I. v. Rus-sia* 사건에서 마약을 계속 복용했고 실직 상태였던 청구인은 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고, 첫째를 제외한 두 명의 자녀들은 공공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재판소는 어머니의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방치되거나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으므로(§§ 88-91) 위 결정은 충분히 정당화되지는 못하였다며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96). 또한, 아동보호시설은 궁극적으로 이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재판소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기관의 역할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이들이 사회복지기관과 접촉할 때 지침을 제공하고, 특히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 등을 조언하는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87). 재판소는 또한 그 자녀들이 어머니와 분리되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자녀들끼리도 서로 분리되었던 사실도 고려했다(§ 94).

c. 부자 간 유대

299. 재판소는 제8조의 가족생활이 결혼에 기초한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혼인 관계 이외의 상태로 함께 사는 사실상의 "가족" 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Keegan v. Ireland*, § 44; *Kroo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 30). 이 원칙은 친부와 혼외 자녀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확대적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재판소는 제8조가 이미 확립된 가족생활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가족생활이 혼외 자녀와 친부 사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관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Nylund v. Finland* (dec.); *Shavdarov v. Bulgaria*, § 40).

샤브다로프 대 불가리아 사건에서, 재판소는 친생추정제도로 인해 청구인이 법적 친자관계를 확립할 수는 없지만, 부자 관계의 확인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므로 제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300. 가족생활의 존재 여부가 혼외 자녀와 친부 사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관계와 관련된 경우, 관련 요소에는 친부모들 간의 관계의 성격과 출생 전후 친부가 자녀에게 관심과 헌신을 보였는지가 포함된다(*Nylund v. Finland* (dec.)). 단순한 생물학적 친족관계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가 실제 존재함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법적 또는 사실적 요소가 없는 한 제8조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L. v. the Netherlands*, §§ 37-40). 반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친권 상실 후 자녀의 삶에서 청구인을 자동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가족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조치이다(*Nazarenko v. Russia*, §§ 65-66; *Mandet v. France*, § 58).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들이 엄격한 제척기간으로 인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Călin and Others v. Romania*, §§ 96-99).
301. 청구인이 2년 전에 태어난 아이의 친부가 아님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아버지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Shofman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척기간이 가족관계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39). 그러나 재판소는 특히 당사자가 친부 여부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를 비롯하여,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은 채 출생 후 1년으로 정한 제척기간은 정당한 목적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43) (또한 *Paulík v. Slovakia*, §§ 45-47 참조).
302. 혼외 자녀로서 법원에 친자관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존재 자체가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Phinikaridou v. Cyprus*, §§ 51-52). 다만, 국가는 충돌하는 권리와 이익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53-54).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특히 친자관계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 확인 소송에 엄격한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제8조에 따른 사생활 존중권의 본질을 훼손한다(§ 65).
303. 확인된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실제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생물학적, 사회적 실제보다 법률상 추정을 우선하도록 하는 상황은 국가가 가진 판단재량을 고려하더라도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실효적인 "존중"을 보장해야 할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Kroo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 40).
304. 출생 당시 부모가 더 이상 동거하지 않거나 부모의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자녀와 그 부모 사이에는 가족생활에 해당하는 유대가 존재한다(*Berrehab v. the Netherlands*, § 21). 청구인은 딸의 친모와 2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고, 그중 1년 동안은 같이 살면서 결혼을 계획했으며 함께 숙고 끝에 임신 결정을 내린 경우, 청구인과 딸의 친모 사이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와 상관없이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청구인과 딸 사이에는 가족생활에 해당하는 유대가 존재하였다(*Keegan v. Ireland*, §§ 42-45). 따라서, 청구인의 자녀가 태어난 직후 친부에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입양을 허가한 것은 제8조를 위반하였다(*ibid.*, § 55).

305. 프랑스 법원이 청구인의 사생활 존중권보다 아동의 사생활 존중권을 더 중요하게 보아 법원이 명령한 유전자검사에 청구인이 불응한 것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결정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 결정이 법원의 폭넓은 판단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Canonne v. France* (dec.), § 34 및 DNA 검사와 관련해 § 30). 재판소는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생물학적 부의 확인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R.L. and Others v. Denmark*). 재판소는 법원이 당해 사건의 다양한 이익을 고려했으며, 특히 가족 유지의 관점에서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았다(§§ 47-48). *Fröhlich v. Germany* 사건에서 재판소는 아동이 미래에 자신의 태생에 대해 묻기 시작할 때 친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당시 6살이었던 아동을 친자관계확인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것은 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친부일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거나 그 아동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부모에게 명령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법원의 결정은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62-64).

306. 재판소는 '소극적인 부모(passive parent)'와 관련된 특정 사안, 특히 친부와 유아가 오랜 기간 전혀 만나지 않았고 다시 만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던 경우, 친권 박탈이 제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Ilya Lyapin v. Russia*). 재판소는 특히 부자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아버지 쪽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려하여, 과거 7년 동안 개인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친권을 박탈한 것은 생물학적 부와 아들 사이의 법령상의 연결고리를 말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54).

d. 육아수당, 양육 및 접근, 면접교섭권

307. 재판소는 제8조가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 또는 국가가 육아휴직수당을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및 관련 수당이 가족생활을 증진하고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육아휴직과 육아수당이 제8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 130; *Petrovic v. Austria*, §§ 26-29; *Di Trizio v. Switzerland*, §§ 60-62).

308. 국제법을 포함하여,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 207; *Neulinger and Shuruk v. Switzerland* [GC], § 135; *X v. Latvia* [GC], § 96).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해당 이익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부모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다(*Sahin v. Germany* [GC], § 66). 그렇지만 부모의 이익, 특히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당해 사건의 다양한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때 여전히 고려되는 요소이다(뉴링거 및 슈루크 대 스위스, § 134). 가족이 특히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이익을 위해 아동과 가족의 유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족의 유대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단절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을 "재건"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Gnahoré v. France*, § 59 및 판례 검토와 관해서는 *Jansen v. Norway*, §§ 88-93).

309. 협약 제8조에는 절차적 요건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의사결정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제8조가 보호하는 이익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이익에 대해 필요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가족의 전반적인 상황, 특히, 사실적, 정서적, 심리적, 물질적, 의학적 성격을 요소를 비롯한 일련의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아동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 개인의 이익을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관할 국가기관에 부여된 판단재량은 사안의 성질과 이익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Petrov and X v. Russia*, §§ 98-102). *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부모의 친권상실과 입양동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과 생물학적 가족의 이익 사이에서 진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310. 재판소는 관련 기관이 아동을 보호시설에 맡기고 보호하는 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8조에 의해 보호되는 부모의 이익이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GC], § 73). 독립적인 심리평가보고서 제출명령신청이 거부되었고 지방법원에서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친권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제8조에 의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Elsholz v. Germany* [GC], § 53). *Petrov and X v. Russia* 사건에서는 (이혼에 따른 자녀의 거소지정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 없이 자녀의 어머니에게 거소를 지정한 결정은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105-114 및 포함된 판례 검토 참조).
311.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법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ința v. Romania* 사건에서 루마니아 법원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근거로 네 살 난 딸과 만날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청구인이 딸의 복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 것은 아니었고(§§ 47-48),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밝히거나 검토하지 않았다(§§ 52-55).
312. 재판소는 양육권소송의 기간, 그리고 법원이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부모 중 누가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지 아동이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혼한 부부의 딸의 사생활권과 가족생활권이 침해당했다고 판결했다(*M. and M. v. Croatia*, §§ 171-172). *C. v. Croatia* 사건에서 재판소는 권한있는 사법기관에 의한 심리를 받을 기회가 없었고, 아동의 이익을 대리해 줄 소송후견인(*guardian ad litem*)도 선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크로아티아가 양육권소송의 중심이 되는 아동의 가족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77-82).
313. 부모는 제8조에 의하더라도 자녀의 건강과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Elsholz v. Germany* [GC], § 50; *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GC], § 71; *Ignaccolo-Zenide v. Romania*, § 94; *Nuutinen v. Finland*, § 128). 따라서, 13세 소녀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실제로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았으며, 강제로 아버지를 만나게 할 경우 이 소녀의 정서적, 심리적 균형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경우, 아버지와 만남을 거부한 관련 기관의 결정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Sommerfeld v. Germany* [GC], §§ 64-65; *Buscemi v. Italy*, § 55). 자신이 친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법적 부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만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청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요청을 허가할 경우 법적 부모의 결혼생활이 파국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아동이 가족과 가족관계를 잃게 되어 해당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Fröhlich v. Germany*, §§ 42 및 62-63). 마찬가지로, *Suur v. Eston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에스토니아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당시에 해당 아동이 친부와 만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다며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98). 그러나 재판소는 친부가 자녀에 대한 접근에 대해 향후에 다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다.

314.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사건의 경우, 시간의 경과가 사실상 사안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여 특별히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협약 제6조제1항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 내에 사건을 심리했는지를 평가할 때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데, 제8조에 내포된 절차적 요건의 일부이기도 하다(*Ribić v. Croatia*, § 92).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인지 검토할 때, 부모와 연락이 끊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정적 효과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충분히 비교하여 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아동을 친모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Jansen v. Norway*, § 104). 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아이를 청구인의 아버지(아이의 할아버지)가 탈취할 위험(및 이에 따른 아동 보호 문제)이 있다고 해서, 그 위험이 청구인이 자녀를 만날 권리를 충분히 다루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103).
315. 국가는 또한 양육권 결정 및 친권 집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Raw and Others v. France*; *Vorozhba v. Russia*, § 97; *Malec v. Poland*, § 78).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경우 다른 부모가 숨기고 있는 아동의 소재에 대한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Hromadka and Hromadkova v. Russia*, § 168). 재판소는 또한 법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보장함에 있어 자동적이고 정형화된 조치들에 의존한 결과 청구인인 아버지와 자녀가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청구인이 면접교섭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Giorgioni v. Italy*, §§ 75-77; *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 66; *Bondavalli v. Italy*, §§ 81-84). 마찬가지로, 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약 10년 동안이나 실시하지 않은 것은 협약 위반으로 인정되었다(*Cincimo v. Italy*, §§ 73-75). 자녀의 친모가 반대하고 법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녀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건 역시 협약 위반으로 인정되었다(*Strumia v. Italy*, §§ 122-125). 따라서 법원의 역할은 기존의 장벽을

극복하고 양육권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만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법원이 청구인의 장애로 인한 장벽(수화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는 청구인과 귀가 들리지 않지만 구두로 소통할 수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극복하도록 지원할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소는 협약 위반으로 보았다(*Kacper Nowakowski v. Poland*, § 95).

316. 청구인을 한정된 지역에만 머무르게 하고 소수민족 거주지 밖에서 살고 있는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든 조치에 대해 재판소는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Nada v. Switzerland* [GC], §§ 165 및 198; *Agraw v. Switzerland*, § 51; *Mengesha Kimfe v. Switzerland*, §§ 69-72.)

e. 국제아동탈취

317. 국제아동탈취 사안의 경우, 제8조가 회원국에 부과하는 의무는 특히 1980년 10월 25일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of 25 October 1980, 이하 "아동탈취협약")(*Iglesias Gil and A.U.I. v. Spain*, § 51; *Ignaccolo-Zenide v. Romania*, § 95) 및 1989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Maire v. Portugal*, § 72)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318. 이 분야의 결정적 쟁점은 이 사안에 대해 국가가 가진 판단재량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건의 충돌하는 이익들, 즉 아동의 이익, 부모의 이익, 공공질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이지만(*Maumousseau and Washington v. France*, § 62; *Rouiller v. Switzerland*),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Gnahoré v. France*, § 59; *X v. Latvia* [GC], § 95). 재판소는 *X v. Latvia* 사건에서 국제법을 포함해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96). 그렇지만 부모의 이익, 특히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당해 사건의 다양한 이익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때 여전히 고려하는 요소이다(*ibid.*, § 95; *Kutzner v. Germany*, § 58). 예를 들어, 부모에게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López Guió v. Slovakia*).
319. 유럽인권협약과 아동탈취협약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 반환재판이 청구된 법원은 아동탈취협약의 제12조, 제13조, 제20조를 적용할 때 아동의 신속한 반환에 대한 예외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를 우선적이고 성실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 점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약 제8조는 국가기관들에게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 의무는 아동의 반환청구에 대해 심사할 때 아동의 반환이 그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을 경우 그 주장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한 위험"의 정확한 성질에 관하여, 아동탈취협약 제13조제(b)항에 규정된 예외는 아동이 합리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한정되어 있다(*X v. Latvia* [GC], §§ 106-107 및 *Vladimir Ushakov v. Russia*, § 103).

320. 재판소는, 엄격한 준수 의무를 면제하는 사정이 없음에도 법원이 아동반환소송에 대해 아동탈취협약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강제적 6주 시한을 상당한 기간 초과했다면, 이는 아동반환소송을 신속히 수행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G.S. v. Georgia*, § 63; *G.N. v. Poland*, § 68; *K.J. v. Poland*, § 72; *Carlson v. Switzerland*, § 76; *Karrer v. Romania*, § 54; *R.S. v. Poland*, § 70; *Blaga v. Romania*, § 83; *Monory v. Romania and Hungary*, § 82). 다만, 재판소는 *Rinau v. Lithuania* 사건에서 리투아니아 법원이 첫 번째 청구인의 아동반환청구를 제기 후 5개월 후에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서 언급한 6주 시한을 넘겼더라도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제8조에 따른 두 가지 의무를 조화시켜야 했는데, 한편으로는 아동의 아버지인 첫 번째 청구인의 반환청구에 대해 신속히 결정할 적극적 의무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을 독일로 돌려보낼 경우 아동의 어머니가 입게 될 정신적 피해라는,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절차적 의무가 있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문제가 법원의 철저한 검토와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당해 사건의 충돌하는 이익 사이에서 요구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1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리투아니아가 제8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특히, 법원이 결정한 아동반환명령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개입과 예상치 못한 절차상의 변동이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321. 아동탈취에 대한 판결의 집행은 또한 아동탈취 사안의 긴급한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V.P. v. Russia*, § 154).

f. 입양

322. 재판소는 입양에 대한 권리가 협약에 의해 보장된 권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관계는 제8조가 보호하는 가족관계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판결했다(*Kurochkin v. Ukraine*; *Ageyevy v. Russia*). 합법적이고 진심 어린 입양은 입양아동과 입양부모가 같이 살지 않거나 진정한 유대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생활을 이룰 수 있다(*Pini and Others v. Romania*, §§ 143-148; *Topčić-Rosenberg v. Croatia*, § 38).

323. 하지만, 제8조 그 자체만으로 가족을 이룰 권리나 입양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 141; *E.B. v. France* [GC]). 또한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후견제도, 예를 들면 "카팔라(kafala, 입양제도가 없는 이슬람법에서의 입양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후견제도)"와 같은 제도에 대해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Harroudj v. France*, § 51; *Chbihi Loudoudi and Others v. Belgium*). 입양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폭넓은 판단재량을 갖는다(*Wagner and J.M.W.L. v. Luxembourg*, § 128).

324. 재판소는 입양과 관련해 제8조에 의해 부과된 의무와 입양인과 입양아동의 관계에 발생하는 입양의 영향은 1993년 5월 29일 국제입양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1989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및 아동 입양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ren)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Pini and Others v. Romania*, §§ 139-140).

325. 제8조에 의하더라도 “두 번째 부모로서의 입양(second-parent adoption)”을 할 권리를 미혼의 커플에게 확대할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X and Others v. Austria* [GC], § 136; *Gas and Dubois v. France*, §§ 66-69; *Emonet and Others v. Switzerland*, §§ 79-88). 국가는 입양 조건과 관련하여 기혼 부부와 미혼의 동성커플을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없다(*Gas and Dubois v. France*, § 68). 다만, 국가가 미혼 커플에게도 입양을 허용할 경우에는 관련 사정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 모두에게 입양을 허용하여야 한다(*X and Others v. Austria* [GC], §§ 112 및 130).
326. 미혼 남성 동성애자의 입양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2002년 각 나라들마다, 그리고 그 나라들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국가는 입양신청자가 주장하는 입양에 대한 권리가 입양 아동의 이익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Fretté v. France*, § 42).
327. 자국의 법령에 의하면 금지되는 해외에서의 입양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양과 관련된 원칙이 적용된다(*Negrepontis- Giannisis v. Greece*).
328. 독신자의 입양에 관한 터키 민법의 공백은 제8조 위반으로 보았다. 청구인이 신청할 당시에는 친부모의 이름을 대신해서 독신자 입양부모의 이름을 인정하는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Gözüm v. Turkey*, § 53).
329. 청구인이 입양한 아동에 대한 입양취소는 청구인과 해당 아동의 가족생활을 완전히 박탈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재결합이라는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해 최우선으로 추구되는 요건에 의해서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조치였다(*Ageyevy v. Russia*, § 144; *Johansen v. Norway*; *Scozzari and Giunta v. Italy* [GC], § 148; *Zaiet v. Romania*, § 50).
330.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사건은 대리모를 통해 외국에서 출산한 후 이탈리아 입양법을 위반하여 이탈리아로 데려온 아동과의 분리(separation)와 인도(placement)에 관한 사건이다(§ 215).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윤리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입양, 아동의 보호시설 입소, 인공생식, 대리모에 관한 것이었고, 회원국은 이 사안에서 폭넓은 판단재량을 행사한다(§ 194). 재판소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서 가족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사건을 "사생활"의 개념에 따라 심리했다.

g. 위탁가정

331. 재판소는 함께 보낸 시간, 관계의 질, 아동에 대해 위탁부모가 성인으로서 하는 역할 등을 고려하여 위탁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실상의 가족생활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Moretti and Benedetti v. Italy*, §§ 48-52 참조).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출생 직후

5개월 동안 위탁 가정에 맡겨졌던 위탁아동에 대한 청구인의 특별입양신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채, 아이는 자유롭게 입양될 수 있다며 다른 커플에 의한 입양을 허가한 것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또한, 위탁부모와 이들이 돌본 아동의 관계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Jolie and Others v. Belgium*, 위원회 결정 및 아동의 친부모에게 아동을 돌려보내면서 위탁가족의 후견인자격을 종료시키고 아동과의 연락도 불허한 결정에 대한 위탁가족의 청구에 관한 *V.D. and Others v. Russia* 참조).

332. 또한 재판소는 (위탁업무와 관련된 파일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같은 상황의 사람들(위탁아동 출신)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성장과정을 알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는 것에 대해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중요한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다(*Gaskin v. the United Kingdom*, § 49).

h. 친권과 정부의 보호

333. 아동이 공공 보호시설에 맡겨진 경우(*Johansen v. Norway*, § 52; *Eriksson v. Sweden*, § 58) 또는 부모의 이혼 시(*Mustafa and Armağan Akin v. Turkey*, § 19) 가족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을 부모의 보호로부터 분리하여 국가의 보호시설에서 돌보는 조치가 제8조제2항에 의한 정당화가 필요한 가족생활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 202; *Kutzner v. Germany*, §§ 58-60). 재판소는 *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사건에서 관련 판례법의 원칙을 요약했다(§§ 202-13). 특히, 재판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가족 재결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 보호명령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 임시 조치라는 점, 적절한 의사결정과정 필요적이라는 점 등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334. 재판소는 아동의 보호시설 수용 필요성을 평가할 때 관련 기관에 폭넓은 판단재량이 부여되어 있음을 확립했다(*B.B. and F.B. v. Germany*, § 47; *Johansen v. Norway*, § 64, *Wunderlich v. Germany*, § 47). 뿐만 아니라, 국가는 대개 보호조치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나 시행 직후에 모든 관련 당사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Olsson v. Sweden (no. 2)*, § 90). 그러나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제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이 요구된다(*Elsholz v. Germany* [GC], § 64; *A.D. and O.D. v. the United Kingdom*, § 83)

335. 자녀의 양육에서 의도적인 체벌에 관한 두 사건에서, 재판소의 주된 목표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이익에 대해 필요한 보호를 받았는지 여부와 선택된 조치가 비례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Wetjen and Others v. Germany*, § 79; *Tlapak and Others v. Germany*, § 92) 따라서, 최후의 방법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 친권 박탈은 학대가 발생할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측면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Wetjen and Others v. Germany*, § 84; *Tlapak and Others v. Germany*, § 97). 그 밖에도, 법원은 왜 가족의 권리를 더 적게 침해하면서 아동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Wetjen and Others v. Germany*, § 85; *Tlapak and Others v. Germany*, § 98). 제8조에 내포된 절차적 의무에는 부모가 모든 주장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Wetjen and Others v. Germany*, § 80; *Tlapak and Others v. Germany*, § 93). 이러한 의무는 또한 법원의 판결이 충분한 사실을 근거로 하며,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Wetjen and Others v. Germany*, § 81). 예를 들어, *Wetjen and Others v. Germany* 사건에서, 국가는 부모와 자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녀들이 체벌을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냈다.

336. 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이나 평가가 그 자체로 제8조의 요건과 양립할 수 없는 아동 보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B.B. and F.B. v. Germany*, § 48). 의료 기관과 사회복지 기관은 모두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아동의 안전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실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그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입증될 때마다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R.K. and A.K. v. the United Kingdom*, § 36; *A.D.* 및 *O.D. v. the United Kingdom*, § 84). 따라서, 국가기관의 결정들은 그 결정이 내려진 당시에 해당 기관에 제출된 사정들에 비추어서만 심리할 수 있다(*B.B. and F.B. v. Germany*, § 48).
337. 따라서, 국가가 심각한 신체적 학대 사실에 관해 적어도 언뜻 보기에 신뢰할 만한 주장을 접수하여 친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한 조치는 충분히 정당화되었다(*B.B. and F.B. v. Germany*, § 49). 하지만, 영구적 친권박탈 결정에 관해서는 주된 절차에서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8조 위반으로 확인되었다(*Ibid.*, §§ 51-52). 의도적이고 주기적인 체벌 위험이 부모의 권한 일부를 취소하고 아동을 보호소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적절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78)(또한 *Tlapak and Others v. Germany*, § 91 참조). 재판소는 법원이 부모의 이익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Wetjen and Others v. Germany*, §§ 79-85).
338. 친권이 본질적으로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이를 근거로 박탈된 경우, 재판소는 제14조와 관련 지어 해석한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Hoffmann v. Austria*, § 36, 청구인이 여호와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 후 그들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한 것과 관련된 사건). 그 밖에도, 재판소는 산모가 의사의 권고보다 일찍 퇴원한 것을 이유로 건강한 유아를 보호시설에 수용하기로 한 결정이 비례성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Hanzelkovi v. the Czech Republic*, § 79). 그러나 재판소는 자녀의 등교를 계속해서 거부한 부모의 친권 중 일부를 박탈하고 자녀를 3주 동안 돌보지 못하도록 한 강제 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청구인들의 이익 사이에 적절히 균형을 유지"했으므로 국가 부여된 판단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Wunderlich v. Germany*, § 57).
339. 자녀가 더 유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부모의 양육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와 가족생활을 향유할 부모의 제8조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다른 사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 208; *K. and T. v. Finland* [GC], § 173). 또한, 관련 법 조항들을 자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Zelikha Magomadova v. Russia*, § 112).

340. *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가가 위탁가정에 맡기는 조치 대신 부모의 친권박탈과 입양허가라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한 판례법상 원칙을 요약했다(§§ 202-213). 재판소는 "이러한 조치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고려하였다(*S.S. v. Slovenia*, §§ 85-87, 96 및 103; *Aune v. Norway*, § 66).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머니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아동을 돌볼 수 없게 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R.M.S. v. Spain*, § 92). 마찬가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도 제8조 위반이 확인되었다(*Akinnibosun v. Italy*, §§ 83-84). *Soares De Melo v. Portugal* 사건에서 재판소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생활하던 여성의 자녀들이 입양을 위해 보호시설에 수용되었고 결국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된 경우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18-123).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을 제한하거나 자녀를 공공 보호시설에 맡기는 정당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Kocherov and Sergejeva v. Russia*, § 106, 약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
341. *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부모의 친권상실과 입양동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견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국가는 특히 아동을 보호한 초기에 청구인과 아동이 원활히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아동을 적절히 보살필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문가조사도 명령하지 않았다(§§ 220-225). 마찬가지로, *Omofefe v. Spain*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청구인인 산모의 요청대로 아기를 후견인에게 맡겼으나 6년이 지난 뒤 청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허가한 결정이 청구인의 의견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한의 심각성과 해당 이익에 비례하는 보호조치가 부족했다고 판결했다(§ 60). 특히 국가는 어머니와 아동의 재결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입양전 위탁보호가 아닌 단순 위탁보호나 임시보호와 같은 보다 온건한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신감정 등 전문적인 증거 없이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했다. 그 밖에도, 청구인이 아들과의 재결합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데 6개월의 시간이 있다는 통지를 받은 지 20일만에 입양전 위탁보호가 시행되었다. 반면, 적극적인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동을 다시 돌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음을 근거로,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의 친권을 박탈(이후 입양)한 사건에서는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S.S. v. Slovenia*, § 97 및 §§ 103-104).
342. 보호명령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 임시조치로 간주되어야 하며, 임시보호를 집행하는 모든 조치는 친부모와 자녀의 재결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 208; *Olsson v. Sweden* (no. 1), § 81).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보호가 시작된 때부터 그 책임이 갈수록 무거워지는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와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K. and T. v. Finland* [GC], § 178 및 *Haddad v. Spain*, § 54). 재판소는 국가가 청구인 자녀의 입양가능성을

긍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건에서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S.H. v. Italy*, § 58). 청구인의 아버지가 위탁보호 중인 청구인의 자녀를 탈취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자녀의 어머니인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제8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아이를 청구인의 아버지(아이의 할아버지)가 탈취할 위험(및 이에 따른 아동 보호 문제)이 있다고 해서, 그 위험이 청구인이 자녀를 만날 권리를 충분히 다루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Jansen v. Norway*, §§ 103-104). 재판소는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자녀들 중 2명을 다시 양육하게 된 아버지에 대해 국가가 그 자녀들보다 더 어린 다른 자녀와 다시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8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관련 기관과 법원이 아동을 입양전 보호시설에서의 보호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Haddad v. Spain*, §§ 57-74).

343. 제8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부모와 자녀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관계를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이행되는 방식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자녀가 친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면, 이들 가족이 만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호명령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친어머니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한 보호시설의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로 인해,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청구인의 이익과 자녀들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Scozzari and Giunta v. Italy* [GC], §§ 181 및 215).
344. 청구인의 자녀를 공공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한 긴급보호명령과 청구인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무시한 채 청구인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또한 가족생활권을 침해했으나, 이후의 일반적인 보호명령과 접근제한은 가족생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K. and T. v. Finland* [GC], §§ 170, 174, 179 및 194).
345. *Blyudik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딸을 법률상 근거 없이 집에서 2,500km 떨어진 폐쇄적인 교육 시설에 배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4. 기타 가족관계

a. 형제자매, 조부모 간 관계

346. 가족생활은 형제자매(*Moustaquim v. Belgium*, § 36; *Mustafa and Ar-mağan Akin v. Turkey*, § 19), 고모(이모), 삼촌, 조카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Boyle v. the United Kingdom*, §§ 41-47).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가족관계에 이르지 않는 친밀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Znamenskaya v. Russia* § 27 및 이 사건에서 인용된 참조).

347. 재판소는 성인이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살지 않거나(*Boughanemi v. France*, § 35) 별도의 가정과 가족을 이루는 경우(*Moustaquim v. Belgium*, §§ 35 및 45-46; *El Boujaïdi v. France*, § 33) 등 성인과 그의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를 제8조에 따라 보호되는 가족생활로 인정했다.
348. 재판소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 관계를 비롯해 가까운 친척 사이의 경우 가족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생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Marckx v. Belgium*, § 45; *Bronda v. Italy*, § 51; *T.S. and J.J. v. Norway* (dec.), § 23. 손자녀와 관련된 조부모의 가족생활 존중권은 기본적으로 손자와의 접촉을 통해 정상적인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포함한다(*Kruškić v. Croatia* (dec.), § 111; *Mitov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58). 그러나 재판소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접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친권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만나는 것이 통상 부모의 재량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Kruškić v. Croatia* (dec.), § 112).
349. 재판소는 *Petithory Lanzmann v. France* (dec.) 사건에서 제8조는 조부모가 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350.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원칙은 손자녀와 조부모의 관계에도 적용된다(*L. v. Finland*, § 101; *Manuello and Nevi v. Italy*, §§ 54, 58-59, 조부모가 손녀와 접촉할 권리의 정지와 관련된 사건). 특히 친부모가 없는 경우 삼촌, 고모(이모)와 조카 사이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Butt v. Norway*, §§ 4 및 76; *Jucius and Juciuviene v. Lithuania*, § 27).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그 성격과 정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는 다르며, 따라서 그 성질상 일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된다(*Kruškić v. Croatia* (dec.), § 110; *Mitov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58).
351. 최근 판례에서, 재판소는 성인과 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사이의 가족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감정적 유대를 넘어 추가적인 의존성 요소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더 낮은 수준의 보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Benhebba v. France*, § 36; *Mokrani v. France*, § 33; *Onur v. the United Kingdom*, § 45; *Slivenko v. Latvia* [GC], § 97; *A.H. Khan v. the United Kingdom*, § 32).
- b. 수형자와 기타 피구금자의 면접교섭권**
352. 교정당국이 가까운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수형자의 가족생활 존중권의 필수 요소이다(*Chaldayev v. Russia*, § 59; *Messina v. Italy* (no. 2), § 61; *Kurkowski v. Poland*, § 95; *Vintman v. Ukraine*, § 78). 또한 제8조에 따른 의무에는 피구금자가 구금된 후 신속히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할 특별한 의무가 포함된다(*Lebois v. Bulgaria*, § 53). 재판소는 장기적인 교정관리체제가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방식으로 구금의 탈사회화 효과를 보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한 유럽고문방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PT)의 권고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했다(*Khoroshenko v. Russia* [GC], § 144).

353. 가족면회의 횡수 제한, 가족면회시의 감시, 피구금자의 구금이나 면회에 대한 특수한 조치들은 제8조에 따른 권리들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93-195). 그러나 청구인이 가족면회 횡수 제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 협약 제34조에 따른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려면 구금 중 연락을 유지하고자 하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Chernenko and Others v. Russia* (dec.), §§ 46-47). "제한"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예컨대, 종신 수형자의 가족면회를 장기간 금지한 조치에 대해 협약 위반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서 면회권에 관한 판례의 요약에 관해서는 *Khoroshenko v. Russia* [GC], §§ 123-126; 청구인 아버지의 교도소 면회를 제한한 조치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93-196; 구치소에서의 장시간 면회 금지에 관해서는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 2)*, § 598 및 *Resin v. Russia*, §§ 39-41 참조). *Öcalan v. Turkey (no. 2)* 사건은 위험한 재소자에게 더 엄격한 보안조치를 적용한 것과 관련된 사건이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가족생활 존중권에 대한 제한이 제8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공공의 안전 보호와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를 위해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61-164). 재판소는 또한 범죄조직에서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위험한 재소자에 대한 면회권을 제한한 결정이 당시 시행 중이던 교정관리체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 비례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았다(*Enea v. Italy* [GC], §§ 125-131). 또한, 재소자의 미혼 동거인이 경찰기록에 범죄의 가해자로 등록된 경우 그 동반자의 면회를 제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Ulemek v. Croatia*, § 151).
- 354 수형자가 아내와 연락하기 위해 요청한 온라인 통신에 대해 다른 *Ciupercescu v. Romania (no. 3)*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다른 방법을 통해 면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있는 경우 제8조는 재소자가 온라인장치를 통해 외부와 통신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05, 또한 전화통화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Lebois v. Bulgaria*, § 61 참조). 치우페르세스쿠 대 루마니아 사건에서 루마니아 법률은 재소자가 온라인통신을 통해 외부, 특히 가족 구성원과 접촉을 유지하도록 허용했고 법원도 이 권리를 인정했지만, 그 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해당 권리가 제한된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청구인의 부인은 면회를 오거나 전화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 아내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106-110).
355. *Mirgadirov v. Azerbaijan and Turkey* 사건에서 청구인은 변호사 이외의 다른 사람과 면회할 수 없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 접견을 제외하고 외부와의 접촉(회의, 전화통화 또는 서신)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가족을 통해 비밀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명백한 조짐이 없었으므로, 제8조 위반으로 보았다(§ 123).
356. 재판소는 부모님의 집에서 가까운 교도소로 이감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결정이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Rodzevillo v. Ukraine*, §§ 85-87;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 831-851). 테러조직과 협력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청구인에 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사한 주장에 대하여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는데, 특히 국가는 테러조직과 청구인의 연결을 차단할 정당한 목적이

있고, 친척이 면회를 오려면 먼 길을 와야 한다는 사실은 극복할 수 없거나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Fraille Iturralde v. Spain* (dec.), §§ 26-33). *Polyakova and Others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러시아 법률이 재소자들의 지역적 배치의 악용을 방지할 충분한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116).

357. 수형자 국내 이감과 관련하여 국가는 형집행에 관련한 사안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교도소 수용인원의 배분에 있어서 그 재량은 절대적이지 않다(*Rodzevillo v. Ukraine*, § 83). 재판소는 또한 국가 간 이송요청 사안에 대해서도 판결했다. *Serce v. Romania*, § 56 사건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루마니아에서 복역 중인 터키 국적의 청구인은 남은 형기를 부인과 자녀가 사는 곳과 가까운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자신을 유럽평의회 회원국인 터키로 이송해 달라고 루마니아 당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수감된 루마니아 교도소의 비위생적인 환경, 활동이나 운동 기회의 부족, 청구인이 수감된 교도소의 과밀수용 등이 청구인의 협약상 제3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으나, 협약 제8조는 국가 간 이송요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Palfreeman v. Bulgaria*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으로의 수형자 이송을 거부한 것에 대해, 협약은 수형자가 자신의 구금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36),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관련 조약상의 조항들을 고려하여 제8조의 적용가능성 문제를 검토했다(§§ 33-36).
358. 친척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거부는 가족생활 존중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Schemkamper v. France*, § 31; *Lind v. Russia*, § 92; *Feldman v. Ukraine* (no. 2), § 32 참조). 비록 제8조가 친척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외출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또는 아픈 친척의 병문안을 위한 외출과 관련해 *Ulemek v. Croatia*, § 152 참조), 모든 제한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Lind v. Russia*, § 94 및 *Feldman v. Ukraine* (no. 2), § 34 참조). 따라서 국가는 긴절한 이유가 있고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에만,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거부할 수 있다(*Płoski v. Poland*, § 37 및 *Guimon v. France*, §§ 44-51 참조). 예컨대, 재소자가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 판례로는 *Płoski v. Poland* (§ 39) 사건 및 *Vetsev v. Bulgaria*, § 59 사건을 들 수 있다. 반면, 재판소는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사법부가 문제되는 이익들 사이에서, 즉 청구인의 가족생활 존중권과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타인에 대한 범죄의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으므로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Guimon v. France*, § 50).
359. *Solcan v. Romania*, § 24-35 사건에서는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가 친척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임시석방을 요청했다. 재판소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범죄자는 구금 성격과 목적 면에서 다른 수요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은 일반 재소자와는 다른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재판소는 루마니아 법원이 특별외출 등 다른 해결책을 통해 청구인이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거절한

것은 각각의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장례식에 참석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제8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5. 이민 및 추방

360. 재판소가 확립한 판례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법 원칙과 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과 국내 체류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 67; *Boujlifa v. France*, § 42). 그 밖에도, 협약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는 외국인이 자국에 정착하도록 허용할 의무가 없다(*Jeunesse v. the Netherlands* [GC], § 103). 국가는 이민을 통제할 권한이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청구인과 같은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와 절차에 협력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국이나 체류가 거부될 경우 회원국의 영토를 떠날 의무가 있다(*ibid.*, § 100). 다만, 재판소는 실효적이고 이용가능한 절차가 시행되었다면 청구인의 망명 요청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한 상황의 불안정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그러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아 청구인의 사생활 존중권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B.A.C. v. Greece*, § 46).

a. 구금시설의 아동

361.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면서 서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가족생활의 기본 요소를 구성하지만(*Olsson v. Sweden (no. 1)*, § 59), 가족이라는 단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가족생활권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가족이 구금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Popov v. France*, § 134; *Bistieva and Others v. Poland*, § 73; 또한, 가족이 분리되거나 구금되지 않은 사건인 *B.G. and Others v. France* 비교). 구금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해야 하는데, 가족 관련 사안의 경우, 국가는 비례성 평가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Popov v. France*, § 140). 가족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부모와 함께 입국한 미성년 이민자들을 조직적으로 구금한 경우, 보안 시설에서 15일 동안 구금한 조치는 추구하는 목적과 비례하지 않았으므로 제8조를 위반하였다(*ibid.*, §§ 147-148). 재판소는 또한 국가가 강제추방 결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별한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해당 가족들을 각각 18일과 9일 동안 행정적으로 구금한 두 사건에서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A.B. and Others v. France*, §§ 155-156; *R.K. and Others v. France*, §§ 114 및 117). 그러나 다른 두 사건에서, 각각 8일과 10일 동안 가족을 구금한 조치는 비례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A.M. and Others v. France*, § 97; *R.C. and V.C. v. France*, § 83).

362. *Bistieva and Others v. Poland* 사건에서, 청구인 가족은 (이전의 강제추방명령의 집행을 피해 도주했던) 독일에서 다시 폴란드로 온 후부터 5개월 20일 동안 보안시설에 구금되어 있다가 이 사건을 청구하였다. 이들은 망명 신청을 폴란드가 거절한 직후 독일로 돌아났었다(§ 79). 재판소는 가족이 도주할 위험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폴란드 정부는 이처럼 장기간의 구금을 정당화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88). 실제로 미성년자의 구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87).

363. 이민에 관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에 대한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외국인 미성년자, 특히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가 응당 받아야 할 보호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Mubilanzila Mayeka and Kaniki Mitunga v. Belgium*, § 81). 청구인(5세)이 벨기에 당국의 감독으로부터 빠져나가자 시도할 위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성인을 구금하는 폐쇄적인 시설에 구금한 것은 불필요한 조치였다(*ibid.*, § 83).
364. *Moustahi v. France* 사건에서는 두 어린 아동만을 행정구금 시설에 가둔 채, 아동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을 거절했고 심지어 아버지와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재판소는 가족 가운데 일부만을 구금시설에 수감하고 다른 가족은 구금하지 않은 사실이 해당 조치의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생활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을 강제로 분리한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이유로 자신이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아동을 맡기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들이 만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예컨대, 실제로 그들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는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재결합을 거부한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랑스 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신속히 추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114).

b. 가족 재결합

365. 이민과 관련한 경우, 제8조만으로 국가가 결혼생활의 거주국에 대한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거나 그 영토 안에서 가족의 재결합을 허가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Jeunesse v. the Netherlands* [GC], § 107; *Biao v. Denmark* [GC], § 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국가가 그 영토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친척들의 입국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공익과 관련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 67-68; *Gül v. Switzerland*, § 38; *Ahmut v. the Netherlands*, § 63; *Sen v. the Netherlands*; *Osman v. Denmark*, § 54; *Berisha v. Switzerland*, § 60).
366.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가족생활이 실질적으로 단절되는 정도, 회원국 내에서의 유대관계의 정도,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출신국에서 가족이 살아가는 데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이민 통제 요소가 있는지(예를 들어, 이민법 위반 기록) 또는 입국거부를 정당화하는 공공질서에 대한 고려 등이다(*Rodrigues da Silva and Hoogkamer v. the Netherlands*, § 38; *Ajay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Solomon v. the Netherlands* (dec.)).
367.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가족생활이 시작될 때 관련 당사자들이 체류자의 이민자 신분을 알고 있었고 거주국에서의 가족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Sarumi v. the United Kingdom* (dec.); *Shebashov v. Latvia* (dec.)).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비국적자 가족구성원의 추방은 단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8조와 양립하지 않게 될 것이다(*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 68; *Mitchell v. the United Kingdom* (dec.); *Ajay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Rodrigues da Silva and Hoogkamer v. the Netherlands*; *Biao v. Denmark* [GC], § 138)). 예를 들어, *Jeunesse v. the Netherlands*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청구인의 사건이 실제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결했다. 가족 재결합을 위한 절차는 또한 충분히 투명해야 하며 부당한 지연없이 처리되어야 한다(*Tanda-Muzinga v. France*, § 82).

c. 추방 결정

368.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통제할 권한은 외국인이 성인으로서 입국했는지 아니면 매우 어린 나이에 입국했는지, 또는 거주국에서 태어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Üner v. the Netherlands* [GC], §§ 54-60). 많은 회원국이 자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에 입국한 장기 이민자의 경우 전과를 이유로 추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책방침을 채택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는 제8조에서 도출할 수 없다(*ibid.*, § 55). 하지만, 합법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거주국에서 보낸 정착 이민자의 추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대한 사유가 필요하다(*Maslov v. Austria* [GC], § 75). 재판소는 청구인의 가족생활과 1999년 단 한 건의 중범죄 전과만이 있음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알바니아로 추방하고 그리스 입국을 평생 금지한 조치가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Kolonja v. Greece*, §§ 57-58). 이와 반대로, *Levakovic v. Denmark*, §§ 42-45 사건에서, 재판소는 성인이 된 후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나 형제를 부양할 필요성도 없었던, 그리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음이 지속적으로 드러난 성인 이민자의 추방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덴마크의 추방결정이 마슬로프 대 오스트리아 사건과는 달리, 청소년일 때 저지른 범죄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특히 §§ 44-45 참조).
369. 이러한 사건들을 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판단재량의 의미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한 후 협약 및 판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관련 인권 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사건의 전반적인 공익과 청구인의 개인적 이익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 경우, 본안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의 판단(특히,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비례성심사를 포함하여)을 재판소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재판소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Ndidi v. the United Kingdom*, § 76). 예를 들어, 재판소는 정착 이민자의 추방과 관련된 두 사건에서 덴마크 법원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충돌하는 이익을 신중히 비교형량하였으며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을 고려한 후,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내린 것에 대해 재판소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하지 않았다(*Hamesevic v. Denmark* (dec.), § 43; *Alam v. Denmark* (dec.), § 35; 비교를 위해, 추방 명령의 비례성을 형식적으로만 검토했던 *I.M. v. Switzerland*, 참조). 최근 재판소는, 영국이 이민 관련 법령에서 비례성심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과 관련한 사건을 심리했는데, 청구인은 그 법령으로 인해 법원이 사건에 따른 개별화된 비례성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Unuane v. the United*

Kingdom). 재판소는 영국 법원이 위 법령으로 인해 협약 제8조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못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사건의 사실관계들을 검토한 후, 영국 법원이 필요한 형량심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78-84; 비교를 위해, *M.M. v. Switzerland* 참조). 이에 따라 재판소는 스스로 형량심사를 한 후, 청구인에 대한 추방 명령이 제8조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85-90).

370. 재판소는 또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복리를 검토하면서, 특히 추방되어 가게 되는 국가에서 청구인의 자녀들이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가족적 유대의 견고함은 거주국과 도착국에서 각각 어느 정도인지 검토한다(*Üner v. the Netherlands* [GC], § 58; *Udeh v. Switzerland*, § 52). 재판소는 부모의 추방에 대한 형량심사에서, 자녀가 부모의 출신국으로 귀국했을 때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Jeunesse v. the Netherlands* [GC], §§ 117-118).
371. 이민 사건들에서, 일반적인 감정적 유대를 넘어 추가적인 의존성을 입증할 수 없는 한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는 "가족생활"이 존재하는 않는다(*Kwakyie-Nti and Dufie v. the Netherlands* (dec.), *Slivenko v. Latvia* [GC], § 97; *A.S. v. Switzerland*, § 49; *Levakovic v. Denmark*, §§ 35 및 44).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사생활" 문제로 고려될 수 있다(*Slivenko v. Latvia* [GC]). 나아가, 재판소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젊은 성인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에서 그들의 부모 및 가까운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가 가족생활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Maslov v. Austria* [GC], § 62; *Azerkane v. the Netherlands*, §§ 63-64; *Bousarra v. France*). 다른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성인 자녀들의 경우 의존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성인 자녀들과의 가족생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청구인의 가정 상황에 대한 평가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다.
372.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강제추방결정에 대한 문제된 경우,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것이더라도 자동적으로 집행정지효력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De Souza Ribeiro v. France* [GC], § 83). 다만, 이민 문제의 경우, 강제추방이 외국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불만한 청구가 제기되는데, 협약 제8조와 관련 지어 해석한 제13조에 따라, 체류신청거부나 강제추방에 대해 당사자가 실효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 권한있는 기관에서 충분한 절차적 보호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M. and Others v. Bulgaria*, §§ 122-132; *Al-Nashif v. Bulgaria*, § 133).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조치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는 어떠한 보호장치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반면, 문제된 조치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공권력의 남용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그 조치와 관련한 모든 사실적, 법률적 문제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심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심사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국가기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심적 절차에 따른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Ozdil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 68).

373. 재판소는 출국금지과 여권압수로 인해 청구인이 수년 간 살았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독일로 출국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이러한 조치가 청구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Kotiy v. Ukraine*, § 76).
374.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본국으로 추방될 경우 그곳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강제추방하려는 것은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Paposhvili v. Belgium* [GC], §§ 221-226).

d. 체류허가

375. 관련 기관이 제시한 해결책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 존중권을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면, 제8조 또는 협약의 다른 조항이 특정한 유형의 거주 허가를 부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B.A.C. v. Greece*, § 35). 특히, 체류허가의 내용이 거주국 영토에 거주하면서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체류허가는 원칙적으로 제8조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러 유형의 법적 지위 중 어떤 한 유형의 법적 지위가 청구인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다(*Hoti v. Croatia*, § 121).

6. 물질적 이익

376. "가족생활"이 사회적, 도덕적 또는 문화적 관계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생활은 물질적인 이익도 포함하는데, 무엇보다 양육비 지급의무나 상속재산의 유류분(reserved portion, 불어로는 "réserve héréditaire") 제도를 통해 다수 회원국들의 법제에 자리잡고 있는 지위와 같은 것들이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자녀와 부모, 손자녀와 조부모 사이의 상속권이 가족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제8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했다(*Marckx v. Belgium*, § 52; *Pla and Puncernau v. Andorra*, § 26). 다만, 제8조는 상속을 목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인지청구권을 인정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Haas v. the Netherlands*, § 43).
377. 재판소는 국가가 가족수당을 지급할 경우 제8조에서 의미하는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을 표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제8조의 범위에 포함된다(*Fawsie v. Greece*, § 28).
378. 하지만, 재판소는 청구인의 약혼자가 사망한 후 제3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가족생활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Hofmann v. Germany* (dec.)).
379. "가족생활"은 집을 공격하거나 소지품을 파손하는 경우(*Burlya and Others v. Ukraine*) 또는 퇴거 조치(*Hirtu and Others v. France*, § 66)의 예와 같이 "주거" 또는 "사생활"의 보호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7. 증언거부 특권

380. 가족생활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제출을 강요하는 시도는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Van der Heijden v. the Netherlands* [GC], § 52; *Kryževičius v. Lithuania*, § 51). 그 증인들은 진실한 증거를 제출하여 혐의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와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심지어 위증을 할 것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Van der Heijden v. the Netherlands* [GC], § 65). 이러한 이유로, 이 원칙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물 증거가 아닌 구두 증거(증언)에만 적용할 수 있다(*Caruana v. Malta* (dec.), § 35).
381. 증언하지 않을 권리는 공익을 위해 인정되는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에 대한 면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언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할 경우, 그 권리는 수혜자의 범주가 명확하게 규정된 조건 및 형식에 달려 있게 된다. 증언하지 않을 권리는 두 가지 경쟁하는 공익, 즉 중대 범죄의 기소에 대한 공익과 국가의 제한으로부터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Van der Heijden v. the Netherlands* [GC], §§ 62 및 67).
382. 예를 들어, 재판소는 증언거부 특권을 혼인 또는 등록동반자(그러나 단순히 장기간의 동반자에까지 확대하지는 않는다) 관계에 한정함으로써 혐의자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인정했다(*Van der Heijden v. the Netherlands* [GC], §§ 67-68). *Kryževičius v. Lithuania*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아내가 "특별증인(special witness)"인 형사소송에서 증언하도록 강요당했다. 리투아니아 법에 따르면, 증언 면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가족에 대해 적용될 뿐 "특별증인"의 가족은 면제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특별증인이라는 신분은 피의자 신분과 매우 유사했으므로, 그 형사소송은 청구인의 아내에 "대하여(against)"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한 청구인을 처벌하는 것은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였다(§ 51). 이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증언거부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65 및 69).

IV. 주거

A. 총론

1. "주거" 개념의 범위

383. "주거"의 개념은 법에서의 분류를 따르지 않는 자율적 개념이다(*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 206). 따라서, 거주지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주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사실적 상황, 즉 특정 장소와 충분하고 지속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Winterstein and Others v. France*, § 141, 추가 참조 포함; *Prokopovich v. Russia*, § 36; *McKay-Kopecka v. Poland* (dec.); 강제 이주 사건에 관해서는,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 206-207 및 *Sargsyan v. Azerbaijan* GC], § 260 참조; 무허가 정착촌의 이동식 주택에서 해당 장소와 충분하고 지속적인 연관성 없이 6개월 동안 불법으로 거주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Hirtu and Others v. France*, § 65 참조). 또한 제8조의 영어판에서 사용된 "home"이라는 용어는 엄격하게 해석하면 안되는데, 프랑스판에서는 "domicile"로서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Niemietz v. Germany*, § 30).
384. "주거"는 청구인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거 개념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매년 친척 소유 주택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장기 거주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Menteş and Others v. Turkey*, § 73). "주거"는 합법적으로 수립된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Buckley v. the United Kingdom*, § 54),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지 않은 아파트의 거주자가 주장하거나(*Prokopovich v. Russia*, § 36)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자가 주장할 수 있다(*Yevgeniy Zakharov v. Russia*, § 32). 법률상 점유권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 신분으로 점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나(*McCann v. the United Kingdom*, § 46), 몇 년 동안 점유한 경우에도(*Brežec v. Croatia*, § 36) 적용될 수 있다
385. "주거"는 전통적인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동식 주택(caravan)을 비롯한 다른 고정되지 않은 주거지를 포함한다(*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 71-74; *Hirtu and Others v. France*, § 65와 비교 및 대조). 주거는 법률상 점유의 적법성 문제와 관계없이 지상에 설치된 오두막(cabin) 또는 단층주택(bungalow)을 포함한다(*Winterstein and Others v. France*, § 141; *Yordanova and Others v. Bulgaria*, § 103). 가끔씩 거주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장소 사이의 연관성이 약할 수 있지만, 제8조는 두 번째 집이나 휴가용 별장에도 적용되며(*Demades v. Turkey*, §§ 32-34; *Fägerskiöld v. Sweden* (dec.); *Sagan v. Ukraine*, §§ 51-54), 가구가 일부 비치된 주거 시설에도 적용된다(*Halabi v. France*, §§ 41-43). 청구인의 집 마당에 있는 냉장 보관실에 관해서는, *Bostan v. the Republic of Moldova*,* § 19 사건을 참조하라.
386. 이 개념은 개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며(*DELTA PEKÁRNY a.s. v. the Czech Republic*, § 77), 이러한 예로는 사무실(*Buck v. Germany*, § 31; *Niemietz v. Germany*, §§ 29-31), 신문사 건물(*Saint-Paul Luxembourg S.A. v. Luxembourg*, § 37), 공증인 사무소(*Popovi v.*

Bulgaria, § 103) 또는 대학교수의 연구실(*Steeg v. Germany* (dec.)) 등이 있다. 주거 개념은 또한 회사의 사업소와 지점 기타 사업장에도 적용된다(*Société Colas Est and Others v. France*, § 41; *Kent Pharmaceuticals Limite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387.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스포츠 이벤트와 경기를 위한 훈련장과 경기장, 그리고 원정 경기 시 이용하는 호텔 객실과 같은 부속 건물이 제8조에서 의미하는 "주거"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National Federation of Sportspersons' Associations and unions (FNASS) and Others v. France*, § 158).
388. 재판소는 감시조치에 대해 제소한 단체에 대해서도 "주거"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Association for European Integration and Human Rights and Ekimdzhev v. Bulgaria*), 단체 자체는 오염으로 인해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Asselbourg and Others v. Luxembourg* (dec.)).
389. 재판소는 제8조의 보호를 확장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를 정해 왔다. 주택건축용 대지 또는 특정 지역에 기반한 사실(*Loizidou v. Turkey* (본안), § 66), 아파트 공유시설로서 예비용으로 사용되는 세탁실(*Chelu v. Romania*, § 45), 공연장의 분장실(*Hartung v. France* (dec.)), 스포츠 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예컨대, 사냥에 관한 *Frien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 45), 방앗간, 제빵소 또는 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산업용 건물과 설비(*Khamidov v. Russia*, §131, 비교하여 대조적인 것으로 *Bostan v. the Republic of Moldova**, § 19와 *Surugiu v. Romania*), 가축의 축사(*Leveau and Fillon v. France* (dec.))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설중에 있어 현재 주거에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건물은 "주거"가 될 수 없다(*Halabi v. France*, § 41).
390. 또한, 청구인이 전혀 또는 거의 점유한 적이 없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점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거"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의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제8조의 쟁점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Andreou Papi v. Turkey*, § 54).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상속가능성은 재판소가 "주거"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릴 만한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다(*Demopoulos and Others v. Turkey* (dec.) [GC], §§ 136-137). 뿐만 아니라, 제8조는 주택을 살 권리를 보장하거나(*Strunjak and Others v. Croatia* (dec.)) 부부가 공동 거주지로 선택한 장소를 존중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Mengesha Kimfe v. Switzerland*, § 61). 제8조는 주택을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 99; *Ward v. the United Kingdom* (dec.); *Codona v. the United Kingdom* (dec.)), 특정 위치에 있는 주거와 같이 특정한 주거나 주거 유형도 인정하지 않는다(*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 114). 개인의 주거에 대한 침해는 "사생활"의 보호 요건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 107).
391. 재판소는 지방행정, 계획, 사진, 유지보수 영수증과 같은 문서들뿐 아니라 우편배달 증명, 증언진술서 기타 관련된 증거 등을(*Prokopovich v. Russia*, § 37), 특정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일응의 증거로 인정했다(*Nasirov and Others v. Azerbaijan*, §§ 72-75, 청구인과 아파트 사이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제한"의 예

392.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의 사례로 인용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공권력에 의한 계획적인 주택 파괴(*Selçuk and Asker v. Turkey*, § 86; *Akdivar and Others v. Turkey* [GC], § 88; *Menteş and Others v. Turkey*, § 73) 또는 몰수 (*Aboufadda v. France* (dec.))
- 제8조의 "지속적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강제이주자의 귀향 불허(*Cyprus v. Turkey* [GC], § 174)
- 공권력의 결정에 의한 마을 주민의 이주(*Noack and Others v. Germany* (dec.))
- 개인 주거지에 대한 경찰 출입(*Gutsanovi v. Bulgaria*, § 217) 및 수색(*Murray v. the United Kingdom*, § 86)
- 압수수색(*Chappell v. the United Kingdom*, §§ 50-51; *Funke v. France*, § 48), 청구인이 경찰에 협력한 압수수색(*Saint-Paul Luxembourg S.A. v. Luxembourg*) 제3자의 범죄로 인해 실시된 압수수색(*Buck v. Germany*),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국내법상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집행방식과 실질적인 효과에서 수색과 차이가 없는 모든 조치(*Kruglov and Others v. Russia*, § 123)
- 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나 물건을 압수하지는 않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의 주거지 방문(*Halabi v. France*, §§ 54-56)
- 부동산의 점유 또는 훼손(*Khamidov v. Russia*, § 138) 또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퇴거명령(*Gladysheva v. Russia*, § 91; *Ćosić v. Croatia*, § 22)을 포함한 강제퇴거(*Orlić v. Croatia*, § 56, 추가 참조 포함).

393. 다른 "제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임차권 조건 변경(*Berger-Krall and Others v. Slovenia*, § 264)
- 추방 명령에 따른 주거의 상실(*Slivenko v. Latvia* [GC], § 96)
- 이민 규정으로 인해 커플이 가정을 이루고 가족 단위로 함께 살 수 없는 상황(*Hode and Abdi v. the United Kingdom*, § 43)
- 도시계획 허가 관련 결정(*Buckley v. the United Kingdom*, § 43)
- 청구인의 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경찰서 및 임시구금시설의 일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타 생활방해 등과 같이, 공공기관이 주거의 평화로운 향유를 방해하는 행위(*Yevgeniy Dmitriyev v. Russia*, §§ 33 및 53)

- 강제매수명령(*Howard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및 세무공무원이 회사건물을 출입하고 서버에 있는 데이터의 사본을 가져갈 수 있게 하라고 회사에게 명령한 것(*Bernh Larsen Holding AS and Others v. Norway*, § 106)
- 수년 동안 불법으로 세워져 있던 이동식 주택, 오두막 또는 방갈로에 대한 철거 명령(*Winterstein and Others v. France*, § 143) 또는 불법 임시 주택(*Yordanova and Others v. Bulgaria*, § 104) 및 *Hirtu and Others v. France*, § 65, 비교 및 대조)
- 반집시 정서에 자극을 받아 촉발된 공격으로 주거지 상실(*Burlya and Others v. Ukraine*, § 166)
- 영주권등록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할 수 없는 상황(*Babylonová v. Slovakia*, § 52)
-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면허취득 의무 및 자기 소유의 부동산 점유가 불법이라며 부과한 벌금(*Gillow v. the United Kingdom*, § 47).

재판소는 또한 분쟁상황에서 강제이주자가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것은 제8조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 207; *Sargsyan v. Azerbaijan* [GC], § 260).

394. 반대로, 청구인의 이웃이 수행한 건설 또는 재건축 공사가 합법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제8조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제8조를 적용하려면, 이웃의 건설 공사로 발생한 문제가 청구인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소를 설득하여야 한다(*Cherkun v. Ukraine* (dec.), §§ 77-80).

3. 판단재량

395. 주거에 관하여는, 제기되는 문제들이 여러 지역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정책과 관련되는 만큼,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재량을 갖는다(*Noack and Others v. Germany* (dec.)); 또한, 주택 문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사안에서의 폭넓은 판단재량에 관해서는,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 141, 144, 158 및 이 사건에서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그러나 재판소는 판단재량의 행사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결정할 수 있다(*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 92).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고 그에 뒤따르는 조치가 이행되는 상황에서는, 정책적 판단의 실행이 협약상의 쟁점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Noack and Others v. Germany* (dec.)). 그러나 해당 권리가 개인의 내밀하거나 핵심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일 경우 판단재량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Connors v. the United Kingdom*, § 82).

B. 주택

396. 제8조는 주택을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하거나(*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 99) 특정 지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Garib v. the Netherlands*, [GC], § 141). 또한, 노숙자에게 거처를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의 범위는 제한적이다(*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 114).
397.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는 실제 물리적 영역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해당 영역의 평온 향유에 대한 권리까지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히 법원 결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Cvijetić v. Croatia*, §§ 51-53). 제한은 개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형태(*Cyprus v. Turkey* [GC], § 294; *National Federation of Sportspersons' Associations and Unions (FNASS) and Others v. France*, § 154) 또는 소음, 냄새 등과 같은 비물리적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Moreno Gómez v. Spain*, § 53).
398. 제8조는 공권력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인을 보호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주거" 존중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Novoseletskiy v. Ukraine*, § 68), 이는 개인 간의 영역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Surugiu v. Romania*, § 59).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문과 창문 앞에 거름을 투척한다고 청구인이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청구인의 거둬민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ibid.*, §§ 67-68; 국가기관이 적극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건에 관해서는, *Osman v. the United Kingdom*, §§ 129-130 참조). 국가기관이 소유자를 위하여 아파트에서의 퇴거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제8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Pibernik v. Croatia*, § 70). 공공기관이 부적합한 거주환경의 아파트를 뒤늦게 개보수한 조치에 대해 청구인의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Novoseletskiy v. Ukraine*, §§ 84-88). 협약이 안전한 식수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직접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식수를 계속해서 이용하지 못할 경우 건강과 인간의 존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개인의 사생활 및 주거 향유의 핵심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및 그 심각성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 116, 158 및 §§ 145-146).
399. 재판소는 회원국이 해당 사건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당화되는 공권력에 의한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인의 주거 존중권을 보호하는 법체계를 채택해야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거나 간에, 당해 사건의 충돌하는 이익을 비교형량할 것을 요구한다(*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98)
400. 국가가 주거 문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특별한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Connors v. the United Kingdom*, § 82; *Gladysheva v. Russia*, §§ 91-96). 개인의 정체성, 자기결정권, 신체적, 도덕적 온전성에 대해 제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가진 판단재량의 범위는 제1의정서 제1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 비해 그 폭이 좁다(*ibid.*, § 93).

401. 재판소는 국가가 적용가능한 법체계를 명확히 정함에 있어 판단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절차적 보장을 특히 주목할 것이다(*Connors v. the United Kingdom*, § 92). 재판소는 여러 제한 중에서도 주거를 잃는 것은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제한이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심각한 제한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은 국내법에 따라 점유권이 소멸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법원에서 협약 제8조의 관련 원칙에 비추어 비례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McCann v. the United Kingdom*, § 50). 이 원칙은 국영주택 또는 공공주택과 관련하여 발전되어왔다(*F.J.M. v. the United Kingdom* (dec.), § 37, 추가 참조 포함). 그러나 민간 개인이나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공공 임대인과 민간 임대인 간에 차이를 두었다(§ 41). 특히, 민간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인 경우, 당사자들의 충돌하는 이익들 사이의 형량의 결과를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소유권과 관련한 주장들을 심리할 때 이러한 충돌하는 이익을 다시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된다(§ 45).

1. 부동산 소유자

402. 국가기관이 이전 소유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부동산의 선의취득 사안을 다룰 때, 국내 법원은 조처의 비례성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퇴거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해당 주택이 그 주택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다른 민간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의해 회수된다는 사실도 특히 중요하다(*Gladysheva v. Russia*, §§ 90-97).

403. 회원국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개인의 주거지를 압류하고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개인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체납 세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을 경매로 강제매각하는 조건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소유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으므로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Rousk v. Sweden*, §§ 137-142). 더 일반적 차원에서 부채상환을 위한 주택의 강제매매와 개인의 주거 존중권 사이에서 균형을 조절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Vrzić v. Croatia*, § 13 사건을 참조한다.

404. 섬의 인구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섬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의무 자체가 제8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부동산 소유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충분한 비중을 두지 않을 경우 비례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Gillow v. the United Kingdom*, §§ 56-58).

405. 재판소는 관련 건축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 허가 없이 건설했다는 사유로 철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곧 주택을 잃게 될 청구인의 문제를 검토했다(*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재판소는 주로 철거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했다. 재판소는 퇴거절차가 제8조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주거를 잃는 것은 당사자가

취약계층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제한임을 확인하며 이전 사건에서 내린 판결을 바탕으로 검토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의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는데, 불가리아 법원은 제기된 쟁점이 불법성에 관한 문제였으며, 불법성에 대한 문제만을 심리하고 철거명령의 집행이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미치는 효과가 비례성에 위반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ibid.*, §§ 49-62).

406. 재판소는 또한 국가가 사인에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과 주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모든 관련 당사자가 협약에 따른 각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규율과 필요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Irina Smirnova v. Ukraine*, § 94).

2. 임차인

407. 재판소는 임차인 퇴거와 관련된 여러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 52 사건에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국가기관에 의한 퇴거 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제8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법원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적 보호장치를 따라야 한다(*Connors v. the United Kingdom*, §§ 81-84; *Bjedov v. Croatia*, §§ 70-71). 문제되는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법에 규정된 조치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Ćosić v. Croatia*, § 21). 그 조치는 또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제8조제2항에 따라,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함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아야 하는 점유자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Orlić v. Croatia*, § 64; *Gladysheva v. Russia*, §§ 94-95; *Kryvitska and Kryvitskyy v. Ukraine*, § 50; *Andrey Medvedev v. Russia*, § 55).

408. 이에 따라, 재판소는 충분한 절차적 보장 없이 임차인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린 약식 절차가 주택 법규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McCann v. the United Kingdom*, § 55). 공공단체가 임대인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독립적인 법원에서 임차권 해지 조치의 비례성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임차권 해지는 제8조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Ka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74). 임대인이 사인이거나 민간 단체인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Vrzić v. Croatia*, § 67; *F.J.M. v. the United Kingdom* (dec.), § 41).

또한, 해당 점유의 불법성이 확인된 후 법원에서 발급된 집행가능한 퇴거명령을 어기고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다(*Khamidov v. Russia*, §145).

409. 재판소는 *Larkos v. Cyprus* [GC] 판결에서, 국유재산을 임차하는지 또는 민간 임대인로부터 임차하는지를 기준으로 퇴거에 있어 임차인을 다르게 보호한 조치가 제8조와 관련 지어 해석한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31-32). 그러나 정부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만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민간 소유 아파트 임차인은 구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Strunjak and Others v. Croatia* (dec.)). 또한, 공공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는 한 공공주택의 배분기준을 두는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Bah v. the United Kingdom*, § 49; 공공주택 임차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Paulić v. Croatia* 참조; *Ka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410. 재판소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행된 주택 부문의 개혁으로 "특별 보호 임차권" 보유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경우, 이러한 개혁이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임대료 인상과 아파트 거주에 대한 보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임차인은 일반 임차인들에게 제공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특별 보호를 계속 누렸다(*Berger-Krall and Others v. Slovenia*, § 273 및 이 사건에서 인용된 참조 판례; *Galović v. Croatia* (dec.), § 65 비교).

3. 임차인의 동거인, 무단 점유

411. 협약 제8조에서 제공하는 보호는 국내법에 따른 합법적 또는 승인된 건물점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McCann v. the United Kingdom*, § 46; *Bjedov v. Croatia*, § 58; *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 49). 사실상 재판소는 동거인만이 임차권을 보유한 아파트 점유자(*Prokopovich v. Russia*, § 37; *Korelc v. Slovenia*, § 82 및 *Yevgeniy Zakharov v. Russia*, § 32) 및 아파트에서 40년 가까이 불법 거주한 자에게까지 제8조 보호를 확대 적용했다(*Brežec v. Croatia*, § 36). 한편, 개인에 대한 퇴거명령이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해당 주거가 불법적으로 시작되었는지 여부는 매우 관련성이 크다(*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 102).
412. 재판소는, 러시아 법원이 청구인이 동거인과 함께 살았던 10년 동안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문제된 방이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위 사실 사이에서 아무런 형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협약 위반을 인정했다(*Yevgeniy Zakharov v. Russia*, §§ 35-37).
413. 재판소는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던 동성 동거인이 사망한 후 동거인이 그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을 금지한 사건에서 이러한 임차권승계 금지가 제8조와 관련 지어 해석한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Karner v. Austria*, §§ 41-43; *Kozak v. Poland*, § 99).

4. 소수자 및 취약계층

414. 재판소는 또한 소수자의 생활방식을 보호하는 판례를 통해 점유자의 취약성을 배려한다. 와 함께 검토한다(예를 들어,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 142 참조). 특히 집시와 유랑자 집단의 취약성 및 이들 집단의 특별한 필요와 삶의 방식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onnors v. the United Kingdom*, § 84). 이에 따라 국가기관에 적극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 96; *Yordanova and Others v. Bulgaria*, §§ 129-130 및 133), 이러한 의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Codona v. the United Kingdom* (dec.);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 158). 집시

집단의 이동식 주택에 대한 조치는 이들의 "거주" 존중권에 영향을 준다(*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 73, *Hirtu and Others v. France*, § 65).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중점을 둔다(*Stenegry and Adam v. France* (dec.)).

415.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Winterstein and Others v. France* 판결(§ 148, 추가 참조 포함)에서 제8조 요건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재차 적용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고, 계획을 수립한 관할 기관의 결정이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으며, 채택한 수단이 비례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Buckley v. the United Kingdom*, § 84; *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 114). 개인에 대한 퇴거 조치에 관련하여, 재판소는 *Connors v. the United Kingdom*, § 95, *Yordanova and Others v. Bulgaria*, § 144, *Winterstein and Others v. France*, §§ 156 및 167, *Buckland v. the United Kingdom*, § 70, *Bagdonavicius and Others v. Russia*, § 107, 임대계획이 없는 주택의 강제 퇴거 및 철거 관련) 등의 사건에서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416. 재판소는 또한 주택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집시들의 불안감을 지속시키는 국가기관의 전반적인 태도와 그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제한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8조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 108-109; *Burlya and Others v. Ukraine*, §§ 169-170).
417. 소수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그 자체로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Noack and Others v. Germany* (dec.)).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소수민족이 일부 포함된 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시키는 조치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적절한지 여부와 문제의 제한이 소수집단에 영향을 준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당 제한이 추구된 목적에 비례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재판소는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사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집시 공동체 구성원이 수도.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범위를 다루었다(§§ 143-158).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한 조치가 이들의 취약한 입장을 고려했으므로 제8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결했다(§ 158).
418. 법적 능력이 부족한 개인 역시 특히 취약하다. 제8조는 이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다. 따라서 법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관련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한 조치가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를 박탈당한 경우, 이는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Zehentner v. Austria*, §§ 63 및 65). 법령상의 보호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A.-M.V. v. Finland*, §§ 82-84 및 90). 위 사건에서, 재판소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교육과 거주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419.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아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 74).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사법제도가 심각한

가정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78-79).

420. 제8조는 주택을 제공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노숙자에게 거처를 제공할 적극적 의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수용시설을 보장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Yordanova and Others v. Bulgaria*, § 130, 추가 참조 포함). 복지당국이 중증질환을 앓는 개인에 대한 주거지원을 거부한 것은 해당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상황에서는 제8조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O'Rourke v. the United Kingdom* (dec.))
421. 재판소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소는 관련 국제법 자료를 고려하여 회원국이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의 범위를 결정한다(*A.-M.V. v. Finland*, §§ 73-74 및 90). 주택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폭넓은 판단재량을 인정받는다(*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 141 및 158).

5. 주거 방문, 수색 및 압수

422. 국가는 특정 범죄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 주거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Dragan Petrović v. Serbia*, § 74). 개인 주거지에 진입할 때 경찰의 행동은 "합법적"이어야 하고(*Bostan v. the Republic of Moldova**, §§ 21-30),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해야 하며(*McLeod v. the United Kingdom*, §§ 53-57, 협약 위반;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예는, *Dragan Petrović v. Serbia*, §§ 75-77 참조), 이 요건은 개인의 주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Vasylichuk v. Ukraine*, § 83, 사유지 구내를 살살이 수색한 것과 관련된 사건).
423. *National Federation of Sportspersons' Associations and Unions (FNASS) and Others v. France* 판결은 "표적 집단"에 속하는 우수한 운동선수들에게 불시 도핑검사를 위해 자신의 소재를 사전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 관한 판결이다. 재판소는 도핑검사를 위해 주거를 방문한 것은 법원의 감독하에 범죄수사나 재산압류 목적으로 수행된 것과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수색은 분명히 주거에 대한 존중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며, 운동선수의 집을 방문하는 것과는 같이 볼 수 없을 것이다(§ 186).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러한 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운동선수 개인과 전체 스포츠계의 건강에 대한 도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예고없이 도핑검사를 수행할 필요성에 대한 유럽 및 국제적인 공감대와 배치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190).
424. 시민은 경찰이 주거에 부당하게 침입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재판소는 복면을 쓰고 기관총으로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새벽에 개인 가정집에 진입해 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전달하고 경찰서로 호송한 경우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Kučera v. Slovakia*, §§ 119 및 122; 또한, *Rachwalski and Ferenc v. Poland*, § 73 참조). 이러한 보호조치는 불법수색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일 경우 국가의 실효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조사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제8조의 절차적 의무 위반을 인정한 *H.M. v. Turkey*, §§ 26-27 및 29; 이러한 절차적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Vasylchuk v. Ukraine*, § 84 참조).

425. 개인 주거지 진입과 관련된 조치는 법적 절차에 대한 준수를 포함해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L.M. v. Italy*, §§ 29 및 31), 이미 수립되어 있는 보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Panteleyenko v. Ukraine*, §§ 50-51; *Kilyen v. Romania*, § 34), 제8조제2항에 열거된 정당한 목적 중 하나를 추구해야 하고(*Smirnov v. Russia*, § 40),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Camenzind v. Switzerland*, § 47).
426.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 조치의 예로는, 독점규제기관의 경쟁보호조치(*DELTA PEKÁRNÝ a.s. v. the Czech Republic*, § 81), 탈세 방지(*Keslassy v. France* (dec.); *K.S. and M.S. v. Germany*, § 48), 위조, 배임 및 부정수표 발행 등 범죄행위에 대한 정황 증거 및 물리적 증거의 수집(*Van Rossem v. Belgium*, § 40), 살인(*Dragan Petrović v. Serbia*, § 74), 마약 밀매(*Işıldak v. Turkey*, § 50) 및 의약품 불법거래(*Wieser and Bicos Beteiligungen GmbH v. Austria*, § 55), 환경보호 및 생활방해의 방지(*Halabi v. France*, §§ 60-61), 스포츠 도핑 방지와 관련하여 건강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National Federation of Sportspersons' Associations and Unions (FNASS) and Others v. France*, §§ 165-166) 사건 등이 있다.
427. 재판소는 또한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기된 주장의 관련성과 적절성,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서 비례성원칙의 준수 여부(*Buck v. Germany*, § 45), 관련 법령과 관행이 국가기관의 자의적 조치를 방지하는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Gutsanovi v. Bulgaria*, § 220; 적용 기준에 관해서는, *Iliya Stefanov v. Bulgaria*, §§ 38-39; *Smirnov v. Russia*, § 44 참조). 예를 들어, 판사는 그 조치를 승인할 때 근거를 명시하는 별도의 명령 없이 단순히 기록에 서명하고, 법원의 공식 직인을 날인하고, 문서에 "승인"이라고 적은 뒤 결정 날짜와 시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Gutsanovi v. Bulgaria*, § 223).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영장에 따라 수행된 가택수색에 대해서는 *K.S. and M.S. v. Germany*, §§ 49-53 사건을 참조하라.
428. 재판소는 국내법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택수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재판소는 합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실효적인 사후적 사법심사가 영장 없는 수색을 보완하는 경우 이러한 수색을 인정한다(*Işıldak v. Turkey*, § 51; *Gutsanovi v. Bulgaria*, § 222). 관련 당사자가 효과적인 사후적 사법심사를 통해 해당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및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DELTA PEKÁRNÝ a.s. v. the Czech Republic*, § 87). 사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검사가 가택수색을 지시한 행위는 제8조에 위반된다(*Varga v. Romania*, §§ 70-74).
429. 재판소는 영장이 허용하는 조치에 아무런 한계가 없는 것은 곧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되므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영장의 문구는 (수색이 수사 중인 범죄에만 한정되도록 하기 위해) 영장의 범위와 (집행 범위에 대한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집행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수사 또는 압수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 문구로 작성된 영장은 수사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의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Van Rossem v. Belgium*, §§ 44-50, 추가 참조 포함; *Bagiyeva v. Ukraine*, § 52).

430. 합리적인 예방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Keegan v. the United Kingdom*, §§ 33-36 수색 대상 장소의 거주자 신원에 대한 적절한 사전 검증을 하지 않은 사건), 과도한 조치인 경우(*Vasylychuk v. Ukraine*, §§ 80 및 84), 이러한 경찰의 수색은 불균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이 오전 6시에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을 그가 없는 사이에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친 것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다(*Zubal' v. Slovakia*, §§ 41-45, 재판소는 관련 당사자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언급). 재판소는 또한 다른 사람의 범행이라고 알려진 범죄와 관련된 개인 주거지의 압수수색이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Buck v. Germany*, § 52).
431. 재판소는 가택수색이 청구인이나 기타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 수행된 것인지 고려할 수 있다(*Bagiyeva v. Ukraine*, § 53). 이는 청구인이 수색 범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는지 고려하는 요소의 하나이다(*Maslák and Michálková v. the Czech Republic*, § 79). 반면, 당사자, 변호사, 다른 증인 2명, 전문가 1명과 함께 수행되었으나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효과적인 사후 검토 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수색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위험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Gutsanovi v. Bulgaria*, § 225).
432. 공판 전 수사에 앞서 수행되는 경찰의 예비조사와 같은 형사소송 초기 단계에서 수색을 수행할 경우 적절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Modestou v. Greece*, § 44). 재판소는 모호한 영장 문구, 사전 사법심사의 결여, 청구인이 수색 현장에 없었던 점, 즉각적인 소급 효과를 갖는 사법검토의 결여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 초기 단계에 실시한 수색이 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52-54).
433. 반대로, 국내법에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색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 제8조 위반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Camenzind v. Switzerland*, § 46 및 *Paulić v. Croatia*, 수색 범위가 무허가 전화기 압수 목적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된 사건; *Cronin v. the United Kingdom* (dec.) 및 *Ratushna v. Ukraine*, § 82 적절한 보호조치 유무와 관련된 사건).
434. 가택방문 및 압수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세관에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과 사법기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을 근거로 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Mialthe v. France (no. 1)*, *Funke v. France*, *Crémieux v. France*).
435. 재판소는 문제되는 제한이 협약 제8조제2항과 양립가능한지를 심사할 때, 테러 위협으로부터 시민과 기관을 보호할 필요성과 테러 관련 범죄용의자의 체포 및 구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고려한다(*Murray v. the United Kingdom*, § 91; *H.E. v. Turkey*, §§ 48-49). 테러방지법은 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Khamidov v. Russia*, § 143). 대테러 작전에 관해서는 *Menteş and Others v. Turkey*, § 73 사건도 참조하라.

436. *Sh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관련 기관은 곧 테러 공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소는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히 광범위한 문구로 작성되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테러와의 싸움과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원래 허용되었을 문구보다 광범위한 문구로 작성된 영장에 따라 수색이 실시되었더라도 이러한 수색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격의 사안에서,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테러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발견할 경우 이러한 증거를 평가하고 압수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174-176).

C. 사업장

437. 협약 제8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는 회사의 사업소, 지점 또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존중권을 포함할 수 있다(*Société Colas Est and Others v. France*, § 41).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본사이기도 한 개인 건물과 관련해서는 *Chappell v. the United Kingdom*, § 63 사건을 참조한다.

438. 제한의 필요성을 심사할 때, 법인에 대한 수색인 경우 국가는 개인에 대한 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판단재량을 누린다(*DELTA PEKÁRNY a.s. v. the Czech Republic*, § 82; *Bernh Larsen Holding AS and Others v. Norway*, § 159).

439. 가택수색 또는 사업장 방문 및 압수는 제8조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Keslassy v. France* (dec.); *Société Canal Plus and Others v. France*, §§ 55-57). 이러한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관련성 있고 충분한" 이유가 없고 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는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8조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다(*Posevini v. Bulgaria*, §§ 65-73, 추가 참조 포함; *Société Canal Plus and Others v. France*, §§ 48-49).

440. 예를 들어, 재판소는 세무 당국이 컴퓨터 서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관련하여, 세금산정 목적으로 청구인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효율적인 조사에 내재한 공익을 강조하는 한편 세무 당국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Bernh Larsen Holding AS and Others v. Norway*, §§ 172-174, 위반 없음).

441.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업장에 대해 수행한 조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사전에 허가를 요청하거나 판사의 검토를 받지 않았고, 제한의 필요성에 관해 실효적인 사후심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압수한 사본의 파기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해당 조사가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DELTA PEKÁRNY a.s. v. the Czech Republic*, § 92).

D. 법률사무소

442. 협약 제8조제1항의 "주거" 개념은 개인의 주거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사무실 또는

법률사무소(law firm)를 포함한다(*Buck v. Germany*, §§ 31-32; *Niemietz v. Germany*, §§ 30-33).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수색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의 기초인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을 침해할 수 있다(*André and Another v. France*, § 41).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수색의 경우, "특별한 절차적 보장"이 있어야 하며 변호사는 수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한 수색을 무효로 할 수 없는 구제절차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Xavier Da Silveira v. France*, §§ 37, 42 및 48). *Kruglov and Others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권한의 남용이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조치 및 이와 관련한 고려요소들에 대한 판례를 요약했다(§§ 125-132). 법조인에 대한 탄압과 압박은 협약 체제의 본질을 공격하므로, 변호사의 자택이나 사무실에 대한 수색은 "특히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 문헌에 관해서는, §§ 102-105 참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률 고문의 직업상 비밀유지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137).

443. 변호사에 대한 수색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의 채택과 이행은 매우 명확하고 엄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Petri Sallinen and Others v. Finland*, § 90; *Wolland v. Norway*, § 62).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 때문에도 변호사에 대한 수색에 특히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Heino v. Finland*, § 43; *Kolesnichenko v. Russia*, § 31).

444. 변호사에 대한 수색은 변호사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실시되거나, 아니면 변호사와 무관한 범죄와 관련해 실시될 수 있다. 일부 사건들에서, 문제된 수색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미리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되었거나(*André and Another v. France*, § 47),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을 위반하여 실시되었다(*Smirnov v. Russia*, §§ 46 및 49, 또한 § 39 참조). *Niemietz v. Germany* (§ 37) 사건 이후, 협약 제6조(변호권)와 관련된 경우 언제나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재판소는 또한 변호사의 평판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한다(*ibid.*, § 37; *Buck v. Germany*, §45).

445. 협약은 의뢰인과의 관계와 관련될 수 있는 일정한 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는 특히 변호사의 범죄가담 또는 특정한 불법적 관행에 대한 대응 노력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엄격한 체제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André and Another v. France*, § 42). 협약상의 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법률회사에 대해 실시된 수색 사례에 관해서는 *Jacquier v. France* (dec.) 사건과 *Wolland v. Norway* 사건을 참조하고, *Leotsakos v. Greece*, §§ 51-57 사건과 대조하라.

446. 주거에 대한 방문에 변호사협회 회장이 같이 참석한 것은 "특별한 절차적 보장"에 해당한다(*Roemen and Schmit v. Luxembourg*, § 69; *André and Another v. France*, §§ 42-43) 그러나 변호사협회 회장이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ibid.*, §§ 44-46; 또한, 더 일반적 차원에서 독립 참관인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Leotsakos v. Greece*, §§ 40 및 52 참조). 재판소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급받지 않은 사실과 실효적인 사후적 사법심사의 결여를 근거로 협약 위반이라고 판결했다(*Heino v. Finland*, § 45).

447. 증거조사 의뢰장(*letters rogatory*) 발급에 필요한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를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권한남용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의 범위와 수사관에게 부여된 권한 또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수사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상 비밀유지의무를 적절히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협약 위반이라고 판결했다(*Kolesnichenko v. Russia*, §§ 32-35; *Iliya Stefanov v. Bulgaria*, §§ 39-44; *Smimov v. Russia*, § 48; *Aleksanyan v. Russia*, § 216). *Kruglov and Others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원이 변호사의 공간을 수색할 때 보장되는 유일한 보호조치가 사법부의 사전허가라고 믿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제8조 위반으로 판결했다. 재판소는 법원이 범죄수사에 관한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허가할 수 없으며, 이는 수사의 대상이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인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재판소는 법원이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을 보호할 의무와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ibid.*, §§ 126-129).
448. 또한 재판소는 특별한 절차적 보장이 제공되었으나, 추구한 정당한 목적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Roemen and Schmit v. Luxembourg*, §§ 69-72). 재판소는 해당 제한이 비례적이었는지 그리고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었는지를 심사하면서, 관련 기관이 검토해야 할 문서의 양, 검토에 필요한 시간, 청구인이 겪어야 할 불편함의 정도를 고려했다(*Wolland v. Norway*, § 80).
449. 제8조에 따라 수색은 "주거", "통신"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Golovan v. Ukraine*, § 51; *Wolland v. Norway*, § 52).

E. 언론인의 주거

450. 취재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언론사 내부를 수색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협약 제10조에 따른 심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의 공간에 대한 수색은 언론의 취재원을 밝혀낼 목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Roemen and Schmit v. Luxembourg*, §§ 64-72).
451. *Ernst and Others v. Belgium* 사건에서 재판소는 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보장이 제공된 점을 인정했으나 기자들의 직업과 관련된 사적 공간을 여러 차례 수색한 것이 비례성에 위반한 조치라고 보았다. 이 사건의 기자들은 어떠한 범죄혐의도 받지 않고 있었고, 수색영장은 광범위한 문구로 작성되었으며 수사내용, 조사장소 및 압수할 물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색영장은 수사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수사관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복사하고 압수할 수 있었다. 게다가, 기자들은 수색 이유도 전달받지 못했다(§§ 115-116).
452. 재판소는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사 본사를 수색한 것에 대해 심사했다. 재판소는 신문사 기자와 직원이 경찰에 협조하였다고 해서 그 수색 및 압수가 덜 침해적인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관할 기관은 그

사건의 실제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의 집행을 자제하여야 한다(*Saint-Paul Luxembourg S.A. v. Luxembourg*, §§ 38 및 44).

453. 언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수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Man and Others v. Romania* (dec.) 사건에서 법령과 관행이 권한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했던 요소를 열거했다(§ 86).

F. 주거 환경

1. 일반적인 접근법

454. 협약은 건강하고 조용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Kyrtatos v. Greece*, § 52). 그러나 개인이 소음을 비롯한 오염으로부터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제8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96, *Moreno Gómez v. Spain*, § 53). 국가가 해당 오염을 직접 유발했는지 아니면 민간부문의 활동을 적절히 규율하는 규정을 수립하지 않아 해당 오염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다(*Jugheli and Others v. Georgia*, §§ 73-75).
455. 하지만, 제8조에 따른 쟁점이 제기되려면 환경오염이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96). 예를 들어, 미래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 위험에 대한 언급 자체로는 청구인이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는 데 불충분하다(*Asselbourg and Others v. Luxembourg* (dec.)).
456. 환경오염의 영향은 "심각성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반드시 인간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López Ostra v. Spain*, § 51). 사실 심각한 환경오염이 개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주거 향유를 방해할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지는 않을 수 있다(*Guerra and Others v. Italy*, § 60). 실제로, 환경 위험이 청구인의 주거,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 향유 가능성을 심각히 방해하는 경우 제8조의 청구이유가 발생할 수 있다(*Jugheli and Others v. Georgia*, §§ 71-72). 이러한 청구이유를 충족하는 최소기준에 대한 심사결과는 생활방해의 강도 및 지속시간(*Udovičić v. Croatia*, § 139), 개인의 건강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Fadeyeva v. Russia*, § 69).
457. 따라서, 제8조는 "일반적인 환경 악화"(*Martínez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 42) 또는 모든 현대 도시생활에 내재하는 환경 위험과 비교할 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Hardy and Maile v. the United Kingdom*, § 188).
458.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진동소음(*Fägerskiöld v. Sweden* (dec.)) 또는 치과 수술에서 발생하는 소음(*Galev and Others v. Bulgaria* (dec.))이 거주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의 향유를 방해한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심각성

최소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또한, 육류가공공장과 관련해서는 *Koceniak v. Poland* (dec.) 참조). 반면, 시골의 주택 인근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소음은 심각성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Zammit Maempel v. Malta*, § 38).

459. 문제된 생활방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사실만으로는 제8조를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재판소는 해당 생활방해가 판례에 따라 요구되는 심각성 최소기준을 충족하는지 결정해야 한다(*Furlepa v. Poland* (dec.)).
460. *Dzemyuk v. Ukraine* 사건은 청구인의 주거지 및 급수원과 가깝게 위치한 공동묘지와 관련된 사건이다. 청구인의 우물에서 검출된 높은 수준의 박테리아는 환경보건 안전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질오염을 비롯한 실질적인 환경 위험은 제8조를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심각성 수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했다(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이용에 관해서는,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 113 비교). 묘지 부지의 불법성은 그동안 슬로베니아 법원의 여러 판결들을 통해 인정되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폐쇄를 명령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거,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에 대한 제한이 "법에 따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7-84 및 87-92). *Yevgeniy Dmitriyev v. Russia*, §§ 33 및 53 사건은 청구인의 집 아래에 위치한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기타 생활방해와 경찰이 수행하는 공공의 평화 및 안전 보호, 효과적인 법 집행에서 얻는 지역사회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다룬 사건이다(§§ 53-57).
461. 재판소는 공해가 주거 존중권에 미치는 피해의 입증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융통성을 허용한다(*Fadeyeva v. Russia*, § 79). 청구인이 해당 공해의 위험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공식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각하되지는 않았다(*Tătar v. Romania*, § 96).
462. 재판소는 "주거"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주장을 심리할 때 2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재판소는 해당 국가가 내린 결정의 실제적인 본안을 검토하고 둘째, 의사결정 과정을 심사한다(*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99). 협약 위반에는 공권력의 자의적인 제한이나 적극적 의무의 불이행이 포함될 수 있다. 재판소는 두 경우 모두 개인과 공동체 전체 사이의 충돌하는 이익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Moreno Gómez v. Spain*, § 55).
463. 개인이 주거 존중권을 실효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Tătar v. Romania*, § 88).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 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Tolić and Others v. Croatia* (dec.), § 95). 재판소는 민간기업이 유발한 수질오염에 관한 사건에서 국가가 반드시 형벌을 적용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민사적 구제로도 충분하다고 판결했다(*ibid.*, §§ 91-101).
464. 재판소는 환경 인권에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판단재량을 누린다(*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00 및 122). 국가는 충돌하는 이익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Fadeyeva v. Russia*, § 93;

Hardy and Maile v. the United Kingdom, § 218). 소음공해 영역의 경우, 재판소는 주거 지역에 인접한 곳에서 대규모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으며(*Powell and Rayner v. the United Kingdom*, § 42), 여기에는 야간의 운행도 포함된다(*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26). 하지만, 재판소는 국가가 주민을 대형 제철소 주변의 위험지역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에 관한 실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고 산업공해를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Fadeyeva v. Russia*, § 133). 재판소는 또한 주헬리 외 대 조지아 사건에서 피청구국이 화력발전소 가동과 청구인의 주거 및 사생활 존중권의 실제적인 향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Jugheli and Others v. Georgia*, §§ 77-78).

465. 재판소는 국가가 시행한 조치를 고려한다. 국가가 유해 폐수를 처리하는 공장폐쇄 조치를 지연시켰던 *López Ostra v. Spain*, §§ 56-58 사건에서 재판소는 주거 존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결했다. *Moreno Gómez v. Spain*, § 61 사건에서는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나이트클럽의 지속적인 소음공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력한 조치에 대해 협약 위반으로 판결했다. 또한 *Di Sarno and Others v. Italy*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탈리아가 폐기물 수거, 처리 및 처분 서비스를 장기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 주거 존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12). 반면, *Tolić and Others v. Croatia*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크로아티아가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았다(§§ 95-101).
466. 의사결정 과정에는 문제된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28).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재판소는 이러한 요건이 결정의 대상 문제의 모든 측면에 관해 종합적이고 측정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조사는 충돌하는 이익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ibid.*)
467. 재판소는 수행된 조사 및 연구 결과와 환경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용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Giacomelli v. Italy*, § 83). 이에 따라 재판소는 시안화나트륨을 사용하는 공장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비판했다(*Tătar v. Romania*). 이 사건에서는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20) 사건과 달리, 지역 주민은 발전소 가동 승인의 근거가 되었던 연구의 결론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 문제에 관해 다른 공식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청회를 규율하는 법 조항은 지켜지지 않았다(*Tătar v. Romania*, §§ 115-124).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재판소는 대중이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두 곳의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Hardy and Maile v. the United Kingdom*, §§ 247-250).
468. 모든 개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Tătar v. Romania*, § 88). 이는 관련된 국가기관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묘지 때문에 청구인의 우물에 박테리아 오염이 발생한 사건에서 묘지 폐쇄를 명령한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Dzemyuk v. Ukraine*, § 92).

469.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의 선택은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국가는 개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배출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이와 같은 복잡한 영역에서, 제8조는 국가기관에 대해 모든 개인이 특정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Grimkovskaya v. Ukraine*, § 65).

2. 소음 공해, 상린관계 기타 생활방해

470. 생활방해의 원인이 개인이든 기업 활동이든 또는 공공기관이든 간에, 이웃과 함께 지낼 때의 일반적인 어려움을 넘어서는 경우(*Apanasewicz v. Poland*, § 98), 이러한 생활방해는 개인의 평온한 주거향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rtínez Martínez v. Spain*, §§ 42 및 51). 심각성 최소기준을 충족한 경우(*Yevgeniy Dmitriyev v. Russia*, §§ 32-33; *Grimkovskaya v. Ukraine*, § 58), 적절한 절차에 따라 생활방해 신고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평온한 주거향유에 대한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Mileva and Others v. Bulgaria*, § 97, 아파트 블록에 생활방해를 유발하는 PC방의 불법적 운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협약 위반으로 판결). 또한 디스코클럽(*Martínez Martínez v. Spain*, §§ 47-54, 추가 참조 포함) 또는 술집(*Udovičić v. Croatia*, § 159)에서의 야간 소음, 혹은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는 심각하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민원에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Surugiu v. Romania*, §§ 67-69), 재판소는 제8조 위반으로 판결했다. *Yevgeniy Dmitriyev v. Russia*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거지 아래에 위치한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기타 생활방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충분한 조치가 제8조 위반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이 수행하는 공공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보호, 효과적인 법 집행(§§ 53-57) 또는 주거지에서의 과도한 교통소음을 감소시키는 것(*Deés v. Hungary*, §§ 21-24; 또한 *Grim kovskaya v. Ukraine*, § 72 참조)에서 얻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생활방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적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음 방지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Bor v. Hungary*, § 27).
471. 재판소는 문제된 생활방해의 실제 결과와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한다(*Zammit Maempel v. Malta*, § 72, 위반 없음). 예를 들어, 재판소는 적절한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Oluić v. Croatia*, § 51) 또는 문제된 생활방해로 인해 청구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Borysiewicz v. Poland*, 재봉 작업실에 관한 사건; *Frankowski v. Poland* (dec.)), 도로 교통에 관한 사건; *Chiş v. Romania* (dec.)), 술집 운영에 관한 사건), 제8조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국가가 생활방해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했던 경우에도 위반은 없다(*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 141-160; 또한, 적용가능한 일반원칙을 상기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 133-138 참조).

3. 오염물질 및 잠재적 위험 활동

472. 오염의 결과로 생긴 환경위험은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심각성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적절한 예로는 심각한 수질 오염이 있다(*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 110 및 113, 또한 *Tolić and Others v. Croatia* (dec.), §§ 91-96 참조). 근거없는 두려움이나 주장으로는 불충분하다(*Ivan Atanasov v. Bulgaria*, § 78; 또한 자동차 액세서리 상점 및 자동차 정비소 운영에 관한 사건인 *Furlepa v. Poland* (dec.); 양돈 농장에 관한 사건인 *Walkuska v. Poland* (dec.) 참조).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도 문제된 상황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Martínez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 48-50, 위반 없음).
473. 특히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공장의 위험한 작업절차(*Tătar v. Romania*)와 독성 물질의 배출(*Fadeyeva v. Russia*)에 불충분하게 대응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가의 태만으로 저수지 하류 지역의 주택가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제8조 위반으로 판결했다. 재판소는 *Giacomelli v. Italy* 사건에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점과 주거지역 근처에서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관련 기관이 주민 보호 및 통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Hardy and Maile v. the United Kingdom*). 국가기관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제8조에 따라 국가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대기에 배출하지만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장을 계속 유지하는 데서 얻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익과 주거의 보호에 대한 주민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Băcilă v. Romania*, §§ 66-72, 위반).

V. 통신

A. 총론

1. "통신" 개념의 범위

474. 제8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통신의 비밀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명 이 개념은 사적 또는 직업적 성격의 서신을 포함하고 (*Niemietz v. Germany*, § 32, 요지), 발신자 또는 수신자가 수형자인 경우도 포함하며(*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84; *Mehmet Nuri Özen and Others v. Turkey*, § 41), 세관원이 압수한 포장물 역시 포함한다(*X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또한 통신의 개념은 가족 간의 전화통화(*Margareta and Roger Andersson v. Sweden*, §72) 또는 다른 사람과의 전화통화(*Lüdi v. Switzerland*, §§ 38-39; *Klass and Others v. Germany*, §§ 21 및 41; *Malone v. the United Kingdom*, § 64), 개인 공간 또는 사업장에서의 전화통화(*Amann v. Switzerland* [GC], §44; *Halford v. the United Kingdom*, §§ 44-46; *Copland v. the United Kingdom*, § 41; *Kopp v. Switzerland*, § 50), 교도소에서의 전화통화(*Petrov v. Bulgaria*, § 51) 및 이러한 대화와 관련된 정보("날짜, 통화 시간,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의 "감청" 역시 포함한다(*P.G. and J.H. v. the United Kingdom*, § 42).

475. 기술 또한 제8조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히 스마트폰 데이터 또는 이러한 데이터의 복제본(*Saber v. Norway*, § 48), 전자 메시지(이메일)(*Copland v. the United Kingdom*, § 41; *Bărbulescu v. Romania* [GC], § 72), 인터넷 사용(*Copland v. the United Kingdom*, §§ 41-42) 및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Petri Sallinen and Others v. Finland*, § 71),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Iliya Stefanov v. Bulgaria*, § 42) 등을 비롯해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Wieser and Bicos Beteiligungen GmbH v. Austria*, § 45)가 포함된다.

476. 또한 더 예전 방식의 전자통신도 포함되며, 이러한 예로는 텔렉스(*Christie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호출기 메시지(*Taylor-Sabori v. the United Kingdom*), 사설 라디오 방송(*X and Y v. Belgium*, 위원회 결정)이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B.C.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제한"의 예

477. 통신의 내용과 형식은 무엇이 제한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문제와 무관하다(*A. v. France*, §§ 35-37; *Frérot v. France*, § 54). 예를 들어, 변호사가 메시지를 적은 후 접어서 의뢰인에게 건넨 쪽지를 펼쳐 읽는 것은 "제한"으로 본다(*Laurent v. France*, § 36). 제한이 발생하려면 사소함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de minimis principle*)은 적용되지 않는다. 편지를 개봉하기만 하면 제한이 발생하기에 충분하다(*Narinen v. Finland*, § 32; *Idalov v. Russia* [GC], § 197).

478. 모든 형태의 검열, 감청, 감시, 압수 및 기타 방해는 제8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의 우편물과 기타 연락은 "통신" 개념에 포함된다. 통신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의 행사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제한"에 해당한다 (*Golder v. the United Kingdom*, § 43).

479.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의 다른 형태에는 공권력의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다.

- 통신 검열(*Campbell v. the United Kingdom*, § 33), 사본 제작(*Foxley v. the United Kingdom*, § 30) 또는 특정 구절 삭제(*Pfeifer and Plankl v. Austria*, § 43)
-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 개인 또는 사업관련 대화의 감청 및 녹음(*Amann v. Switzerland* [GC], § 45), 예컨대, 전화 도청(*Malone v. the United Kingdom*, § 64 그리고 통화시간 기록에 대해서는 §§ 83-84; 또한, *P.G. and J.H. v. the United Kingdom*, § 42 참조)이 있는데, 제3자의 전화를 이용한 경우도 해당한다(*Lambert v. France*, § 21)
- 전화, 이메일 및 인터넷에서 감청한 데이터의 저장(*Copland v. the United Kingdom*, § 44). 전화요금청구서처럼 그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징계절차 또는 다른 절차들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지 않다(*ibid.*, § 43).

제한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과도 관련될 수 있다.

- 제3자에게 우편물 전달(파산관재인과 관련한 *Luordo v. Italy*, §§ 72 및 75; 정신병원에 구금된 정신질환자의 보호자와 관련하여 *Herczegfalvy v. Austria*, §§ 87-88 참조)
- 회사 소유인 것을 포함한 전자파일의 복사(*Bernh Larsen Holding AS and Others v. Norway*, § 106)
- 국가기관에 의한 금융자료의 복사 및 보관(*M.N. and Others v. San Marino*, § 52)
- 비밀감시(*Kennedy v. the United Kingdom*, §§ 122-124; *Roman Zakharov v. Russia* [GC] 및 이 사건에 인용된 참조). 비밀감시를 받고 있는 개인이 회사 이사회의 이사인 경우, 그것이 곧 회사의 제8조 권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Liblik and others v. Estonia*, § 112, 그러나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회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비밀감시허가가 없었더라도 청구인 회사 자체의 통신과 그 이사회 이사의 통신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480. 사인이 녹음했더라도 그 녹음에 국가기관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공권력"에 의한 제한에 해당한다(*A. v. France*, § 36; *Van Vondel v. the Netherlands*, § 49; *M.M. v. the Netherlands*, § 39, 검찰의 사전허가를 받은 사인의 녹음에 관한 사건).

2. 적극적 의무

481.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재판소가 국가에 적극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직장에서의 비직업적 성격의 통신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Bărbulescu v. Romania* [GC], §§ 113 및 115-120)
- 사적인 대화의 공개를 방지할 의무(*Craxi v. Italy (no 2)*, §§ 68-76)
- 스트라스부르 재판소와 서신을 주고받는 데 필요한 물품을 수령자에게 제공할 의무(*Cotlet v. Romania*, §§ 60-65; *Gagiu v. Romania*, §§ 91-92)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가 담긴 오디오카세트의 파기를 명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집행할 의무(*Chadimová v. the Czech Republic*, § 146)
-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의무(*Benediktsdóttir v. Iceland* (dec.))
-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청구인 서신에 대한 비밀침해를 조사할 의무(*Buturugă v. Romania* 사건에서, 청구인의 전 남편은 청구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포함한 전자계정을 부적절하게 살펴보고 사적인 대화, 문서, 사진을 복제함)

3. 일반적인 접근법

482. 제소와 관련된 상황은 통신의 관점에서와 함께 제8조가 보호하는 다른 영역들(주거,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의 관점에서도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Chadimová v. the Czech Republic*, § 143 및 이 사건에 인용된 참조).

483. 제8조제2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제8조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제한은 "법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하나 이상의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484. 제8조제2항의 "법" 개념은 커먼로와 "대륙법"을 모두 포함한다(*Kruslin v. France*, § 29). 재판소가 제한이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8조제2항의 다른 요건들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심사는 자제한다(*Messina v. Italy (no. 2)*, § 83; *Enea v. Italy* [GC], § 144; *Meimanis v. Latvia*, § 66).

485. 재판소는 이 영역의 문제를 규율함에 있어 회원국에 판단재량을 부여하지만, 회원국이 협약에 따라 판단재량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된다(*Szuluk v. the United Kingdom*, § 45 및 이 사건에 인용된 참조).

486. 재판소는 유럽교정시설규칙(European Prison Rules)을 비롯한 이 분야의 관련 국제 기준(international instrument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Nusret Kaya and Others v. Turkey*, §§ 26-28 및 55).

B. 재소자의 통신

1. 일반 원칙

487. 재소자의 통신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으며,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구금 요건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 통제 그 자체가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98; *Golder v. the United Kingdom*, § 45). 하지만, 재소자의 통신에 대한 통제는 협약 제8조제2항에 따라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가 전화 연락 등의 방식으로 외부와 연락하는 것에 대해 감시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적용되는 규정은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제한에 대해 재소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Doerga v. the Netherlands*, § 53).

488. 재소자가 재판소와 주고받는 서신의 개봉(*Demirtepe v. France*, § 26), 감시(*Kornakovs v. Latvia*, § 158) 및 압수(*Birznieks v. Latvia*, § 124)는 제8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재소자에게 재판소와 서신을 주고 받는 데 필요한 물품 제공을 거부한 조치 또한 제8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Cotleț v. Romania*, §65).

489. 이러한 통제의 허용범위를 결정할 때는 서신을 발송하고 수령하는 것이 재소자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Campbell v. the United Kingdom*, § 45). 통제 관행에 대한 규칙 없이 교정시설이 통제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소자의 모든 서신을 일반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Petrov v. Bulgaria*, § 44).

490. 제8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제한"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교정당국의 서신 검열(*McCallum v. the United Kingdom*, § 31) 또는 서신 미발송(*William Faulkner v. the United Kingdom*, § 11; *Mehmet Nuri Özen and Others v. Turkey*, § 42)
- 우편물에 대한 제한(*Campbell and Fell v. the United Kingdom*, § 110) 또는 파기(*Fazil Ahmet Tamer v. Turkey*, § 52 및 검열 제도에 관해서는 § 54)
- 서신 개봉(*Narinen v. Finland*, § 32) - 교도소의 우편업무운영의 결함(*Demirtepe v. France*, § 26), 서신의 발송을 위한 제출시 개봉상태에서의 전달(*Faulkner v. the United Kingdom* (dec.))을 포함
- 우편물 전달 지연(*Cotleț v. Romania*, § 34) 또는 교도소 재소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전달 거부(*Helander v. Finland* (dec.), § 48)

두 재소자 사이의 서신이나 통신 교환도 제8조의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Pfeifer and Plankl v. Austria*, § 43). 재소자에게 도서를 전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Ospina Vargas v. Italy*, § 44) 정치와 사회를 다루는 잡지와 신문을 받아보고 구독할 피구금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또한 제8조의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Mirgadirov v. Azerbaijan and Turkey*, §§ 115 및 118).

491. "제한"은 다음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

- 특정 구절 삭제(*Fazil Ahmet Tamer v. Turkey*, §§ 10 및 53; *Pfeifer and Plankl v. Austria*, § 47)
- 재소자의 소포와 우편물 수령 횟수에 대한 제한(*Aliiev v. Ukraine*, § 180)
- 재소자의 전화통화 녹음 및 저장(*Doerga v. the Netherlands*, § 50) 또는 재소자와 친척의 접견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녹음 및 저장(*Wisse v. France*, § 29).

28일 동안 우편물 발송 및 수신을 완전히 금지하는 징계(*McCallum v. the United Kingdom*, § 31) 및 재소자가 전화통화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Nusret Kaya and Others v. Turkey*, § 36) 또한 제8조의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492. 제한은 제8조제2항에 명시된 적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률은 공공기관이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해당 조치를 수행할 권한을 보유하는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한 표현으로 명시되어야 한다(*Lavents v. Latvia*, § 135). 피청구국은 국가가 재소자의 통신을 감시하는 데 근거로 삼은 법률조항을 재판소에 제시해야 한다(*Di Giovine v. Italy*, § 25).

493. 적법성 요건은 법률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법의 실질에 대한 요건이기도 하다. 즉 법률은 명확해야 하고, 그 영향에 대해 예측가능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Lebois v. Bulgaria*, §§ 66-67; *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88).

494. 법률이 재소자의 통신을 감시하는 기간이나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루지 않거나, 관련 영역에서 국가기관에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판단재량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법률은 협약과 합치하지 않는다(*Labita v. Italy* [GC], §§ 176 및 180-184; *Niedbala v. Poland*, §§ 81-82; *Lavents v. Latvia*, § 136).

495. "법에 따르지" 않은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을 어기고 수행한 검열(*Idalov v. Russia* [GC], § 201), 부적절한 포괄적 검열(*Enea v. Italy* [GC], § 143), 허가의 근거 조항이 없는 검열(*Demirtepe v. France*, § 27) 또는 적용되는 법령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검열(*Labita v. Italy* [GC], § 182)

-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문서에 근거한 검열(*Poltoratskiy v. Ukraine*, §§ 158-160)
- 청구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규정되지 않은 재소자의 전화통화 감시에 관한 규칙(*Doerga v. the Netherlands*, § 53).

496. 재판소는 또한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따라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에게 서신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조치가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Frérot v. France*, (§ 59).
497. 국내법에서 제한을 허용할 경우 교정당국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수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한 조치의 기간이나 그 정당성을 뒷받침할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검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분과 관할 법원만을 특정하고 있는 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Calogero Diana v. Italy*, §§ 32-33).
498. 재판소는 재소자의 통신 감시에 관한 국내 규정이 국가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주고 교도소장에 "재소자의 교정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통신은 모두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신 감시가 사법기관의 결정이나 이의절차도 없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Petra v. Romania*, § 37). 다만,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령이 통신 감시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명시해야 하지만(*Domenichini v. Italy*, § 32), 재판소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법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Calogero Diana v. Italy*, § 32).
499. 문제된 법령을 개정하는 조치는 그 개정된 법령을 시행하기 전에 발생한 위반에 대한 구제가 될 수 없다(*Enea v. Italy* [GC], § 147; *Argenti v. Italy*, § 38).
500. 또한 재소자의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Yefimenko v. Russia*, § 142). 이 "필요성" 요건은 수감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요건과 관련해 검토해야 한다. "무질서 또는 범죄방지"(*Kwiek v. Poland*, § 47; *Jankauskas v. Lithuania*, § 21)는 특히 일반인보다 재소자에 대해 더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 제한은 그 자유가 제한된 사람에 대한 제8조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Golder v. the United Kingdom*, § 45).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된 조치는 제8조제2항의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한 보호수단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감시 수준은 이러한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들이다(*Tsonyo Tsonev v. Bulgaria*, § 42).
501. 감시의 대상인 통신의 성격 또한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의 연락을 비롯한 특정한 유형의 통신은 특히 교정당국에 대한 제소와 관련된 경우, 비밀성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Yefimenko v. Russia*, § 144) 제한의 범위 및 성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통신 수단을 구별하지 않은 채 재소자의 모든 통신을 감시하는 것은 문제되는 이익들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Petrov v. Bulgaria*, § 44). 재소자가 재판을 기피하거나 증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재소자의 모든 서신을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무제한의 허가를 정당화할 수 없다(*Jankauskas v. Lithuania*, § 22).

502. *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재판소는 "교정당국을 비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서신을 차단한 조치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64, 91 및 99).
503. 뿐만 아니라, 서신 및 전화통화에 대한 제한을 검토할 때 보호처분을 받는 미성년자와 재소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관련 기관의 판단재량은 제한적이다(*D.L. v. Bulgaria*, §§ 104-109).
504. 특히 다른 방법을 통해 면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있는 경우 제8조는 재소자가 온라인 장치를 통해 외부와 연락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Ciupercescu v. Romania (no. 3)*, § 105, 또한 전화통화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Lebois v. Bulgaria*, § 61 참조).

2. 재소자 통신제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505. *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판결 이후, 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재소자의 통신제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인정했다. 재판소는 특히 다음과 같은 판결들을 내렸다.
- 재소자의 통신에 대한 감시는 교도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 (*Kepeklioglu v. Turkey*, § 31; *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101).
 - 자동적이고 일상적인 제한과 달리, 무질서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한 사람들과의 통신이나 법적 문제와 관계없는 통신에 대해서는 제한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Jankauskas v. Lithuania*, §§ 21-22; *Faulkner v. the United Kingdom* (dec.)).
 - 전화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수감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다른 재소자와 같이 사용할 필요성과 무질서 및 범죄방지 요구 조건 등에 따라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의 통제일 수 있다(*A.B. v. the Netherlands*, § 93; *Coşcodar v. Romania* (dec.), § 30).
 - 공식 서식에 작성하지 않은 서신 발송을 금지하는 것은 해당 서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Faulkner v. the United Kingdom* (dec.)).
 - 외국인 재소자가 무료번역 제안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두 통의 서신은 보낼 수 있었던 사건에서, 교정당국이 읽지 못하는 언어로 쓴 편지를 재소자의 친척에게 보내는 것을 금지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Chishti v. Portugal* (dec.)).
 - 포장물과 소포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관련되는 이익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한 교도소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하물 업무부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Aliiev v. Ukraine*, §§ 181-182).

- 교정당국을 통해 서신을 발송해야 하는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소자에게 발송된 소포의 전달을 보류한 경미한 징계는 비례성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Puzinas v. Lithuania (no. 2)*, § 34; 그러나 *Buglov v. Ukraine*, § 137 비교).
- 긴급하지 않은 서신 발송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기 위해 3주 동안 지연한 조치 역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104).

3. 서신

506. 제8조는 재소자가 서신작성에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재소자가 서신작성 시 교도소의 공식 서식을 사용하도록 한 요건은 해당 서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Cotleț v. Romania*, §65).
507. 제8조는 재소자가 보낸 모든 서신의 우편요금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 56-58). 하지만, 재원의 부족으로 재소자의 서신 발송이 심각히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사례별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들을 내렸다.
- 교정당국이 물품을 구매할 재원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스트라스부르 재판소와 서신을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우편 봉투, 우표, 편지지 등의 물품 제공을 거부한 것은 피청구국이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Cotleț v. Romania*, §§ 59 및 65).
 - 어떤 수단이나 지원도 없이 교정당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재소자의 경우, 교정당국은 재판소에게 서신을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물품, 특히 우표를 제공해야 한다(*Gagiu v. Romania*, §§ 91-92).
508. 통신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교정당국의 실수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교정당국이 실수를 분명히 인정하고 충분한 시정 조치(예를 들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채택)를 이행한 경우, 협약상의 쟁점이 제기되지 않는다(*Armstrong v. the United Kingdom (dec.)*; *Tsonyo Tsonev v. Bulgaria*, § 29).
509. 국가는 재소자가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과 피청구국이 재판소에서 서신의 실제 전달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경우, 피청구국 정부는 해당 우편물이 실제로 수취인에게 도착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소자에게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기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없다(*Messina v. Italy*, § 31).
510. 우편물의 발송과 수령의 책임이 있는 기관은 우편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소자에게 알려야 한다(*Grace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보고서, § 97).

4. 전화통화

511. 협약 제8조는 특히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재소자에게 전화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A.B. v. the Netherlands*, § 92; *Ciszewski v. Poland* (dec.)). 하지만, 국내법이 교도관의 감독하에 친척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재소자의 전화통화에 부과된 제한은 제8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의 행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Lebois v. Bulgaria*, § 61 및 64; *Nusret Kaya and Others v. Turkey*, § 36). 실무에서는, 재소자가 한정된 숫자의 전화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Bădulescu v. Portugal*, §§ 35 및 36, 하루 통화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에 대한 제한) 및 당국이 무질서와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Daniliuc v. Romania* (dec.)); 교도소에서 건 전화통화의 요금 청구에 관해서는 *Davison v. the United Kingdom* (dec.) 참조).
512. 재소자가 자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키우고 있는, 4년 동안 동거한 파트너에게 전화통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금지한 조치는 제8조와 제14조를 모두 위반하였다(*Petrov v. Bulgaria*, §54).
513. 보안수준이 강화된 교도소에서, 그 방침을 재소자들에게 미리 알린 후 재소자가 전화하려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보관하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와 추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재소자는 서신, 면회 등 다른 방법으로 친척과 연락할 수 있었음)(*Coşcodar v. Romania* (dec.), § 30, 또한, 일반 교도소와 관련된 사례는 *Ciupercescu v. Romania* (no. 3), §§ 114-117 참조).

5. 재소자와 변호사 간의 통신

514. 제8조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향후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통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Schönenberger and Durmaz v. Switzerland*, § 29).
515. 재소자와 변호사 간의 통신은 협약 제8조에 따라 "특권"을 인정받는다(*Campbell v. the United Kingdom*, § 48; *Piechowicz v. Poland*, § 239). 재소자와 변호사 간의 통신은 예컨대 구금기간 동안의 처우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위한 예비단계를 구성할 수 있고(*Ekinci and Akalin v. Turkey*, § 47), 방어권, 즉 제6조에 명시된 다른 협약상의 권리 행사의 준비와 관련이 있다(*Golder v. the United Kingdom*, § 45, 벌금; *S. v. Switzerland*, § 48; *Beuze v. Belgium* [GC], § 193).
516. 재판소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원칙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Helander v. Finland* (dec.), § 53). 또한, 또한, 유럽교정시설규칙에 대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안 Rec(2006) 2를 참조하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통신에 대한 체계적 감시는 이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Petrov v. Bulgaria*, § 43).
517. 그러나 재판소는 교정당국이 통상적인 탐지 수단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불법 동봉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재소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단, 서신은 개봉만 가능할 뿐 그 내용을 살펴봐서는 안 된다(*Campbell v. the United Kingdom*, § 48; *Erdem v. Germany*, § 61). 재소자가 변호사와 연락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은 재소자가 보는 앞에서 서신을 개봉하는 등 서신 열람을 방지하는 적절한 보장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Campbell v. the United Kingdom*, § 48).

518. 재소자가 변호사와 주고받는 우편물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서신의 내용이 교도소 보안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그 밖의 범죄성을 띤다는 점에서 교정당국이 "특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무엇이 "합리적인 이유"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객관적인 관찰자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소통 특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실이나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Campbell v. the United Kingdom*, § 48; *Petrov v. Bulgaria*, § 43; *Boris Popov v. Russia*, § 111). 이 특권에 대한 예외를 두려면 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수립해 두어야 한다(*Erdem v. Germany*, § 65).
519. 테러방지는 예외적인 사안이며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무질서 또는 범죄"를 방지하는 정당한 목적의 추구와 관련된다(*Erdem v. Germany*, §§ 60 및 66-69). *Erdem v. Germany* 사건에서 재판소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테러리스트의 위협, 안보상의 필요성, 시행 중인 절차적 보호장치, 피고인과 변호사가 다른 방법을 통해 연락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8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520. 교정당국이 교도소 환경과 특정 조치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서신을 검열한 것에 대해 제8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Ekinci and Akalin v. Turkey*, § 47).
521. 변호사가 구속된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는 서신을 검찰이 전달하지 않고 보류한 조치에 대해 제8조제2항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Schönenberger and Durmaz v. Switzerland*, §§ 28-29).
522. 협약 제34조(아래 '재판소와의 통신' 참조)는 재판소에 대한 소 제기 및 소송 참여와 관련하여 재소자와 변호사 사이의 통신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Shtukurov v. Russia*, § 140, 특히 전화통화와 통신을 금지한 것과 관련된 사안). 예를 들어, 재판소는 변호사가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과 관련해 재소자에게 보낸 서신의 검열에 관한 사건을 제34조에 따라 심사했다(*Mehmet Ali Ayhan and Others v. Turkey*, §§ 39-45).
523. 그러나 재판소는 재소자에 제공되어야 하는 통신 수단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국가가 일정한 판단재량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다른 효과적이고 충분한 수단을 통해 연락할 수 있는 경우, 교정당국이 변호사가 교도소의 이메일 주소로 보낸 이메일을 해당 재소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확인되었다(*Helander v. Finland* (dec.), § 54, 이 사건에서 국내법은 재소자와 변호사 사이가 우편, 전화 또는 접견을 통해 연락하도록 규정함). 재판소는 또한 보안 등의 이유로 또는 수사나 사법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모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인이 피구금자와 접촉하기 전 특정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Melnikov v. Russia*, § 96).

524. 변호사와의 통신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 구별할 이유가 없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변호사와의 통신은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성격을 지닌 사안에 관한 것이다. *Altay v. Turkey (no. 2)*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최초로 판결했다(§§ 49 및 51).

6. 재판소와의 통신

525. 재소자와 협약상의 기구들 사이의 통신은 제8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재판소는 협약상의 기구들이 재소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여러 사건에서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와 관련해 제한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Peers v. Greece*, § 81, *Valašinas v. Lithuania*, §§ 128-129; *Idalov v. Russia* [GC], §§ 197-201).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그 제한이 "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제8조제2항에 명시된 정당한 목적 중 하나를 추구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제8조 위반이 될 것이다(*Petra v. Romania*, § 36).

526. 청구인이 이송된 직후에 그 시설에서 매우 많은 서신들 가운데 하나만 "실수로 개봉"되었던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와 관련해 제한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교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청구인과 협약상 기구 간의 통신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Touroude v. France* (dec.); *Sayoud v. France* (dec.)).

527. 반면, 통신 감시가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행되며 사법기관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내려지고 그것을 다룰 수 없는 경우, 이는 "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Petra v. Romania*, § 37; *Kornakovs v. Latvia*, § 159).

528. 재소자와 재판소 간 통신에 관한 분쟁은 개별적 제소에 대한 권리의 "실효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협약 제34조에 따른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Shekhov v. Russia*, § 53 및 이 사건에 인용된 참조; *Yefimenko v. Russia*, § 164; *Mehmet Ali Ayhan and Others v. Turkey*, §§ 39-45).

529. 협약 회원국은 자국 기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소에 제소할 권리의 실효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청구인이나 잠재적 청구인이 재판소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할 때 국가의 만류나 방해 없이, 어떤 형태로도 제소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라는 압력을 받지 않고서 자유롭게 재판소와 연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480; *Cotleţ v. Romania*, § 69). 또한, 유럽인권재판소 소송 참여자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Agreement relating to Persons Participating in Proceedings), 유럽인권재판소로 제출된 개별적 제소 존중 및 보호에 대한 회원국 의무에 대한 결의 CM/Res(2010) 25 및 유럽교정시설규칙에 대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안 Rec(2006) 2을 참조하라.

530. 협약 제35조제1항의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가 종료된 후,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건만을 다룰 수 있다는) 6개월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체로 도움이 되는 청구인의 서신을 발송하는 것을 거부한 조치는 재판소에 대한 제소권의 실효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전형적인 예이다(*Kornakovs v. Latvia*, § 166). 협약 제34조가 적용되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예를 들어, *Dimcho Dimov v. Bulgaria*, §§ 94-102 대조).

- 단순한 수령 사실 확인(*Yefimenko v. Russia*, § 163)을 비롯해 재판소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교정당국의 검열(*Maksym v. Poland*, §§ 31-33 및 이 사건에 인용된 참조)
-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Shtukaturov v. Russia*, § 140; *Mehmet Ali Ayhan and Others v. Turkey*, §§ 39-45)
- 재판소에 서신을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재소자를 징벌한 것(*Kornakovs v. Latvia*, §§ 168-169)
- 압박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481)
- 교정당국이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복사본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Igors Dmitrijevs v. Latvia*, § 91 및 100; *Gagiu v. Romania*, § 95-96; *Moisejevs v. Latvia*, § 184)
- 일반적으로 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실효적으로 입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Vasiliy Ivashchenko v. Ukraine*, §§ 123 및 125)

531.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고, 친척이나 외부와 거의 접촉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교정당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재소자가 분명 취약하고 의존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Cotleţ v. Romania*, § 71; *Kornakovs v. Latvia*, § 164). 따라서, 교정당국은 청원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뿐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는, 교정시설의 관리를 받으므로 특히 취약하고 의존적인 상태이며(*Naydyon v. Ukraine*, § 64) 재판소 사무국이 신청서 제출 시 요구하는 문서를 자체적으로 구할 수 없는(*Vasiliy Ivashchenko v. Ukraine*, §§ 103-107) 재소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532. 재판소 규칙(Rules of Court) 제47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기관은 해당 요청에 따라 재판소가 청구인의 신청서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심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Naydyon v. Ukraine*, § 63 및 이 사건에 인용된 참조). 청구인이 재판소에 제소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협약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Iambor v. Romania (no. 1)*, § 216 및 *Ustyantsev v. Ukraine*, § 99 대조). 그러나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재판소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교정당국으로부터 모든 문서의 사본을 받을 필연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Chaykovskiy v. Ukraine*, §§ 94-97).
- 재판소에 보내는 우편물 발송이 지체된 모든 경우가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4~5일: *Yefimen-ko v. Russia*, §§ 131 및 159; 6일: *Shchebetov v. Russia*, § 84), 특히 청구인이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방해할 고의적 의도가 없는 경우 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우편물 발송이 약간 더 지연된 사례에 관해서는 *Valašinas v. Lithuania*, § 134 참조). 그러나 관련 기관은 과도한 지연 없이 서신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Sevastyanov v. Russia*, § 86).

- 재판소에 연락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Valašinas v. Lithuania*, § 136; *Michael Edward Cooke v. Austria*, § 48) 및 협약 제34조를 위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각성의 정도에서 최소한의 수준은 인정되어야 한다(*Komakovs v. Latvia*, § 173; *Moisejevs v. Latvia*, § 186).
- 청원권 침해에 관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국은 재판소에 타당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Klyakhin v. Russia*, §§ 120-121);
- 금지 품목을 교도소로 밀반입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송한 것처럼 우편물을 위조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사소한 위협에 해당한다(*Peers v. Greece*, § 84).

7. 언론인과의 통신

533. 통신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협약 제8조에 따라 보호받는다. 원칙적으로 재소자는 출판 목적의 자료를 발송할 수 있다(*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99; *Fazil Ahmet Tamer v. Turkey*, § 53). 실무에서 자료의 내용은 고려되는 한 요소이다.

534. 예를 들어, 구금 중인 수감자가 기자들에게 두 통의 서신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 명령은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이 서신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증인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 포함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법정에서 그 주장을 제기할 기회가 있었고 외부와 연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청구인이 언론에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 명령이 범죄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한다고 판결했다(*Jöcks v. Germany* (dec.)).

535. 보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발송되지 않았지만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서신의 경우, 서신에 명시된 교도소 직원의 권리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W. v. the United Kingdom*, § 52-57).

8. 재소자와 의사와의 통신

536. *Szuluk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재판소는 재소자와 의료기관과의 통신에 대한 감시 사안을 처음으로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교도소 의료 담당관은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청구인이 병원에서 자신의 치료를 담당할 전문의와 질병에 관해 주고받는 연락을 감시했다. 재판소는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재소자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재소자의 의료 관련 통신에 대한 감시가 교도소 의료 담당관에 국한되었지만, 통신을 존중받을 재소자의 권리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49-53).

9. 가까운 친척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통신

537. 교정당국이 재소자가 가까운 친척과 계속 연락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유럽교정시설규칙에 명시된 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Nusret Kaya and Others v. Turkey*, § 55).
538. 재소자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Coşcodar v. Romania* (dec.); *Baybaşın v. the Netherlands*,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의 구금에 관한 사건).
539. 재판소는 재소자의 통신 중 범죄자나 또는 위험한 사람과의 통신과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관한 통신을 구별한다(*Čiapas v. Lithuania*, § 25). 그러나 가까운 친척이 중범죄로 기소된 재소자에게 보낸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범죄를 방지하고 진행 중인 재판이 적절히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Kwiek v. Poland*, § 48).
540.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에 수감된 재소자의 경우, 하나 이상의 언어로 가까운 친척과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면, 탈옥위험 방지와 같은 특별한 보안상의 이유로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친척과 연락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Baybaşın v. the Netherlands* (dec.)).
541. 하지만, 재판소는 가족끼리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로 친척과 전화하고자 하는 재소자가 해당 가족이 정말로 공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예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Nusret Kaya and Others v. Turkey*, §§ 59-60). 재판소는 또한 모국어로 쓴 사적인 서신을 재소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번역하여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한 조치가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Mehmet Nuri Özen and Others v. Turkey*, § 60).
542. 재소자가 가족에게 보낸 서신(또는 *Pfeifer and Plankl v. Austria*, § 47 사건과 같이 한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로 보낸 사적인 서신)은 폭력행사에 대한 위협이 없는 한(*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65 및 103), 단순히 교도소 직원에 대한 비판이나 부적절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열하고 차단해서는 안 된다(*Vlasov v. Russia*, § 138).

10. 재소자와 기타 수신인 간의 통신

543. 재판소는 특히 *Niedbala v. Poland* 사건에서 재소자와 기타 수신인 간의 통신을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옴부즈맨(Ombudsman)과의 통신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재소자의 서신을 자동으로 검열하도록 허용한 국내법이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81). 마찬가지로, 국가기관과 비정부기구에 대한 서신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모든 통신을 일률적이고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관행은 제8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Jankauskas v. Lithuania*, § 22; 불가리아 헬싱키 위원회에 발송된 서신에 관해서는 *Dimcho Dimov v. Bulgaria*, § 90 참조).

C. 변호사의 통신

544.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통신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협약 제8조에 따라 보호받으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경우 보호수준이 더욱 강화된다(*Michaud v. France*, §§ 117-119). 변호사가 민주사회에서 소송 당사자를 변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처럼 강력한 보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차단된 문서에 적힌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Laurent v. France*, § 47). 직무상 비밀유지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관계의 기초"를 이루며(*ibid.*),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저해할 위험은 사법의 적절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협약 제6조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Niemietz v. Germany*, § 37; *Wieser and Bicos Beteiligungen GmbH v. Austria*, § 65). 직무상 비밀유지 원칙은 "범죄로 기소된" 형사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가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간접적이긴 하지만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Michaud v. France*, § 118).
545. *Kruglov and Others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개업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의무 보호 사안을 심사한 후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법정에서 의뢰인 소송당사자를 대리하는 업무를 포함해 거의 제한 없이, 직업적으로 때로는 독자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 전반에 관해 특별한 보호조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이러한 법적 공백은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37).
546. 예를 들어, 재판소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지 않은 것(*Schönenberger and Durmaz v. Switzerland*)과 법률회사에 대한 전화 도청(*Kopp v. Switzerland*)이 협약 제8조와 양립할 수 있는지 심사했다.
547. "통신"은 폭넓게 해석되는 용어이다(예를 들어,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률회사 의뢰인들의 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업무 연락과 관련하여 *Klaus Müller v. Germany*, §§ 37-41 참조). 여기에는 변호사의 서류 파일(*Niemietz v. Germany*, §§32-33, *Roemen and Schmit v. Luxembourg*, § 65),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Petri Sallinen and Others v. Finland*, § 71), 전자 데이터(*Wieser and Bicos Beteiligungen GmbH v. Austria*, §§ 66-68; *Robathin v. Austria*, § 39), USB(*Kırdök and Others v. Turkey*, § 32), 컴퓨터 파일 및 이메일 계정(*Vinci Construction and GTM Génie Civil et Services v. France*, § 69), 변호사가 메시지를 적은 후 접어서 의뢰인에게 건넨 쪽지(*Laurent v. France*, § 36) 등이 포함된다. 통신 개념은 또한 청구인의 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청구인과 변호사 간의 통신도 포함한다(*Saber v. Norway*, § 52; 또한, *Versini-Campinchi and Crasnianski v. France* 참조).
548. 데이터 암호 해독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청구인의 법률회사에서 압수한 변호사

업무 관련 데이터의 사본을 단순히 보유한 것만으로도 제한에 해당한다(*Kirdök and Others v. Turkey*, § 33 및 36-37).

549.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은 변호사, 의뢰인, 사법의 적절한 운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는 특권은 아니다(*Michaud v. France*, §§ 123 및 128-129). 미쇼 대 프랑스 사건에서 재판소는 변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의혹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위반 사실 없음). *Versini-Campinchi and Crasnianski v. France* 사건에서 재판소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대화를 감청한 후 변호사의 범죄 행위를 밝혀냈던 전화 도청 사안에 대해 검토했다. 재판소는 특정 상황에서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79-80). *Klaus Müller v. Germany*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에 따라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특권의 범위에 대해 검토했다. 재판소는 의뢰인이 비밀유지의무 포기 각서를 통해 해당 의무를 면제할 경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을 권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67-73).
550. 변호사가 범죄 관련 의혹을 신고하도록 한 법령은 의뢰인과의 직무상 연락을 존중받을 변호사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에 해당한다(*Michaud v. France*, § 92).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사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증언할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조치는 제한에 해당한다(*Klaus Müller v. Germany*, §§ 40-41). 변호사가 소송의 당사자인 상황에서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Robathin v. Austria*; *Sérvulo & Associados - Sociedade de Advogados, RL and Others v. Portugal*).
551. 제3자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Kruglov and Others v. Russia*, §§ 125-129; *Kirdök and Others v. Turkey*, §§ 52-58; *Niemietz v. Germany*, § 37).
552. 변호사와의 "통신"에 대한 제한은 정당한 근거가 없을 경우 제8조를 위반하게 된다. 변호사와의 통신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Klaus Müller v. Germany*, §§ 48-51, 특히 *Robathin v. Austria* 사건을 언급한 부분에 관해서는 §§ 40-41; 또한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의 보호와 관련해 법 체계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는 *Saber v. Norway*, § 57 참조), 제8조제2항에 명시된 정당한 목적 중 하나를 추구해야 하며(*Tamosius v. the United Kingdom* (dec.); *Michaud v. France*, §§ 99 및 131),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의미하는 필요성의 개념은 강력한 사회적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그 제한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함을 의미한다(*ibid.*, § 120). 변호사나 법률회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특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재판소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정보의 비밀성과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을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했다(*Michaud v. France*, §§ 117-119, 130).

553. 재판소는 도청이 변호사의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에 해당하며, 특히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히 엄밀하게 명시된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pp v. Switzerland*, §§ 73-75). *Kopp v. Switzerland* 사건에서 재판소는 첫째, 법률에서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과 변호사 업무 이외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과, 둘째, 도청이 독립된 판사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또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와 관련하여, *Petri Sallinen and Others v. Finland*, § 92 참조). 뿐만 아니라, 국내법에는 관련 기관이 용의자의 전화를 도청할 때 용의자와 변호사와의 대화를 우연히 감청했을 경우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또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Dudchenko v. Russia*, §§ 109-110).
554. 무엇보다도, 입법과 실무는 권한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수단을 수립해야 한다(효과적인 보호수단의 요점을 반복해서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Kruglov and Others v. Russia*, §§ 125-132; *Iliya Stefanov v. Bulgaria*, § 38 참조). 재판소가 고려한 요소로는 합리적인 혐의를 바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 등이 있다(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관해서는 *Robathin v. Austria*, § 46 참조). 재판소는 수색과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다(*Kruglov and Others v. Russia*, § 125). 수색영장의 범위는 타당한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받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참관자 입회하에 수색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Wieser and Bicos Beteiligungen GmbH v. Austria*, § 57; *Tamosius v. the United Kingdom* (dec.); *Robathin v. Austria*, § 44). 뿐만 아니라, 영장의 집행과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ibid.*, § 51; *Iliya Stefanov v. Bulgaria*, § 44; *Wolland v. Norway*, §§ 67-73). 또한 재판소는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이 적용되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특별한 보호조치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수색이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와 수색 대상의 평판을 고려한다(*Kruglov and Others v. Russia*, § 125).
555. 구체적으로 특정된 문서가 수사와 관련이 없거나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 특권에 따라 보호받는 문서임에도 압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할 때, 판사는 "구체적인 비례성 심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Vinci Construction and GTM Génie Civil et Services v. France*, § 79; *Kirdök and Others v. Turkey*, § 51 및 § 57). 예를 들어, *Wolland v. Norway* 사건(위반 사실 없음)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집과 사무실에서 최초 수색이 있은 후 이를 뒤에 하드 디스크와 노트북을 돌려받은 경우 청구인은 수색이 진행되는 중에도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55-80; *Kirdök and Others v. Turkey*, §§ 55-58 비교, 이 사건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 특권에 따른 보호 대상 데이터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고, 압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도 않았으며, 법원이 타당한 이유 없이 압수된 데이터 사본의 반환 또는 파기 명령을 거부하였다).
556. 데이터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관련 절차상의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8조 위반이 발생한다(*Wieser and Bicos Beteiligungen GmbH v. Austria*, §§ 66-68; *Tamosius v. the United Kingdom* (dec.) 대조).

557. 영장에서 수색 관련 사항을 어느 정도로 엄밀히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매우 많은 판례가 수립되어 있다. 영장은 수사 활동이 불법적인지 혹은 권한을 초과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수색 목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록해야 한다. 수색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의 감독하에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이 적용되는 문서와 압수할 수 없는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Iliya Stefanov v. Bulgaria*, § 43). 직무상 비밀유지 및 사법의 적절한 운용에 대한 모든 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ibid.*)
558.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비판한 바 있다.
-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구로 작성되어 범죄수사에 "중요한" 문서를 결정함에 있어 무제한의 재량권을 검찰에 부여한 압수수색 영장(*Kruglov and Others v. Russia*, § 127, *Aleksanyan v. Russia*, § 216)
 - 합리적인 혐의를 근거로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용어로 작성된 압수수색 영장(*Robathin v. Austria*, § 52)
 - 경찰이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이 적용되는 자료를 비롯해 청구인의 컴퓨터 전체와 모든 플로피 디스크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장(*Iliya Stefanov v. Bulgaria*, §§ 41-42)
 - 청구인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소송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에 따라 보호받는 전자 데이터 압수를 허용하는 영장 및 사법기관이 해석하고 적용한 관련 법령에서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전자 데이터의 반환 또는 파기를 거부한 것(*Kirdök and Others v. Turkey*, §§ 52-58)
559. 판사가 비밀문서의 보호를 명령하는 것은 중요한 보호조치이다(*Tamosius v. the United Kingdom* (dec.)). 해당 법령이 변호사의 변호업무의 핵심인 내용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 또한 중요한 보호조치이다(*Michaud v. France*, §§ 126-129).
560. 여러 사건들에서 변호사의 통신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 사무실 수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다루어졌다('법률회사' 장 참조).
561.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피구금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은밀히 감시하는 행위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특히 그 관계를 특징짓는 대화 내용의 비밀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유념하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전화감청 사안에 대해 재판소가 확립한 원칙에 입각하여 검토해야 한다(*R.E. v. the United Kingdom*, § 131).
562. 공식적으로 기소되어 경찰의 호송을 받는 피고인이 변호사와 연락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불법적인 동봉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Laurent v. France*, §§ 44 및 46).

D. 범죄 관련 통신 감시

563. 이와 관련해서도 앞서 언급한 제8조제2항의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어야 한다(*Kruslin v. France*, § 26; *Huvig v. France*, § 25). 특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감시는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감시는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므로, 특히 엄밀히 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Huvig v. France*, § 32), 충분한 수준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는 법 체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ibid.*). (사용 가능한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규칙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누구나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Valenzuela Contreras v. Spain*, §§ 59 및 61). 충분히 명확한 규칙을 요구하는 이 요건은 감시가 허가를 받아 집행되는 상황 및 조건과 관련이 있다. 통신에 대한 비밀감시의 실행은 관련 당사자나 일반 대중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판사에게 부여된 법적 재량에 제한이 없다면 이러한 "법률"은 법치주의에 위반될 것이다(*Karabeyoğlu v. Turkey*, §§ 67-69 및 §§ 86-88, 추가 참조 포함). 따라서, 법률은 자의적인 제한으로부터 개인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29-230). 자의적으로 집행될 위험이 있다면, 그 법률은 적법성 요건과 양립할 수 없다(*Bykov v. Russia* [GC], §§ 78-79). 비밀감시의 이용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 관련 기관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그러한 침해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긴절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Dragojević v. Croatia*, §§ 94-98; 또한 비밀감시 권한의 정당한 근거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는 *Liblik and others v. Estonia*, §§ 132-143 참조).
564.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소는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장책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Karabeyoğlu v. Turkey*, §§ 101-103, § 106). 이에 대한 평가는 가능한 조치의 성격, 범위 및 기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해당 조치를 허가, 수행 및 감독하는 관할 기관, 국내법에서 제공하는 구제의 유형을 비롯한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32). 비밀감시 조치에 대한 심사와 감독은 감시를 명할 때, 수행 중일 때, 또는 종료 후의 세 단계에서 실시될 수 있다. 첫 두 단계의 경우, 비밀감시라는 본질과 논리상 감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감시조치에 대한 심사도 개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힘으로 실효적 구제를 추구하거나 심사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수립된 절차 그 자체로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적절하고 동등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33). 재판소는 국민에 대한 비밀감시를 명하는 권한은 민주적 제도를 보호하는 데 엄격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용인된다고 판결해 왔으므로, 절차적 보장은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절차적 보장의 존재와 필요한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회원국들은 일정 수준의 판단재량을 누린다. 그러나 이 판단재량은 입법 및 그것을 적용한 결정들 모두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통제를 받는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32).

565. 전화 도청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다(*Karabeyoğlu v. Turkey*, § 103). 재판소는 또한 비밀감시를 허가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관련 당사자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혐의가 있는지, 특히 감시 대상자가 범죄행위 또는 기타 비밀감시 조치를 실행할 만한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는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및 "감청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예컨대,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60; *Dragojević v. Croatia*, § 94). 이러한 검증은 비밀감시를 허가하는 결정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요건과 더불어, 관할 기관이 적절하고 타당한 고려 없이 되는대로, 또는 아무렇게나 감시조치를 명령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보호조치를 구성한다.
566.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에서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Kruslin v. France*, § 36; *Huvig v. France*, § 35; *Malone v. the United Kingdom*, § 79; *Valenzuela Contreras v. Spain*, §§ 60-61; *Prado Bugallo v. Spain*, § 30; *Matheron v. France*, § 43; *Dragojević v. Croatia*, § 101; *Šantare and Labazņikovs v. Latvia*, § 62; *Liblik and others v. Estonia*(형사소송절차 진행 중 비밀감시를 승인한 명령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내려졌는지에 대한 사후 검토 관련 사건), §§ 140-142 참조;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로는 *Karabeyoğlu v. Turkey*, §§ 104-110 참조.
567. 전화감청 대상자는 그 감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Marchiani v. France* (dec.)). 자신과의 대화를 도청한 것임에도 감청이 제3자의 전화에 실행되었다는 이유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Lambert v. France*, §§ 38-41; *Bosak and Others v. Croatia*, §§ 63 및 65 비교).
568. 재판소는 경찰이 한 아파트에서 외부로 걸린 발신 전화번호를 획득하기 위해 취한 법적 조치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했다고 판결했다(*P.G. and J.H. v. the United Kingdom*, §§ 42-51). 재판소는 용의자들이 대규모 마약 밀매 활동에 연루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주요 수사방법 중 하나였고, 이에 대해 "실효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Coban v. Spain* (dec.)).
569.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공의 안전 또는 무질서나 범죄방지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에서 전화감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전화감청은 경찰과 법원이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국가는 권한의 남용이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Dumitru Popescu v. Romania* (no. 2)).
570.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감청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판사의 통제 하에 수행되고, 권한의 남용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수립되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았다(*Aalmoes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Coban v. Spain* (dec.)). 재판소는 또한 국가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법령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해당 감청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경우 제8조 위반은 없었다고 판결했다(*İrfan Güzel v. Turkey*, § 88).

571. 그 밖에도, 국가는 법 집행 기관이 순전히 사적인 대화를 감청할 경우 해당 정보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Craxi v. Italy (no. 2)*, §§ 75 및 83, 위반 판결; *Man and Others v. Romania* (dec.), §§ 104-111 비교). *Drakšas v. Lithuania* 사건에서 재판소는 검찰이 한 정치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승인 하에 전화감청을 통해 녹음한 사적인 대화를 언론에 유출하고 이후 해당 대화가 방송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협약 위반으로 판결했다(§ 60). 그러나 개인적 대화가 아닌 전문적이고 정치적인 대화의 녹음을 헌법재판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공개한 것은 제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ibid.*, § 61).

E. 개인, 직원 및 기업의 통신

572. 통신을 존중할 권리는 사생활, 가족, 직업적 영역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여기에는 개인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 감시도 포함된다(*Buturugă v. Romania*, § 74).

573. *Margareta and Roger Andersson v. Sweden*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회복지 기관의 보호를 받는 자녀가 엄마와 서신과 전화를 통해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여 약 1년 반 동안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던 것에 대해 협약 위반으로 판결했다(§§ 95-97).

574. *Copland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의 전화통화, 이메일 및 인터넷 사용을 감시한 것에 대해 협약 위반으로 판결했다(§§ 48-49). 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직장 감시와 관련된 *Halford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의 전화통화 감청을 규제하는 법적 수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위반으로 판결했다(§ 51).

575. 민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통신"의 개념에 포함된다(*Bărbulescu v. Romania* [GC], § 74). *Bărbulescu v. Romania* 사건에서 고용주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적인 대화를 위해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직원을 고발했다. 재판소는 고용주의 지침이 직장 내 사적인 사회생활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존중받을 권리는 계속 존재한다(*Bărbulescu v. Romania* [GC], § 80).

576. 회원국은 고용주가 직장 내에서의 비직업적 성격의 전자통신이나 기타 의사소통을 규제할 수 있는 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법 체계와 관련하여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재량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은 해당 감시 방법의 범위와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주가 통신 및 기타 의사소통을 감시하는 방법을 정할 때 "남용방지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보장장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는 절차적 보장과 비례성원칙 준수가 필수적이다(*Bărbulescu v. Romania* [GC], §§ 119-120).

577.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가가 이러한 적극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요소를 자세히 열거했다. 이러한 요소로는, (i) 고용주가 통신과 기타 의사소통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과 감시조치의 시행에 대해 직원이 사전에 명확히 통지받았는지 여부, (ii) 고용주의 감시 범위와 직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정도(양과 내용), (iii) 고용주가 의사소통을 감시하고 실제 내용을 열람한 조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여부, (iv) 권리를 덜 침해하는 방법과 조치에 기반한 감시 체계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v) 감시 결과가 감시대상 직원에 미친 영향의 심각성 및 감시 결과의 사용 여부, (vi) 특히 의사소통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전통지를 포함해 해당 직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에 대해 감시를 받은 직원은 "적어도 실질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기준이 어떻게 준수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의 조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관할 사법기관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Bărbulescu v. Romania* [GC], §§ 121-122).
578. 재판소의 판례에는 기업파산과 관련된 통신감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Foxley v. the United Kingdom*, §§ 30 및 43). 재판소는 *Luordo v. Italy* 사건에서 통신을 존중받을 파산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파산소송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 제8조 위반으로 판결했다(§ 78). 하지만, 파산자의 통신을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또한, *Narinen v. Finland* 참조).
579. 기업의 통신에 대한 문제는 사업장에 대한 수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사업장' 부분 참조). 예를 들어, *Bernh Larsen Holding AS and Others v. Norway* 사건에서 재판소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한 컴퓨터 서버의 모든 데이터 사본을 넘기도록 명령한 결정에 대해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관련 법령이 미리 사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소는 남용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수립되어 있는 점, 회사와 직원의 이익, 효과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공익을 고려했다(§§ 172-175). 그러나 재판소는 경쟁법 규정에 반하는 불법적인 가격담합의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를 찾기 위해 사업장을 조사한 것과 관련된 *DELTA PEKÁRNÝ a.s. v. the Czech Republic* 사건에서는 협약 위반으로 판결했다. 재판소는 사전에 사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해당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사후적 심사가 수행되지 않은 점, 수집된 데이터의 파기 가능성을 규율하는 규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위반 이유로 언급했다(§§ 92-93).

F. 시민과 단체에 대한 특별 비밀감시

580. 재판소는 비밀감시에 대한 최초의 판례인 *Klass and Others v. Germany* (§ 48) 사건에서 특히, "민주사회는 오늘날 고도로 정교한 형태의 스파이 행위와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관할구역 내 체제 전복적 행위에 대해 비밀감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서신, 우편물 및 통신에 대한 비밀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일부 법령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안보 또는 무질서나 범죄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국가의 특징을 갖는, 시민에 대한 비밀감시 권한은 민주제도를 보호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협약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ibid.*, § 42; *Szabó and Vissy v. Hungary*, §§ 72-73). 스자보 및 비시 대 헝가리 사건에서 재판소는 "절대적 필요성(strict necessity)" 개념을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비밀감시 조치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민주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개별 활동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비밀감시 조치는 국가기관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 73).

581. 원칙적으로 재판소는 민중소송(*actio popularis*)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3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개인은 해당 조치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밀감시 조치의 특징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감독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재판소는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165). *Roman Zakharov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실제로 자신에 대해 비밀감시 조치가 실시되었음을 입증하지 않고도 제8조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밝혔다. 재판소는 *Kennedy v. the United Kingdom* 사건의 접근법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소는 감시조치의 비밀성으로 인해 사실상 이익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감시조치가 국가의 사법기관과 재판소의 감독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케네디 판례의 접근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밀감시 조치를 허용하는 법령의 적용 대상에 속하면(법령에 명시된 감시대상 집단에 속하거나 법령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그리고 비밀감시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면, 협약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청구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비밀감시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비밀감시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를 허용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더라도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171-172). 또한, "피해자" 지위에 관해서는 *Szabó and Vissy v. Hungary* 사건(§ 32-39)과 이 사건에 인용된 참고 판례를 참조하라.

582. *Roman Zakharov v. Russia* [GC] 판결에는 비밀감시 제도의 "적법성"("법의 실질")과 "필요성"(자의적 운용 및 남용 위험을 방지하는 보호조치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관한 재판소의 제8조 관련 판례가 포괄적으로 약술되어 있다(§§ 227-303). 대재판부가 심리한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비밀감시를 규율하는 국내법 체계의 결함은 이유로 제8조 위반 판결이 내려졌다(§§ 302-303).

583. 개인에 대한 비밀감시는 해당 감시가 "법에 따라" 수행되었고, 제8조제2항에 언급된 "정당한 목적"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추구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8조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Szabó and Vissy v. Hungary*, § 54; *Kennedy v. the United Kingdom*, § 130).

584. 첫 번째 요건은 감시조치가 국내법에 어느 정도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법령은 법의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해당 법령은 관련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영향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Kennedy v. the United Kingdom*, § 151; *Roman Zakharov v. Russia* [GC], § 229). 통신감청 상황에서의 "예측가능성"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비밀감시 조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측가능성은 관련 기관이 통신을 감청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시점을 개인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Weber and Saravia v. Germany*, § 93). 하지만, 자의적인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통화의 감청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한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은 공공기관이 비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 및 조건을 명확한 표현으로 명시하여 시민이 이러한 상황과 조건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29; *Association for European Integration and Human Rights and Ekimdzhiiev v. Bulgaria*, § 75). 뿐만 아니라, 법령은 자의적인 제한으로부터 개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나 판사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Roman Zakharov v. Russia*, § 230; *Malone v. the United Kingdom*, § 68; *Huvig v. France*, § 29; *Weber and Saravia v. Germany* (dec.), § 94).

585. 비밀감시 조치에 관한 법령은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의 성격과 전화감청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범주, 감시조치 기간에 대한 제한, 수집된 데이터의 검토, 사용, 저장 시 따라야 할 절차,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경우 적용되는 주의사항, 기록을 삭제하거나 파기해야 하는 상황 등을 규정해야 한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31 및 238-301; *Amann v. Switzerland* [GC], §§ 56-58).

586. 마지막으로, 비밀감시 조치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기관은 일정한 판단재량을 누린다. 그러나 이 판단재량은 법령 및 그 적용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 유럽연합의 통제 대상에 속한다. 재판소는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장책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Klass and Others v. Germany*, § 50).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가능한 조치의 성격, 범위 및 기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해당 조치를 허가, 수행 및 감독하는 관할기관, 국내법에서 제공하는 구제의 유형을 비롯한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제한 조치에 대한 명령과 이행을 감독하는 절차는 해당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32 및 이 사건에 인용된 참조).

587. 비밀감시 조치에 대한 심사와 감독은 감시를 명할 때, 수행 중일 때, 또는 종료 후의 세 단계에서 실시될 수 있다(*ibid.*, §§ 233-234 및 이 사건에 인용된 참조). 처음 두 단계의 경우, 기존 절차는 그 자체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하고 대등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권한남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감독 권한을 판사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적 통제가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가장 잘 보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감시 종료 후)와 관련하여, 감시조치가 끝난 후 감시 대상 개인에 통지하는 문제는 법원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감시 권한남용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개인이 자신도 모르게 시행된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은 후 소급해서 해당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나, 또는 해당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통신이 감청당하고 있거나 감청당했다고 의심하는 개인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원칙적으로 거의 없다(*ibid.*, §§ 233-234).

588. 비밀감시를 허용하는 법령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한의 적법성은 "필요성" 심사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필요성" 요건을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Kennedy v. the United Kingdom*, § 155; *Kvasnica v. Slovakia*, § 84). 이 점에서 "법의 실질"은 국내법이 접근가능하고 예측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와 보장을 제공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비밀감시 조치가 적용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36). *Roman Zakharov v. Russia*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 국내법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으며 제8조제2항의 목적, 즉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보호, 범죄방지 및 국가의 경제적 복리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내법의 접근가능성, 비밀감시 조치의 범위와 기간, 감청 데이터의 저장, 접근, 검토, 사용, 전달 및 파기를 위해 따라야 할 절차, 승인 절차, 감시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방안, 통지 방법,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 또한 평가해야 한다(*ibid.*, §§ 238-301).

589. 비밀감시 조치의 적용범위: 국민은 공권력이 비밀감시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고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의 성격과 전화감청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범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43 및 247). 범죄의 성격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예측가능성 요건에 따라 감청이 수행될 수 있는 범죄를 죄목별로 완전히 규정할 필요는 없다. 단, 해당 범죄의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Kennedy v. the United Kingdom*, § 159). 범죄혐의는 없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감청 조치는 협약 제8조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Greuter v. the Netherlands* (dec.),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한 후 판사가 감청에 대해 내린 명령과 감독에 관한 사건). 하지만, 감청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범주에 용의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모든 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석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감청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범주가 충분하고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것이다(*Iordachi and Others v. Moldova*, § 44,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재판소에서 소송당사자를 변호하는 전문적인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므로 감청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함; 또한, *Roman Zakharov v. Russia* [GC], § 245; *Szabó and Vissy v. Hungary*, §§ 67 및 73 참조). *Amann v. Switzerland*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관련 법령이 "우발적" 감시를 받은 개인의 사례에 관해 상세히 규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화대화를 감청한 후 파일을 열고 저장한 조치에 대해 협약 위반으로 판결했다(§ 61).

590. 감시 기간: 통신제한조치 영장의 효력종료시점, 영장이 연장될 수 있는 조건, 영장이 취소되어야 하는 상황 등과 같이 국내법에 적절한 보호조치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전체 기간에 대한 문제는 영장을 발부하고 연장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재량에 맡길 수 있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50; *Kennedy v. the United Kingdom*, § 161). *lordachi and Others v. Moldova* 사건에서는 감시 조치의 허가를 위한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몰도바의 법령이 협약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45).

591. 감청 데이터의 저장, 접근, 검토, 사용, 전달 및 파기를 위해 따라야 할 절차(*Roman Zakharov v. Russia* [GC], §§ 253-256): 분명히 무관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자동으로 저장하는 것은 제8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다(*ibid.*, § 255). *Libert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영국 국방부는 영장을 발부받아 시민단체의 외부 통신을 감청했다. 재판소는 특히 감청한 자료의 검토대상선정, 공유, 저장 및 파기 절차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8조 위반으로 판결했다(§ 69).
592. 허가절차: 비밀감시가 아무렇게나, 불법적으로 또는 적절하고 타당한 고려없이 내려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허가절차가 있는지 평가하는 경우, 특히 감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 심사의 범위, 허가의 내용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57-267; 또한 *Szabó and Vissy v. Hungary*, § 73 및 §§ 75-77, 법무부장관에 의해 사전에 사법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감시조치와 긴급조치 문제에 관해서는 § 80-81 참조). 정보기관과 경찰이 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대상에게 통신제한허가 문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시민의 통신을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에서는, 자의적 운용과 남용을 방지하는 보호조치가 더 강력히 요구될 것이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70).
593. 비밀감시의 집행에 대한 통제: 감시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기록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통제기관이 그 감시활동의 세부사항을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Kennedy v. the United Kingdom*, § 165; *Roman Zakharov v. Russia* [GC], §§ 275-285). 원칙적으로 통제권한을 판사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제기관이 감시수행 기관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능력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비사법기구에 의한 통제도 협약과 양립할 수 있다(*ibid.*, § 272; *Klass and Others v. Germany*, § 56). 적발된 위반사항에 관하여 통제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역시 통제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ibid.*, § 53, G10위원회가 불법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시기관의 즉각적인 감시중단과 관련된 사건; *Kennedy v. the United Kingdom*, § 168, 통신감청감독관(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Commissioner)이 해당 감청의 불법성을 인정한 즉시 모든 감청 자료를 파기할 의무와 관련된 사건; *Roman Zakharov v. Russia* [GC], § 282).
594. 통신제한조치 및 그에 대한 이용가능한 구제수단에 대한 통지(*Roman Zakharov v. Russia* [GC], §§ 286-301): 감시조치의 비밀성은 관련 당사자가 감시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감시사실을 통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감시조치가 중단된 경우 곧바로 비밀감시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것을 자체로 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감시조치가 종료한 후에는 "그 제한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빨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87-290; *Cevat Özel v. Turkey*, §§ 34-37). 감시대상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국내 구제수단의 실효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 286).

595. 테러방지를 위한 비밀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의 전략적 감시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Weber and Saravia v. Germany*, 추가 참조 포함). 재판소는 정부가 일촉즉발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통신감시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테러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은 감시조치의 명령과 실행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보호조치와 가능한 구제수단을 명시해야 한다(*Szabó and Vissy v. Hungary*, §§ 64, 68 및 78-81). 재판소는 극히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법기관의 사전허가 요건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비사법기관이 미리 승인한 모든 조치들은 사후적인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81).
596. *Kennedy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는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오심방지운동을 벌이던 청구인이 감시조치의 희생자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장수단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한, 시민을 상대로 비밀감시를 명령할 권한은 제8조에 따라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97. *Association for European Integration and Human Rights and Ekimdzhiev v. Bulgaria* 사건에서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 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을 대리한 비영리단체와 변호사가 자신들에 대한 감시조치가 아무런 통지없이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관련 국내법이 비밀감시제도에 내재한 남용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장수단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제8조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598. 반정부 시위의 참가자와 희생자를 보호하는 협회에 관한 *Association "21 December 1989" and Others v. Roman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171-175; *Kennedy v. the United Kingdom*, § 169 대조, 위반 사실 없음).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참조는 유럽인권재판소 재판부가 본안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단 중 이 개정판 발간 당시 협약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최종확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 목록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에는 "(a) 당사자가 사건을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경우, (b) 당사자가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panel)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재판부의 패널이 회부 요청을 수락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후 대재판부의 판단이 최종판단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의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그리고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또한 30개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된 많은 주요 판례의 번역본과 제3자가 작성한 약 100개의 온라인 판례집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A—

A v. Croatia, no. 55164/08, 14 October 2010
A v. France, 23 November 1993, Series A no. 277-B
A and B v. Croatia, no. 7144/15, 20 June 2019
A, B and C v. Latvia, no. 30808/11, 31 March 2016
A, B and C v. Ireland [GC], no. 25579/05, ECHR 2010
A.B. v. the Netherlands, no. 37328/97, 29 January 2002
A.B. and Others v. France, no. 11593/12, 12 July 2016
A.D. and O.D. v. the United Kingdom, no. 28680/06, 16 March 2010
A.D.T. v. the United Kingdom, no. 35765/97, ECHR 2000I-X
A.H. and Others v. Russia, nos. 6033/13 and 15 others, 17 January 2017
A.H. Khan v. the United Kingdom, no. 6222/10, 20 December 2011
A.K. v. Latvia, no. 33011/08, 24 June 2014
A.K. and L. v. Croatia, no. 37956/11, 8 January 2013
A.M. and A.K.v. Hungary (dec.), nos. 21320/15 and 35837/15, 4 April 2017
A.M. and Others v. France, no. 24587/12, 12 July 2016

[A.M.M. v. Romania](#), no. 2151/10, 14 February 2012
[A.M.V. v. Finland](#), no. 53251/13, 23 March 2017
[A.N.v. Lithuania](#), no. 17280/08, 31 May 2016
[A.P., Garçon and Nicot v. France](#), nos. 79885/12 and 2 others, ECHR 2017 (extracts)
[A.S. v. Switzerland](#), no. 39350/13, 30 June 2015
[Aalmoes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no. 16269/02, 25 November 2004
[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28 May 1985, Series A no. 94
[Abdyusheva and Others v. Russia](#), nos. 58502/11 and 2 others, 26 November 2019

—B—

[B. v. France](#), 25 March 1992, Series A no. 232C
[B.B. v. France](#), no. 5335/06, 17 December 2009
[B. v. Moldova](#), no. 61382/09, 16 July 2013
[B. v. Romania \(no. 2\)](#), no. 1285/03, 19 February 2013
[B. v. the United Kingdom](#), 8 July 1987, Series A no. 121
[B. A. C. v. Greece](#), no. 11981/15, 13 October 2016
[B. B. and F.B. v. Germany](#), nos. 18734/09 and 9424/11, 14 March 2013
[B. C. v. Switzerland](#), no. 21353/93, Commission decision of 27 February 1995
[B.G. and Others v. France](#), no. 63141/13, 10 September 2020
[Bădulescu v. Portugal](#), no. 33729/18, 20 October 2020
[Babiarz v. Poland](#), no. 1955/10, 10 January 2017
[Babylonová v. Slovakia](#), no. 69146/01, ECHR 2006-VIII
[Băcilă v. Romania](#), no. 19234/04, 30 March 2010
[Bagdonavicius and Others v. Russia](#), no. 19841/06, 11 October 2016
[Bagirov v. Azerbaijan](#), nos. 81024/12 and 28198/15, 25 June 2020
[Bagiyeva v. Ukraine](#), no. 41085/05, 28 April 2016
[Bah v. the United Kingdom](#), no. 56328/07, ECHR 2011
[Balaskas v. Greece](#), no. 73087/17, 5 November 2020
[Bărbulescu v. Romania](#) [GC], no. 61496/08, ECHR 2017 (extracts)
[Bosak and Others v. Croatia](#), nos. 40429/14 and 3 others, 6 June 2019
[Baybaşın v. the Netherlands](#) (dec.), no. 13600/02, 6 October 2005
[Baytüre and Others v. Turkey](#) (dec.), no. 3270/09, 12 March 2013
[Beard v. the United Kingdom](#) [GC], no. 24882/94, 18 January 2001
[Beck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s. 48535/99 and 2 others, 22 October 2002
[Bédat v. Switzerland](#) [GC], no. 56925/08, ECHR 2016
[Beghal v. the United Kingdom](#), no. 4755/16, 28 February 2019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no. 41288/15, 14 January 2020
[Benhebba v. France](#), no. 53441/99, 10 July 2003
[Benedik v. Slovenia](#), no. 62357/14, 24 April 2018
[Benediktsdóttir v. Iceland](#) (dec.), no. 38079/06, 16 June 2009
[Benes v. Austria](#), no. 18643/91, Commission decision of 6 January 1992, DR 72
[Bensaid v. the United Kingdom](#), no. 44599/98, ECHR 2001-I
[Berger-Krall and Others v. Slovenia](#), no. 14717/04, 12 June 2014
[Berisha v. Switzerland](#), no. 948/12, 30 July 2013
[Bernh Larsen Holding AS and Others v. Norway](#), no. 24117/08, 14 March 2013
[Berrehab v. the Netherlands](#), 21 June 1988, Series A no. 138

Beuze v. Belgium [GC], no. 71409/10, 9 November 2018
Bevacqua and S. v. Bulgaria, no. 71127/01, 12 June 2008
Bianchi v. Switzerland, no. 7548/04, 22 June 2006
Biao v. Denmark [GC], no. 38590/10, ECHR 2016
Biao v. Denmark, no. 38590/10, 25 March 2014
Bigaeva v. Greece, no. 26713/05, 28 May 2009
Biržietis v. Lithuania, no. 49304/09, 14 June 2016
Birznieks v. Latvia, no. 65025/01, 31 May 2011
Bistieva and Others v. Poland, no. 75157/14, 10 April 2018
Bjedov v. Croatia, no. 42150/09, 29 May 2012
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no. 21980/93, ECHR 1999-III
Blaga v. Romania, no. 54443/10, 1 July 2014
Blyudik v. Russia, no. 46401/08, 25 June 2019
Boffa and Others v. San Marino, no. 26536/95, Commission decision of 15 January 1998, DR 27
Bohlen v. Germany, no. 53495/09, 19 February 2015
Boljević v. Serbia, no. 47443/14, 16 June 2020
Bondavalli v. Italy, no. 35532/12, 17 November 2015
Bor v. Hungary, no. 50474/08, 18 June 2013
Boris Popov v. Russia, no. 23284/04, 28 October 2010
Borysiewicz v. Poland, no. 71146/01, 1 July 2008
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30 June 2005
Bostan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52507/09, 8 December 2020
Botta v. Italy, 24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Boughanemi v. France, 24 April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I
Boujlifa v. France, 21 Octo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
Boyle v. the United Kingdom, 28 February 1994, Series A no. 282-B
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27 April 1988, Series A no. 131
Brândușe v. Romania, no. 6586/03, 7 April 2009
Brecknell v. the United Kingdom, no. 32457/04, 27 November 2007
Bremner v. Turkey, no. 37428/06, 13 October 2015
Breyer v. Germany, no. 50001/12, 30 January 2020
Brežec v. Croatia, no. 7177/10, 18 July 2013
Brito Ferrinho Bexiga Villa-Nova v. Portugal, no. 69436/10, 1 December 2015
Bronda v. Italy, 9 June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V
Brüggemann and Scheuten v. Germany, no. 6959/75, Commission decision of 19 May 1976, DR 5
Buck v. Germany, no. 41604/98, 28 April 2005
Buckland v. the United Kingdom, no. 40060/08, 18 September 2012
Buckley v. the United Kingdom, 25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Buglov v. Ukraine, no. 28825/02, 10 July 2014
Burghartz v. Switzerland, 22 February 1994, Series A no. 280-B
Burlya and Others v. Ukraine, no. 3289/10, 6 November 2018
Buscemi v. Italy, no. 29569/95, ECHR 1999-VI
Butt v. Norway, no. 47017/09, 4 December 2012
Buturugă v. Romania, no. 56867/15, 11 February 2020
Bykov v. Russia [GC], no. 4378/02, 10 March 2009

—C—

[C. v. Belgium](#), 7 August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II
[C. v. Croatia](#), no. 80117/17, 8 October 2020
[C.A.S. and C.S. v. Romania](#), no. 26692/05, 20 March 2012
[C.C. v. Spain](#), no. 1425/06, 6 October 2009
[Călin and Others v. Romania](#), nos. 25057/11 and 2 others, 19 July 2016
[Calogero Diana v. Italy](#), 15 Nov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Camelia Bogdan v. Romania](#), no. 36889/18, 20 October 2020,
[Camenzind v. Switzerland](#), 16 Dec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I
[Camp and Bourimi v. the Netherlands](#), no. 28369/95, ECHR 2000-X
[Campbell v. the United Kingdom](#), 25 March 1992, Series A no. 233
[Canonne v. France](#) (dec.), no. 22037/13, 2 June 2015
[Çapın v. Turkey](#), no. 44690/09, 15 October 2019
[Carlson v. Switzerland](#), no. 49492/06, 6 November 2008
[Caruana v. Malta](#) (dec.), no. 41079/16, 15 May 2018
[Catt v. the United Kingdom](#), no. 43514/15, 24 January 2019
[Centre fo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v. Ukraine](#), no. 10090/16, 26 March 2020
[Cevat Özel v. Turkey](#), no. 19602/06, 7 June 2016
[Chadimová v. the Czech Republic](#), no. 50073/99, 18 April 2006
[Chaldayev v. Russia](#), no. 33172/16, 28 May 2019
[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no. 40183/07, 9 June 2016
[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7238/95, ECHR 2001-I
[Chappell v. the United Kingdom](#), 30 March 1989, Series A no. 152-A
[Chauvy and Others v. France](#), no. 64915/01, ECHR 2004-VI
[Chaykovskiy v. Ukraine](#), no. 2295/06, 15 October 2009
[Chbihi Loudoudi and Others v. Belgium](#), no. 52265/10, 16 December 2014
[Chelu v. Romania](#), no. 40274/04, 12 January 2010
[Cherkun v. Ukraine](#), (dec.), no. 59184/09, 12 March 2019
[Chernenko and Others v. Russia](#) (dec.), nos. 4246/14 and 5 other applicants, 5 February 2019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no. 13216/05, ECHR 2015
[Chiş v. Romania](#) (dec.), no. 55396/07, 9 September 2014
[Chishti v. Portugal](#) (dec.), no. 57248/00, 2 October 2003
[Christie v. the United Kingdom](#), no. 21482/93, Commission decision of 27 June 1994, DR 78-B
[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8957/95, ECHR 2002-VI
[Chukayev v. Russia](#), no. 36814/06, 5 November 2015
[Čiapas v. Lithuania](#), no. 4902/02, 16 November 2006
[Çiçek and Others v. Turkey](#) (dec.), no. 44837/07, 4 February 2020
[Cincimino v. Italy](#), no. 68884/13, 28 April 2016
[Cînta v. Romania](#), no. 3891/19, 18 February 2020
[Ciszewski v. Poland](#) (dec.), no. 38668/97, 13 July 2004
[Ciubotaru v. Moldova](#), no. 27138/04, 27 April 2010
[Ciupercescu v. Romania \(no. 3\)](#), nos. 41995/14 and 50276/15, 7 January 2020
[Coban v. Spain](#) (dec.), no. 17060/02, 25 September 2006
[Codarcea v. Romania](#), no. 31675/04, 2 June 2009
[Codona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85/05, 7 February 2006
[Concetta Schembri v. Malta](#) (dec.), no. 66297/13, 19 September 2017

Connors v. the United Kingdom, no. 66746/01, 27 May 2004
Convertito and Others v. Romania, nos. 30547/14 and 4 others, 3 March 2020
Copland v. the United Kingdom, no. 62617/00, ECHR 2007-I
Cordella and Others v. Italy, nos. 54414/13 and 54264/15, 24 January 2019
Coşcodar v. Romania (dec.), no. 36020/06, 9 March 2010
Cossey v. the United Kingdom, 27 September 1990, Series A no. 184
Cotleţ v. Romania, no. 38565/97, 3 June 2003
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no. 40454/07, ECHR 2015 (extracts)
Ćosić v. Croatia, no. 28261/06, 15 January 2009
Costa and Pavan v. Italy, no. 54270/10, 28 August 2012
Costello-Roberts v. the United Kingdom, 25 March 1993, Series A no. 247-C
Coster v. the United Kingdom [GC], no. 24876/94, 18 January 2001
Courte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479/06, 4 November 2008
Craxi v. Italy (no. 2), no. 25337/94, 17 July 2003
Crémieux v. France, 25 February 1993, Series A no. 256B
Croni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5848/03, 6 June 2004
Csoma v. Romania, no. 8759/05, 15 January 2013
Cvijetić v. Croatia, no. 71549/01, 26 February 2004
Cyprus v. Turkey [GC], no. 25781/94, 10 May 2001

—D—

D. and Others v. Belgium (dec.), no. 29176/13, 8 July 2014
D v. France, no. 11288/18, 16 July 2020
D.L. v. Bulgaria, no. 7472/14, 19 May 2016
Dadouch v. Malta, no. 38816/07, 20 July 2010
Daniliuc v. Romania (dec.), no. 7262/06, 2 October 2012
Daviso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52990/08, 2 March 2010
De Souza Ribeiro v. France [GC], no. 22689/07, ECHR 2012
Deés v. Hungary, no. 2345/06, 9 November 2010
DELTA PEKÁRNY a.s. v. the Czech Republic, no. 97/11, 2 October 2014
Demades v. Turkey, no. 16219/90, 31 July 2003
Demir v. Turkey, no. 58402/09, 10 January 2017
Demirtepe v. France, no. 34821/97, ECHR 1999IX (extracts)
Demopoulos and Others v. Turkey (dec.) [GC], nos. 46113/99 and 7 others, ECHR 2010
Denisov v. Ukraine [GC], no. 76639/11, 25 September 2018
Diamante and Pelliccioni v. San Marino, no. 32250/08, 27 September 2011
Di Giovine v. Italy, no. 39920/98, 26 July 2001
Di Sarno and Others v. Italy, no. 30765/08, 10 January 2012
Di Trizio v. Switzerland, no. 7186/09, 2 February 2016
Dickson v. the United Kingdom [GC], no. 44362/04, ECHR 2007-V
Dimcho Dimov v. Bulgaria, no. 57123/08, 16 December 2014
Doerga v. the Netherlands, no. 50210/99, 27 April 2004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no. 62649/10, 26 April 2016
Domenichini v. Italy, 15 Nov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Đorđević v. Croatia, no. 41526/10, ECHR 2012
Dragan Petrović v. Serbia, no. 75229/10, 14 April 2020

Dragojević v. Croatia, no. 68955/11, 15 January 2015
Dragoş Ioan Rusu v. Romania, no. 22767/08, 31 October 2017
Drakšas v. Lithuania, no. 36662/04, 31 July 2012
Draon v. France (just satisfaction – striking out) [GC], no. 1513/03, ECHR 2006I-X
Drašković v. Montenegro, no. 40597/17, 9 June 2020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no. 30499/03, 10 February 2011
Dubská and Krejzová v. the Czech Republic [GC], nos. 28859/11 and 28473/12, 15 November 2016
Dudchenko v. Russia, no. 37717/05, 7 November 2017
Dudgeon v. the United Kingdom, 22 October 1981, Series A no. 45
Dumitru Popescu v. Romania (no. 2), no. 71525/01, 26 April 2007
Dupate v. Latvia, no. 18068/11, 17 March 2011
Đurđević v. Croatia, no. 52442/09, ECHR 2011 (extracts)
Durisotto v. Italy (dec.), no. 62804/13, 6 May 2014
Dzemyuk v. Ukraine, no. 42488/02, 4 September 2014

—E—

E.B. v. France [GC], no. 43546/02, 22 January 2008
Ebcin v. Turkey, no. 19506/05, 1 February 2011
Egill Einarsson v. Iceland, no. 24703/15, 7 November 2017
Ekinci and Akalin v. Turkey, no. 77097/01, 30 January 2007
Elberte v. Latvia, no. 61243/08, ECHR 2015
El Boujaïdi v. France, 26 Sept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no. 39630/09, ECHR 2012
Elli Poluhas Dödsbo v. Sweden, no. 61564/00, ECHR 2006I
Elsholz v. Germany [GC], no. 25735/94, ECHR 2000-VIII
Emonet and Others v. Switzerland, no. 39051/03, 13 December 2007
Enea v. Italy [GC], no. 74912/01, ECHR 2009
Erdem v. Germany, no. 38321/97, ECHR 2001VII (extracts)
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3564/11, 28 May 2013
El Boujaïdi v. France, 26 Sept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no. 39630/09, ECHR 2012
Elli Poluhas Dödsbo v. Sweden, no. 61564/00, ECHR 2006I
Elsholz v. Germany [GC], no. 25735/94, ECHR 2000-VIII
Emonet and Others v. Switzerland, no. 39051/03, 13 December 2007
Enea v. Italy [GC], no. 74912/01, ECHR 2009
Erdem v. Germany, no. 38321/97, ECHR 2001VII (extracts)
Eremia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3564/11, 28 May 2013
Eriksson v. Sweden, 22 June 1989, Series A no. 156
Ernst and Others v. Belgium, no. 33400/96, 15 July 2003
Ernst August von Hannover v. Germany, no. 53649/09, 19 February 2015
Eryiğit v. Turkey, no. 18356/11, 10 April 2018
Estate of Kresten Filtenborg Mortensen v. Denmark (dec.), no. 1338/03, ECHR 2006-V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no. 6339/05, ECHR 2007-I
Evers v. Germany, no. 17895/14, 28 May 2020

—F—

Fadeyeva v. Russia, no. 55723/00, ECHR 2005-IV
Fägerskiöld v. Sweden (dec.), no. 37664/04, 26 February 2008
Fawsie v. Greece, no. 40080/07, 28 October 2010
Faulkner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7471/97, 18 September 2001
Fazıl Ahmet Tamer v. Turkey, no. 6289/02, 5 December 2006
Feldman v. Ukraine (no. 2), no. 42921/09, 12 January 2012
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no. 56030/07, ECHR 2014 (extracts)
Firma EDV für Sie, EfS Elektronische Datenverarbeitung Dienstleistungs GmbH v. Germany (dec.), no. 32783/08, 2 September 2014
F.J.M. v. the United Kingdom (dec.), no. 76202/16, 29 November 2018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nos. 3675/04 and 23264/04, 13 December 2012
Folgerø and Others v. Norway [GC], no. 15472/02, ECHR 2007-III
Foulon and Bouvet v. France, nos. 9063/14 and 10410/14, 21 July 2016
Foxley v. the United Kingdom, no. 33274/96, 20 June 2000
Fraile Iturralde v. Spain (dec.), no. 66498/17, 7 May 2019
Frâncu v. Romania, no. 69356/13, 13 October 2020
Frankowski v. Poland (dec.), no. 25002/09, 20 September 2011
Frérot v. France, no. 70204/01, 12 June 2007
Fretté v. France, no. 36515/97, ECHR 2002-I
Frien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s. 16072/06 and 27809/08, 24 November 2009
Fröhlich v. Germany, no. 16112/15, 26 July 2018
Funke v. France, 25 February 1993, Series A no. 256A
Furlepá v. Poland (dec.), no. 62101/00, 18 March 2008
Fürst-Pfeifer v. Austria, nos. 33677/10 and 52340/10, 17 May 2016

—G—

G.B. v. Lithuania, no. 36137/13, 19 January 2016
G.N. v. Poland, no. 2171/14, 19 July 2016
G.S. v. Georgia, no. 2361/13, 21 July 2015
G.S.B. v. Switzerland, no. 28601/11, 22 December 2015
Gagiu v. Romania, no. 63258/00, 24 February 2009
Galev and Others v. Bulgaria (dec.), no. 18324/04, 29 September 2009
Galović v. Croatia (dec.), no. 54388/09, 5 March 2013
Gar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9793/17, 27 June 2017
Gardel v. France, no. 16428/05, ECHR 2009
Garib v. the Netherlands [GC], no. 43494/09, ECHR 2017
Garnaga v. Ukraine, no. 20390/07, 16 May 2013
Gas and Dubois v. France (dec.), no. 25951/07, 31 August 2010
Gas and Dubois v. France, no. 25951/07, 15 March 2012
Gaskin v. the United Kingdom, 7 July 1989, Series A no. 160
Gaughran v. the United Kingdom, no. 45245/15, 13 February 2020
Genovese v. Malta, no. 53124/09, 11 October 2011
Georgel and Georgeta Stoicescu v. Romania, no. 9718/03, 26 July 2011
Ghoumid and Others v. France, nos. 52273/16 and 4 others, 25 June 2020

Giacomelli v. Italy, no. 59909/00, ECHR 2006-XII
Gillan and Quinton v. the United Kingdom, no. 4158/05, ECHR 2010 (extracts)
Gillberg v. Sweden [GC], no. 41723/06, 3 April 2012
Gillow v. the United Kingdom, 24 November 1986, Series A no. 109
Giorgi Nikolaishvili v. Georgia, no. 37048/04, 13 January 2009
Giorgioni v. Italy, no. 43299/12, 15 September 2016
Girard v. France, no. 22590/04, 30 June 2011
Gladysheva v. Russia, no. 7097/10, 6 December 2011
Glaisen v. Switzerland (dec.), no. 40477/13, 25 June 2019
Glass v. the United Kingdom, no. 61827/00, ECHR 2004-II
Gnahoré v. France, no. 40031/98, ECHR 2000-IX
Godelli v. Italy, no. 33783/09, 25 September 2012
Golder v. the United Kingdom, 21 February 1975, Series A no. 18
Golovan v. Ukraine, no. 41716/06, 5 July 2012
Gorlov and Others v. Russia, nos. 27057/06 and 2 others, 2 July 2019
Gough v. the United Kingdom, no. 49327/11, 28 October 2014
Gözüm v. Turkey, no. 4789/10, 20 January 2015
Grace v. the United Kingdom, no. 11523/85, Commission report of 15 December 1988
Grant v. the United Kingdom, no. 32570/03, ECHR 2006VII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no. 18215/06, 12 May 2009
Greuter v. the Netherlands (dec.), no. 40045/98, 19 March 2002
Grimkovskaya v. Ukraine, no. 38182/03, 21 July 2011
Guerra and Others v. Italy, 19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Guillot v. France, 24 Octo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Guimon v. France, no. 48798/14, 11 April 2019
Gül v. Switzerland, 19 February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
Gülen v. Turkey (dec.), no. 38197/16 and 5 others, 8 September 2020
Gutsanovi v. Bulgaria, no. 34529/10, ECHR 2013 (extracts)
Güzel Erdagöz v. Turkey, no. 37483/02, 21 October 2008

—H—

H.E. v. Turkey, no. 30498/96, 22 December 2005
H.M. v. Turkey, no. 34494/97, 8 August 2006
Haas v. the Netherlands, no. 36983/97, ECHR 2004-I
Haas v. Switzerland, no. 31322/07, ECHR 2011
Haase v. Germany, no. 11057/02, ECHR 2004-III (extracts)
Haddad v. Spain, no. 16572/17, 18 June 2019
Hadri-Vionnet v. Switzerland, no. 55525/00, 14 February 2008
Hadzhieva v. Bulgaria, no. 45285/12, 1 February 2018
Hajduová v. Slovakia, no. 2660/03, 30 November 2010
Halabi v. France, no. 66554/14, 16 May 2019
Haldimann and Others v. Switzerland, no. 21830/09, ECHR 2015
Halford v. the United Kingdom, 25 June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II*
Hämäläinen v. Finland [GC], no. 37359/09, ECHR 2014
Hambardzumyan v. Armenia, no. 43478/11, 5 December 2019
Hamesevic v. Denmark (dec.), no. 25748/15, 16 May 2017

Hanzelkovi v. the Czech Republic, no. 43643/10, 11 December 2014
Haralambie v. Romania, no. 21737/03, 27 October 2009
Hardy and Maile v. the United Kingdom, no. 31965/07, 14 February 2012
Harroudj v. France, no. 43631/09, 4 October 2012
Hartung v. France (dec.), no. 10231/07, 3 November 2009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36022/97, ECHR 2003-VIII
Havel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no. 23499/06, 21 June 2007
Heino v. Finland, no. 56720/09, 15 February 2011
Helander v. Finland (dec.), no. 10410/10, 10 September 2013
Henry Kismoun v. France, no. 32265/10, 5 December 2013
Herczegfalvy v. Austria, 24 September 1992, Series A no. 244
Hirtu and Others v. France, no. 24720/13, 14 May 2020
Hode and Abdi v. the United Kingdom, no. 22341/09, 6 November 2012
Hofmann v. Germany (dec.), no. 1289/09, 23 February 2010
Hoffmann v. Austria, 23 June 1993, Series A no. 255-C
Høiness v. Norway, no. 43624/14, 19 March 2019
Hokkanen v. Finland, 23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9-A
Hoti v. Croatia, no. 63311/14, 26 April 2018
Howard v. the United Kingdom, no. 10825/84, Commission decision of 18 October 1985, DR 52
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nos. 47039/11 and 358/12, ECHR 2012 (extracts)
Hromadka and Hromadkova v. Russia, no. 22909/10, 11 December 2014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nos. 24816/14 and 25140/14, 10 March 2020
Huvig v. France, 24 April 1990, Series A no. 176-B



I. v. the United Kingdom [GC], no. 25680/94, 11 July 2002
I.G. and Others v. Slovakia, no. 15966/04, 13 November 2012
I.M. v. Switzerland, no. 23887/16, 9 April 2019
I.S. v. Germany, no. 31021/08, 5 June 2014
Iambor v. Romania (no. 1), no. 64536/01, 24 June 2008
İbrahim Keskin v. Turkey, no. 10491/12, 27 March 2018
Idalov v. Russia [GC], no. 5826/03, 22 May 2012
Iglesias Gil and A.U.I. v. Spain, no. 56673/00, ECHR 2003-V
Ignaccolo-Zenide v. Romania, no. 31679/96, ECHR 2000-I
Igors Dmitrijevs v. Latvia, no. 61638/00, 30 November 2006
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no. 48787/99, ECHR 2004-VII
Iliya Stefanov v. Bulgaria, no. 65755/01, 22 May 2008
Ilya Lyapin v. Russia, no. 70879/11, 30 June 2020
Iordachi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25198/02, 10 February 2009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8 January 1978, Series A no. 25
İrfan Güzel v. Turkey, no. 35285/08, 7 February 2017
Irina Smirnova v. Ukraine, no. 1870/05, 13 October 2016
Işıldak v. Turkey, no. 12863/02, 30 September 2008
Ivan Atanasov v. Bulgaria, no. 12853/03, 2 December 2010
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no. 46577/15, 21 April 2016
Ivanov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29908/11, 21 January 2016

—J—

J.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45/10, 3 March 2015
Jacquier v. France (dec.), no. 45827, 1 September 2009
Jäggi v. Switzerland, no. 58757/00, ECHR 2006-X
Jakovljević v. Serbia (dec.), 5158/12, 13 October 2020
Jane Smith v. the United Kingdom [GC], no. 25154/94, 18 January 2001
Jankauskas v. Lithuania, no. 59304/00, 24 February 2005
Jankauskas v. Lithuania (no. 2), no. 50446/09, 27 June 2017
Jansen v. Norway, no. 2822/16, 6 September 2018
J.B. and Others v. Hungary (dec.), no. 45434/12, 27 November 2018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ECHR 2016
Jeunesse v. the Netherlands [GC], no. 12738/10, 3 October 2014
Jishkariani v. Georgia, no. 18925/09, 20 September 2018
Jöcks v. Germany (dec.), no. 23560/02, 23 March 2006
Joanna Szulc v. Poland, no. 43932/08, 13 November 2012
Johansen v. Norway, 7 August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II
Johansson v. Finland, no. 10163/02, 6 September 2007
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18 December 1986, Series A no. 112
Jolie and Others v. Belgium, no. 11418/85, Commission decision of 14 May 1986, DR 47
Jovanovic v. Sweden, no. 10592/12, 22 October 2015
Jucius and Juciuvienė v. Lithuania, no. 14414/03, 25 November 2008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no. 38342/05, 13 July 2017
Jurica v. Croatia, no. 30376/13, 2 May 2017

—K—

K2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2387/13, 7 February 2017
K.A. v. Finland, no. 27751/95, 14 January 2003
K.H. and Others v. Slovakia, no. 32881/04, ECHR 2009 (extracts)
K.J. v. Poland, no. 30813/14, 1 March 2016
and T. v. Finland [GC], no. 25702/94, ECHR 2001-VII
K.S. and M.S. v. Germany, no. 33696/11, 6 October 2016
K.U. v. Finland, no. 2872/02, ECHR 2008
Kaboğlu and Oran v. Turkey, nos. 1759/08 and 2 others, 30 October 2018
Kacper Nowakowski v. Poland, no. 32407/13, 10 January 2017
Kahn v. Germany, no. 16313/10, 17 March 2016
Kalucza v. Hungary, no. 57693/10, 24 April 2012
Kaftailova v. Latvia (striking out) [GC], no. 59643/00, 7 December 2007
Karabeyoğlu v. Turkey, no. 30083/10, 7 June 2016
Karassev v. Finland (dec.), no. 31414/96, ECHR 1999-II
Karner v. Austria, no. 40016/98, ECHR 2003I-X
Karrer v. Romania, no. 16965/10, 21 February 2012
Ka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37341/06, 21 September 2010
Kearns v. France, no. 35991/04, 10 January 2008
Keegan v. Ireland, 26 May 1994, Series A no. 290
Keegan v. the United Kingdom, no. 28867/03, ECHR 2006-X

Kennedy v. the United Kingdom, no. 26839/05, 18 May 2010
Kent Pharmaceuticals Limite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9355/03, 11 October 2005
Kepeneklioğlu v. Turkey, no. 73520/01, 23 January 2007
Keslassy v. France (dec.), no. 51578/99, ECHR 2002-I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s. 65286/13 and 57270/14, 10 January 2019
Khamidov v. Russia, no. 72118/01, 15 November 2007
Khan v. the United Kingdom, no. 35394/97, ECHR 2000-V
Kharlamov v. Russia, no. 27447/07, 8 October 2015
Khmel v. Russia, no. 20383/04, 12 December 2013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s. 11082/06 and 13772/05, 25 July 2013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 2), nos. 42757/07 and 51111/07, 14 January 2020
Kholodov v. Ukraine (dec.), no. 64953/14, 23 August 2016
Khoroshenko v. Russia [GC], no. 41418/04, ECHR 2015
Khuzhin and Others v. Russia, no. 13470/02, 23 October 2008
Kilyen v. Romania, no. 44817/04, 25 February 2014
Király and Dömötör v. Hungary, no. 10851/13, 17 January 2017
Kirdök and Others v. Turkey, no. 14704/12, 3 December 2019
Klass and Others v. Germany, 6 September 1978, Series A no. 28
Klaus Müller v. Germany, no. 24173/18, 19 November 2020
Klyakhin v. Russia, no. 46082/99, 30 November 2004
Knecht v. Romania, no. 10048/10, 2 October 2012
Koceniak v. Poland (dec.), no. 1733/06, 17 June 2014
Koch v. Germany, no. 497/09, 19 July 2012
Kolesnichenko v. Russia, no. 19856/04, 9 April 2009
Kolonja v. Greece, no. 49441/12, 19 May 2016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nos. 17423/05 and 5 others 28 February 2012
Konovalova v. Russia, no. 37873/04, 9 October 2014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no. 30078/06, ECHR 2012 (extracts)
Kopf and Liberda v. Austria, no. 1598/06, 17 January 2012
Kopp v. Switzerland, 25 March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Korelc v. Slovenia, no. 28456/03, 12 May 2009
Kornakovs v. Latvia, no. 61005/00, 15 June 2006
Kotilainen and Others v. Finland, no. 62439/12, 17 September 2020
Kotiy v. Ukraine, no. 28718/09, 5 March 2015
Koychev v. Bulgaria, no. 32495/15, 13 October 2020
Kozak v. Poland, no. 13102/02, 2 March 2010
Kroo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27 October 1994, Series A no. 297-C
Kruglov and Others v. Russia, nos. 11264/04 and 15 others, 4 February 2020
Kruslin v. France, 24 April 1990, Series A no. 176-A
Kruškić v. Croatia (dec.), no. 10140/13, 25 November 2014
Krušković v. Croatia, no. 46185/08, 21 June 2011
Kryvitska and Kryvitskyy v. Ukraine, no. 30856/03, 2 December 2010
Kryževičius v. Lithuania, no. 67816/14, 11 December 2018
Kuppinger v. Germany, no. 62198/11, 15 January 2015
Kučera v. Slovakia, no. 48666/99, 17 July 2007
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no. 26828/06, ECHR 2012 (extracts)
Kurkowski v. Poland, no. 36228/06, 9 April 2013

Kurochkin v. Ukraine, no. 42276/08, 20 May 2010
Kutzner v. Germany, no. 46544/99, ECHR 2002-I
Kvasnica v. Slovakia, no. 72094/01, 9 June 2009
Kwaky-Nti and Dufie v. the Netherlands (dec.), no. 31519/96, 7 November 2000
Kwiek v. Poland, no. 51895/99, 30 May 2006
Kyrtatos v. Greece, no. 41666/98, ECHR 2003VI (extracts)



L. v. Finland, no. 25651/94, 27 April 2000
L. v. Lithuania, no. 27527/03, ECHR 2007I-V
L. v. the Netherlands, no. 45582/99, ECHR 2004I-V
L.M. v. Italy, no. 60033/00, 8 February 2005
Labassee v. France, no. 65941/11, 26 June 2014
Labita v. Italy [GC], no. 26772/95, ECHR 2000I-V
La Parola and Others v. Italy (dec.), no. 39712/98, 30 November 2000
Lambert v. France, 24 August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
Larkos v. Cyprus [GC], no. 29515/95, ECHR 1999-I
Laurent v. France, no. 28798/13, 24 May 2018
Laskey, Jaggard and Brown v. the United Kingdom, 19 Februar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
Lavents v. Latvia, no. 58442/00, 28 November 2002
Lazoriva v. Ukraine, no. 6878/14, 17 April 2018
Leander v. Sweden, 26 March 1987, Series A no. 116
Lebois v. Bulgaria, no. 67482/14, 19 October 2017
Lee v. the United Kingdom [GC], no. 25289/94, 18 January 2001
Leotsakos v. Greece, no. 30958/13, 4 October 2018
Levakovic v. Denmark, no. 7841/14, 23 October 2018
Levchuk v. Ukraine, no. 17496/19, 3 September 2020
Leveau and Fillon v. France, nos. 63512/00 and 63513/00, ECHR 2005-X
Lewit v. Austria, no. 4782/18, 10 October 2019
Libert v. France, no. 588/13, 22 February 2018
Libert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58243/00, 1 July 2008
Lind v. Russia, no. 25664/05, 6 December 2007
Lipkowsky and Mc Cormack v. Germany (dec.), no. 26755/10, 18 January 2011
Liblik and others v. Estonia, nos. 173/15 and 5 others, 28 May 2019
Loizidou v. Turkey (merits),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Losonci Rose and Rose v. Switzerland, no. 664/06, 9 November 2010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no. 56080/13, 15 December 2015
López Guió v. Slovakia, no. 10280/12, 3 June 2014
López Ostra v. Spain, 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3-C
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nos. 1874/13 and 8567/13, 17 October 2019
Lozovyye v. Russia, no. 4587/09, 24 April 2018
Lüdi v. Switzerland, 15 June 1992, Series A no. 238
Luordo v. Italy, no. 32190/96, ECHR 2003-IX
Lustig-Prean and Beckett v. the United Kingdom, nos. 31417/96 and 32377/96, 27 September 1999

—M—

[M.A. K. and R.K. v. the United Kingdom](#), no. 45901/05, 23 March 2010
[M.v. Switzerland](#), no. 41199/06, 26 April 2011
[M. and Others v. Bulgaria](#), no. 41416/08, 26 July 2011
[M.B.v. France](#), no. 22115/06, 17 December 2009
[M.C.v. Bulgaria](#), no. 39272/98, ECHR 2003-XII
[M.D.and Others v. Malta](#), no. 64791/10, 17 July 2012
[M.G. v. the United Kingdom](#), no. 39393/98, 24 September 2002
[M.K.v. France](#), no. 19522/09, 18 April 2013
[M. and M. v. Croatia](#), no. 10161/13, ECHR 2015 (extracts)
[M.L.and W.W. v. Germany](#), nos. 60798/10 and 65599/10, 28 June 2018
[M.M.v. the Netherlands](#), no. 39339/98, 8 April 2003
[M.M. v. Switzerland](#), no. 59006/18, 8 December 2020
[M.M.v. the United Kingdom](#), no. 24029/07, 13 November 2012
[M.N.and Others v. San Marino](#), no. 28005/12, 7 July 2015
[M.W.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1313/02, 23 June 2009
[M.G.C. v. Romania](#), no. 61495/11, 15 March 2016
[M.S. v. Sweden](#), 27 August 1997, § 35, Reports 1997-IV
[Macalin Moxamed Sed Dahir v. Switzerland](#) (dec.), no. 12209/10, 15 September 2015
[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nos. 4824/06 and 15512/08, 22 April 2010
[Maire v. Portugal](#), no. 48206/99, ECHR 2003-VII
[Maksym v. Poland](#), no. 14450/02, 19 December 2006
[Malec v. Poland](#), no. 28623/12, 28 June 2016
[Malone v. the United Kingdom](#), 2 August 1984, Series A no. 82
[Mamchur v. Ukraine](#), no. 10383/09, 16 July 2015
[Man and Others v. Romania](#) (dec.), no. 39273/07
[Mandet v. France](#), no. 30955/12, 14 January 2016
[Manuello and Nevi v. Italy](#), no. 107/10, 20 January 2015
[Marchiani v. France](#) (dec.), no. 30392/03, 27 May 2008
[Marckx v. Belgium](#), 13 June 1979, Series A no. 31
[Margareta and Roger Andersson v. Sweden](#), no. 12963/87, 25 February 1992
[Margulev v. Russia](#), no. 15449/09, 8 October 2019
[Marinis v. Greece](#), no. 3004/10, 9 October 2014
[Martínez Martínez v. Spain](#), no. 21532/08, 18 October 2011
[Martínez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no. 61654/08, 3 July 2012
[Maslák and Michálková v. the Czech Republic](#), no. 52028/13, 14 January 2016
[Maslov v. Austria](#) [GC], no. 1638/03, ECHR 2008
[Matheron v. France](#), no. 57752/00, 29 March 2005
[Maumousseau and Washington v. France](#), no. 39388/05, 6 December 2007
[Maurice v. France](#) [GC], no. 11810/03, ECHR 2005-IX
[Mazurek v. France](#), no. 34406/97, ECHR 2000-II
[McCallum v. the United Kingdom](#), 30 August 1990, Series A no. 183
[McCann v. the United Kingdom](#), no. 19009/04, ECHR 2008
[McDonald v. the United Kingdom](#), no. 4241/12, 20 May 2014
[McGinley and Egan v. the United Kingdom](#), 9 June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I

McKay-Kopecka v. Poland (dec.), no. 45320/99, 19 September 2006
McLeod v. the United Kingdom, 23 Septem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I
McMichael v. the United Kingdom, 24 February 1995, Series A no. 307B
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no 17224/11, ECHR 2017
Mehmet Ali Ayhan and Others v. Turkey, nos. 4536/06 and 53282/07, 4 June 2019
Mehmet Nuri Özen and Others v. Turkey, nos. 15672/08 and 10 others, 11 January 2011
Mehmet Salih and Abdülsamet Çakmak v. Turkey, no. 45630/99, 29 April 2004
Mehmet Ulusoy and Others v. Turkey, no. 54969/09, 25 June 2019
Meimanis v. Latvia, no. 70597/11, 21 July 2015
Mengesha Kimfe v. Switzerland, no. 24404/05, 29 July 2010
Menesson v. France, no. 65192/11, ECHR 2014 (extracts)
Menteş and Others v. Turkey, 28 Nov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I
Mentzen v. Latvia (dec.), no. 71074/01, ECHR 2004-XII
Messina v. Italy, 26 February 1993, Series A no. 257-H
Messina v. Italy (no. 2), no. 25498/94, ECHR 2000-X
M.P. and Others v. Bulgaria, no. 22457/08, 15 November 2011
MGN Limited v. the United Kingdom, no. 39401/04, 18 January 2011
Mialhe v. France (no. 1), 25 February 1993, Series A no. 256-C
Michael Edward Cooke v. Austria, no. 25878/94, 8 February 2000
Michaud v. France, no. 12323/11, ECHR 2012
Mifsud v. Malta, no. 62257/15, 29 January 2019
Mikolajová v. Slovakia, no. 4479/03, 18 January 2011
Mikulić v. Croatia, no. 53176/99, ECHR 2002I
Mileva and Others v. Bulgaria, nos. 43449/02 and 21475/04, 25 November 2010
Miljević v. Croatia, no. 68317/13, 25 June 2020
Milka v. Poland, no. 14322/12, 15 September 2015
Mirgadirov v. Azerbaijan and Turkey, no. 62775/14, 17 September 2020
Mitchell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0447/98, 24 November 1998
Mityanin and Leonov v. Russia, nos. 11436/06 and 22912/06, 7 May 2019
Mitov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53565/13, 16 April 2015
Mockutė v. Lithuania, no. 66490/09, 27 February 2018
Modestou v. Greece, no. 51693/13, 16 March 2017
Moisejevs v. Latvia, no. 64846/01, 15 June 2006
Mokrani v. France, no. 52206/99, 15 July 2003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nos. 41138/98 and 64320/01, ECHR 2005VII (extracts)
Mólka v. Poland (dec.), no. 56550/00, 11 April 2006
Monory v. Romania and Hungary, no. 71099/01, 5 April 2005
Moreno Gómez v. Spain, no. 4143/02, ECHR 2004X
Moretti and Benedetti v. Italy, no. 16318/07, 27 April 2010
Mosley v. the United Kingdom, no. 48009/08, 10 May 2011
Moustahi v. France, no. 9347/14, 25 June 2020
Moustaquim v. Belgium, 18 February 1991, Series A no. 193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no. 11138/10, ECHR 2016
Mubilanzila Mayeka and Kaniki Mitunga v. Belgium, no. 13178/03, ECHR 2006XI
Murray v. the United Kingdom, 28 October 1994, Series A no. 300A
Mustafa and Armağan Akın v. Turkey, no. 4694/03, 6 April 2010

Mutlu v. Turkey, no. 8006/02, 10 October 2006

—N—

Nada v. Switzerland [GC], no. 10593/08, ECHR 2012

Narinen v. Finland, no. 45027/98, 1 June 2004

Nasirov and Others v. Azerbaijan, no. 58717/10, 20 February 2020

Nasr and Ghali v. Italy, no. 44883/09, 23 February 2016

National Federation of Sportspersons' Associations and Unions (FNASS) and Others v. France, nos. 48151/11 and 77769/13, 18 January 2018

Naydyon v. Ukraine, no. 16474/03, 14 October 2010

Nazarenko v. Russia, no. 39438/13, ECHR 2015 (extracts)

Ndidi v. the United Kingdom, no. 41215/14, 14 September 2017

Negrepontis-Giannisis v. Greece, no. 56759/08, 3 May 2011

Neulinger and Shuruk v. Switzerland [GC], no. 41615/07, ECHR 2010

Nicklinson and Lamb v. the United Kingdom (dec.), nos. 2478/15 and 1787/15, 23 June 2015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no. 41720/13, 25 June 2019

Niedbała v. Poland, no. 27915/95, 4 July 2000

Niemietz v. Germany, 16 December 1992, Series A no. 251B

Nikolyan v. Armenia, no. 74438/14, 3 October 2019

Nikowitz and 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no. 5266/03, 22 February 2007

Nitecki v. Poland (dec.), no. 65653/01, 21 March 2002

Noack and Others v. Germany (dec.), no. 46346/99, ECHR 2000VI

Nove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nos. 25163/08 and 2 others, 13 September 2016

Novoseletskiy v. Ukraine, no. 47148/99, ECHR 2005-II (extracts)

Nusret Kaya and Others v. Turkey, nos. 43750/06 and 4 others, 22 April 2014

Nuutinen v. Finland, no. 32842/96, ECHR 2000-VIII

Nylund v. Finland (dec.), no. 27110/95, ECHR 1999-VI

—O—

O. v. the United Kingdom, 8 July 1987, Series A no. 120

Öcalan v. Turkey (no. 2), nos. 24069/03 and 3 others, 18 March 2014

Odièvre v. France [GC], no. 42326/98, ECHR 2003-III

Oleksandr Volkov v. Ukraine, no. 21722/11, ECHR 2013

Oleynik v. Russia, no. 23559/07, 21 June 2016

Oliari and Others v. Italy, nos. 18766/11 and 36030/11, 21 July 2015

Olsson v. Sweden (no. 1), 24 March 1988, Series A no. 130

Olsson v. Sweden (no. 2), 27 November 1992, Series A no. 250

Oluić v. Croatia, no. 61260/08, 20 May 2010

Omofefe v. Spain, no. 69339/16, 23 June 2020

Öneryıldız v. Turkey [GC], no. 48939/99, 30 November 2004

Onur v. the United Kingdom, no. 27319/07, 17 February 2009

O'Rourke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9022/97, 26 June 2001

Orlandi and Others v. Italy, nos. 26431/12 and 3 others, 14 December 2017

Orlić v. Croatia, no. 48833/07, 21 June 2011

Osman v. Denmark, no. 38058/09, 14 June 2011

Osman v. the United Kingdom, 28 Octo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II
Ospina Vargas v. Italy, no. 40750/98, 14 October 2004
Ozdil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42305/18, 11 June 2019
Özpinar v. Turkey, no. 20999/04, 19 October 2010

—P—

P. and S. v. Poland, no. 57375/08, 30 October 2012
P.B. and J.S. v. Austria, no. 18984/02, 22 July 2010
P.G. and J.H. v. the United Kingdom, no. 44787/98, ECHR 2001-IX
P.N. v. Germany, no. 74440/17, 11 June 2020
P.T.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1122/12, 26 May 2020
Pannullo and Forte v. France, no. 37794/97, ECHR 2001-X
Panteleyenkov v. Ukraine, no. 11901/02, 29 June 2006
Pajić v. Croatia, no. 68453/13, 23 February 2016
Palfreeman v. Bulgaria (dec.), no. 59779/14, 16 May 2017
Palomo Sánchez and Others v. Spain [GC], nos. 28955/06 and 3 others, ECHR 2011
Paposhvili v. Belgium [GC], no. 41738/10, ECHR 2016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no. 25358/12, 24 January 2017
Parrillo v. Italy [GC], no. 46470/11, ECHR 2015
Paulić v. Croatia, no. 3572/06, 22 October 2009
Paulík v. Slovakia, no. 10699/05, ECHR 2006
Peck v. the United Kingdom, no. 44647/98, ECHR 2003-I
Peers v. Greece, no. 28524/95, ECHR 2001-III
Penchevi v. Bulgaria, no. 77818/12, 10 February 2015
Pentiacova and Others v. Moldova (dec.), no. 14462/03, ECHR 2005I
Perkins and R. v. the United Kingdom, nos. 43208/98 and 44875/98, 22 October 2002
Peruzzo and Martens v. Germany (dec.), nos. 7841/08 and 57900/12, 4 June 2013
Peters v. the Netherlands, no. 21132/93, Commission decision of 6 April 1994
Petithory Lanzmann v. France (dec.), no. 23038/19, 12 November 2019
Petri Sallinen and Others v. Finland, no. 50882/99, 27 September 2005
Petrina v. Romania, no. 78060/01, 14 October 2008
Petrov v. Bulgaria, no. 15197/02, 22 May 2008
Petrov and X v. Russia, no. 23608/16, 23 October 2018
Petrova v. Latvia, no. 4605/05, 24 June 2014
Petrovic v. Austria, 27 March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Pfeifer v. Austria, no. 12556/03, 15 November 2007

—P—

Phinikaridou v. Cyprus, no. 23890/02, 20 December 2007
Pibernik v. Croatia, no. 75139/01, 4 March 2004
Piechowicz v. Poland, no. 20071/07, 17 April 2012
Pihl v. Sweden (dec.), no. 74742/14, 7 February 2017
Pini and Others v. Romania, nos. 78028/01 and 78030/01, ECHR 2004-V (extracts)
Pla and Puncernau v. Andorra, no. 69498/01, ECHR 2004-VIII
Platini v. Switzerland (dec.), no. 526/18, 11 February 2020

Płoski v. Poland, no. 26761/95, 12 November 2002
Polanco Torres and Movilla Polanco v. Spain, no. 34147/06, 21 September 2010
Poleshchuk v. Russia, no. 60776/00, 7 October 2004
Poltoratskiy v. Ukraine, no. 38812/97, 29 April 2003
Polyakh and Others v. Ukraine, nos. 58812/15 and 4 others, 17 October 2019
Polyakova and Others v. Russia, nos. 35090/09 and 3 others, 7 March 2017
Popa v. Romania (dec.), no. 4233/09, 18 June 2013
Popov v. France, nos. 39472/07 and 39474/07, 19 January 2012
Popovi v. Bulgaria, no. 39651/11, 9 June 2016
*Pormes v. the Netherlands**, no. 25402/14, 28 July 2020
Posevini v. Bulgaria, no. 63638/14, 19 January 2017
Powell and Rayner v. the United Kingdom, 21 February 1990, Series A no. 172
Prado Bugallo v. Spain, no. 58496/00, 18 February 2003
Pretty v. the United Kingdom, no. 2346/02, ECHR 2002-III
Prokopovich v. Russia, no. 58255/00, ECHR 2004XI (extracts)
Putistin v. Ukraine, no. 16882/03, 21 November 2013
Puzinas v. Lithuania (no. 2), no. 63767/00, 9 January 2007

—R—

R. B. v. Hungary, no. 64602/12, 12 April 2016
R. C. and V.C. v. France, no. 76491/14, 12 July 2016
R.E. v. the United Kingdom, no. 62498/11, 27 October 2015
R.K. and A.K. v. the United Kingdom, no. 38000/05, 30 September 2008
R.K. and Others v. France, no. 68264/14, 12 July 2016
R.L. and Others v. Denmark, no. 52629/11, 7 March 2017
R.M.S. v. Spain, no. 28775/12, 18 June 2013
R.R. v. Poland, no. 27617/04, ECHR 2011 (extracts)
R.S. v. Poland, no. 63777/09, 21 July 2015
Raban v. Romania, no. 25437/08, 26 October 2010
Rachwalski and Ferenc v. Poland, no. 47709/99, 28 July 2009
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nos. 37685/10 and 22768/12, 20 March 2018
Ramadan v. Malta, no. 76136/12, ECHR 2016 (extracts)
Raninen v. Finland, 16 Dec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I
Rasmussen v. Denmark, 28 November 1984, Series A no. 87
Ratushna v. Ukraine, no. 17318/06, 2 December 2010
Raw and Others v. France, no. 10131/11, 7 March 2013
Rees v. the United Kingdom, 17 October 1986, Series A no. 106
Reklos and Davourlis v. Greece, no. 1234/05, 15 January 2009
Resin v. Russia, no. 9348/14, 18 December 2018
Ribić v. Croatia, no. 27148/12, 2 April 2015
Rinau v. Lithuania, no. 10926/09, 14 January 2020
Robathin v. Austria, no. 30457/06, 3 July 2012
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no. 32555/96, ECHR 2005-X
Rodina v. Latvia, nos. 48534/10 and 19532/15, 14 May 2020
Rodrigues da Silva and Hoogkamer v. the Netherlands, no. 50435/99, ECHR 2006-I
Rodzevillo v. Ukraine, no. 38771/05, 14 January 2016

Roemen and Schmit v. Luxembourg, no. 51772/99, 25 September 2003
Roman Zakharov v. Russia [GC], no. 47143/06, ECHR 2015
Rotaru v. Romania [GC], no. 28341/95, ECHR 2000-V
Rouiller v. Switzerland, no. 3592/08, 22 July 2014
Rousk v. Sweden, no. 27183/04, 25 July 2013

—S—

S. v. Switzerland, 28 November 1991, Series A no. 220
Saber v. Norway, no. 459/18, 17 December 2020
S.A.S. v. France [GC], no. 43835/11, ECHR 2014 (extracts)
Šantare and Labazņikovs v. Latvia, no. 34148/07, 31 March 2016
S. and Marper v. the United Kingdom [GC], nos. 30562/04 and 30566/04, ECHR 2008
S.H. and Others v. Austria [GC], no. 57813/00, ECHR 2011
S.H. v. Italy, no. 52557/14, 13 October 2015
Sabanchiyeva and Others v. Russia, no. 38450/05, 6 June 2013
Sagan v. Ukraine, no. 60010/08, 23 October 2018
Sahin v. Germany [GC], no. 30943/96, ECHR 2003-VIII
Şahin Kuş v. Turkey, no. 33160/04, 7 June 2016
Saint-Paul Luxembourg S.A. v. Luxembourg, no. 26419/10, 18 April 2013
Salman v. Turkey [GC], no. 21986/93, ECHR 2000-VII
Salontaji-Drobnjak v. Serbia, no. 36500/05, 13 October 2009
Salvetti v. Italy (dec.), no. 42197/98, 9 July 2002
Sandra Janković v. Croatia, no. 38478/05, 5 March 2009
Santos Nunes v. Portugal, no. 61173/08, 22 May 2012
Sargsyan v. Azerbaijan [GC], no. 40167/06, ECHR 2015
Sarumi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3279/98, 26 January 1999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no. 931/13, ECHR 2017 (extracts)
Saviny v. Ukraine, no. 39948/06, 18 December 2008
Sayoud v. France, no. 70456/01, 26 July 2007
Schalk and Kopf v. Austria, no. 30141/04, ECHR 2010
Schemkamper v. France, no. 75833/01, 18 October 2005
Schönenberger and Durmaz v. Switzerland, 20 June 1988, Series A no. 137
Sciacca v. Italy, no. 50774/99, ECHR 2005-I
Schlumpf v. Switzerland, no. 29002/06, 8 January 2009
Scozzari and Giunta v. Italy [GC], nos. 39221/98 and 41963/98, ECHR 2000-VIII
Segerstedt-Wiberg and Others v. Sweden, no. 62332/00, ECHR 2006VII
Selçuk and Asker v. Turkey, 24 April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Sen v. the Netherlands, no. 31465/96, 21 December 2001
Sentges v. the Netherlands (dec.), no. 27677/02, 8 July 2003
Serçe v. Romania, no. 35049/08, 30 June 2015.
Şerife Yiğit v. Turkey [GC], no. 3976/05, 2 November 2010
Sérvulo & Associados Sociedade de Advogados, RL and Others v. Portugal, no. 27013/10, 3 September 2015
Sevastianov v. Russia, no. 37024/02, 22 April 2010
Shavdarov v. Bulgaria, no. 3465/03, 21 December 2010

Shchebetov v. Russia, no. 21731/02, 10 April 2012
Sheffield and Horsham v. the United Kingdom, 30 Jul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
Shelley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3800/06, 4 January 2008
Shebashov v. Latvia (dec.), no. 50065/99, 9 November 2000
Sh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5201/11, 20 October 2015
Shimovolos v. Russia, no. 30194/09, 21 June 2011
Shofman v. Russia, no. 74826/01, 24 November 2005
Shopov v. Bulgaria, no. 11373/04, 2 September 2010
Shtukaturov v. Russia, no. 44009/05, ECHR 2008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nos. 55480/00 and 59330/00, ECHR 2004-VIII
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5 March 1983, Series A no. 61
Siskina and Siskins v. Latvia (dec.), no. 59727/00, 8 November 2001
Slivenko v. Latvia [GC], no. 48321/99, ECHR 2003X
Slivenko and Others v. Latvia (dec.) [GC], no. 48321/99, ECHR 2002II (extracts)
Smirnov v. Russia, no. 71362/01, 7 June 2007
Smirnova v. Russia, nos. 46133/99 and 48183/99, ECHR 2003IX (extracts)
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nos. 33985/96 and 33986/96, ECHR 1999-VI
Soares de Melo v. Portugal, no. 72850/14, 16 February 2016
Société Canal Plus and Others v. France, no. 29408/08, 21 December 2010
Société Colas Est and Others v. France, no. 37971/97, 16 April 2002.
Sodan v. Turkey, no. 18650/05, 2 February 2016
Söderman v. Sweden [GC], no. 5786/08, ECHR 2013
Solcan v. Romania, no. 32074/14, 8 October 2019
Solomon v. the Netherlands (dec.), no. 44328/98, 5 September 2000
Solska and Rybicka v. Poland, nos. 30491/17 and 31083/17, 20 September 2018
Sommer v. Germany, no. 73607/13, 27 April 2017
Sommerfeld v. Germany [GC], no. 31871/96, ECHR 2003-VIII (extracts)
Sõro v. Estonia, no. 22588/08, 3 September 2015
Sousa Goucha v. Portugal, no. 70434/12, 22 March 2016
Spyra and Kranczkowski v. Poland, no. 19764/07, 25 September 2012
S.S. v. Slovenia, no. 40938/16, 30 October 2018
Steeg v. Germany (dec.), nos. 9676/05 and 2 others, 3 June 2008
Stenegry and Adam v. France (dec.), no. 40987/05, 22 May 2007
Stjerna v. Finland, 25 November 1994, Series A no. 299-B
Storck v. Germany, no. 61603/00, ECHR 2005-V
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no. 37283/13, 10 September 2019
Strömblad v. Sweden, no. 3684/07, 5 April 2012
Strumia v. Italy, no. 53377/13, 23 June 2016
Strunjak and Others v. Croatia (dec.), no. 46934/99, ECHR 2000-X
Stübing v. Germany, no. 43547/08, 12 April 2012
Sudita Keita v. Hungary, no. 42321/15, 12 May 2020
Surikov v. Ukraine, no. 42788/06, 26 January 2017
Surugiu v. Romania, no. 48995/99, 20 April 2004
Suß v. Germany, no. 40324/98, 10 November 2005
Suur v. Estonia, no. 41736/18, 20 October 2020
S.V. v. Italy, no. 55216/08, 11 October 2018

Szabó and Vissy v. Hungary, no. 37138/14, 12 January 2016
Szafrański v. Poland, no. 17249/12, 15 December 2015
Szula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8727/06, 4 January 2007
Szuluk v. the United Kingdom, no. 36936/05, ECHR 2009

—T—

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GC], no. 28945/95, ECHR 2001V (extracts)
T.S. and J.J. v. Norway (dec.), no. 15633/15, 11 October 2016
Taddeucci and McCall v. Italy, no. 51362/09, 30 June 2016
Tamiz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877/14, 19 September 2017
Tamosiu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62002/00, ECHR 2002-VIII
Tanda-Muzinga v. France, no. 2260/10, 10 July 2014
Tapia Gasca and D. v. Spain, no. 20272/06, 22 December 2009
Tasev v. North Macedonia, no. 9825/13, 16 May 2019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no. 46117/99, ECHR 2004-X
Tătar v. Romania, no. 67021/01, 27 January 2009
Taylor-Sabori v. the United Kingdom, no. 47114/99, 22 October 2002
Telegraaf Media Nederland Landelijke Media B.V.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no. 39315/06, 22 November 2012
Ternovszky v. Hungary, no. 67545/09, 14 December 2010
Tiğ v. Turkey (dec.), no. 8165/03, 24 May 2005
Tlapak and Others v. Germany, no. 11308/16 and 11344/16, 22 March 2018
Tolić and Others v. Croatia (dec.), no. 13482/15, 4 June 2019
Toma v. Romania, no. 42716/02, 24 February 2009
Topčić-Rosenberg v. Croatia, no. 19391/11, 14 November 2013
Touroude v. France (dec.), no. 35502/97, 3 October 2000
Tsonyo Tsonev v. Bulgaria, no. 33726/03, 1 October 2009
Tsvetelin Petkov v. Bulgaria, no. 2641/06, 15 July 2014
Turek v. Slovakia, no. 57986/00, ECHR 2006II (extracts)
Tysiąg v. Poland, no. 5410/03, ECHR 2007-I

—U—

Udeh v. Switzerland, no. 12020/09, 16 April 2013
Udovičić v. Croatia, no. 27310/09, 24 April 2014
Uj v. Hungary, no. 23954/10, 19 July 2011
Ulemek v. Croatia, no. 21613/16, 31 October 2019
Ünal Tekeli v. Turkey, no. 29865/96, ECHR 2004X (extracts)
Üner v. the Netherlands [GC], no. 46410/99, ECHR 2006-XII
Unuane v. the United Kingdom, no. 80343/17, 24 November 2020
Usmanov v. Russia, no. 43936/18, 22 December 2020
Ustyantsev v. Ukraine, no. 3299/05, 12 January 2012
Uzun v. Germany, no. 35623/05, ECHR 2010 (extracts)

—V—

V. C. v. Slovakia, no. 18968/07, ECHR 2011 (extracts)
V. D. and Others v. Russia, no. 72931/10, 9 April 2019
V.P. v. Russia, no. 61362/12, 23 October 2014
Valašinas v. Lithuania, no. 44558/98, ECHR 2001-VIII
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nos. 29381/09 and 32684/09, ECHR 2013 (extracts)
Valenzuela Contreras v. Spain, 30 Jul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
Van der Heijden v. the Netherlands [GC], no. 42857/05, 3 April 2012
Van der Velden v. the Netherlands (dec.), no. 29514/05, ECHR 2006-XV
Van der Ven v. the Netherlands, no. 50901/99, ECHR 2003-II
Van Kuck v. Germany, no. 35968/97, 12 June 2003
Van Rossem v. Belgium, no. 41872/98, 9 December 2004
Van Vondel v. the Netherlands, no. 38258/03, 25 October 2007
Varga v. Romania, no. 73957/01, 1 April 2008
Vasileva v. Bulgaria, no. 23796/10, 17 March 2016
Vasiliy Ivashchenko v. Ukraine, no. 760/03, 26 July 2012
Vasylychuk v. Ukraine, no. 24402/07, 13 June 2013
Versini-Campinchi and Crasnianski v. France, no. 49176/11, 16 June 2016
Vetsev v. Bulgaria, no. 54558/15, 2 May 2019
Vicent Del Campo v. Spain, no. 25527/13, 6 November 2018
Vidish v. Russia, no. 53120/08, 15 March 2016
Vilnes and Others v. Norway, nos. 52806/09 and 22703/10, 5 December 2013
Vinci Construction and GTM Génie Civil et Services v. France, nos. 63629/10 and 60567/10, 2 April 2015
Vinks and Ribicka v. Latvia, no. 28926/10, 30 January 2020
Vintman v. Ukraine, no. 28403/05, 23 October 2014
Vladimir Ushakov v. Russia, no. 15122/17, 18 June 2019
Vlasov v. Russia, no. 78146/01, 12 June 2008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nos. 40660/08 and 60641/08, ECHR 2012
Vorozhba v. Russia, no. 57960/11, 16 October 2014
Vrzić v. Croatia, no. 43777/13, 12 July 2016
Vučina v. Croatia (dec.), no. 58955/13, 24 September 2019
Vukota-Bojić v. Switzerland, no. 61838/10, 18 October 2016

—W—

W. v. the Netherlands (dec.), no. 20689/08, 20 January 2009
W. v. the United Kingdom, 8 July 1987, Series A no. 121
Wagner and J.M.W.L. v. Luxembourg, no. 76240/01, 28 June 2007
Wainwright v. the United Kingdom, no. 12350/04, ECHR 2006-X
Wakefield v. the United Kingdom, no. 15817/89, Commission decision of 1 October 1990, DR 66
Walkuska v. Poland (dec.), no. 6817/09, 29 April 2008
Wallová and Walla v. the Czech Republic, no. 23848/04, 26 October 2006
Ward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1888/03, 9 November 2004
Weber and Saravia v. Germany (dec.), no. 54934/00, ECHR 2006XI
Welsh and Silva Canha v. Portugal, no. 16812/11, 17 September 2013

Wetjen and Others v. Germany, nos. 68125/14 and 72204/14, 22 March 2018
Wieser and Bicos Beteiligungen GmbH v. Austria, no. 74336/01, 16 October 2007
William Faulkner v. the United Kingdom, no. 37471/97, 4 June 2002
Winterstein and Others v. France, no. 27013/07, 17 October 2013
Wisse v. France, no. 71611/01, 20 December 2005
Wolland v. Norway, no. 39731/12, 17 May 2018
Wunderlich v. Germany, no. 18925/15, 10 January 2019

—X—

X and Others v. Austria [GC], no. 19010/07, ECHR 2013
X and Others v. Russia, nos. 78042/16 and 66158/14, 14 January 2020
X and Y v. Belgium, no. 8962/80, Commission decision of 13 May 1982, DR 28
X and Y v. the Netherlands, 26 March 1985, Series A no. 91
X v. Austria, no. 8278/78, Commission decision of 13 December 1979, DR 154
X v. Latvia [GC], no. 27853/09, ECHR 2013
X v. the United Kingdom, no. 7308/75, Commission decision of 12 October 1978, DR 16
X, Y and Z v. the United Kingdom, 22 April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I
X. v. Finland, no. 34806/04, 3 July 2012
X. v. France no. 9993/82, Commission decision of 5 October 1982, DR 31
X. v. Iceland, no. 6825/74, Commission decision of 18 May 1976, DR 5
X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29683/16, 17 January 2019
Xavier Da Silveira v. France, no. 43757/05, 21 January 2010

—Y—

Y v. Bulgaria, no. 41990/18, 20 February 2020
Y. v. Slovenia, no. 41107/10, ECHR 2015 (extracts)
Y. v. Turkey (dec.), no. 648/10, 17 February 2015
Y.C. v. the United Kingdom, no. 4547/10, 13 March 2012
Y.F. v. Turkey, no. 24209/94, ECHR 2003-IX
Y.I. v. Russia, no. 68868/14, 25 February 2020
Y.T. v. Bulgaria, no. 41701/16, 9 July 2020
Y.Y. v. Turkey, no. 14793/08, ECHR 2015 (extracts)
Yefimenko v. Russia, no. 152/04, 12 February 2013
Yevgeniy Dmitriyev v. Russia, no. 17840/06, 1 December 2020
Yevgeniy Zakharov v. Russia, no. 66610/10, 14 March 2017
Yıldırım v. Austria (dec.), no. 34308/96, 19 October 1999
Yılmaz v. Turkey, no. 36607/06, 4 June 2019
Yonchev v. Bulgaria, no. 12504/09, 7 December 2017
Yordanova and Others v. Bulgaria, no. 25446/06, 24 April 2012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no. 68817/14, 16 July 202

—Z—

Z v. Finland, 25 Februar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29392/95, ECHR 2001-V
Z.H. and R.H. v. Switzerland, no. 60119/12, 8 December 2015
Zaieț v. Romania, no. 44958/05, 24 March 2015
Zakharchuk v. Russia, no. 2967/12, 17 December 2019
Zammit Maempel v. Malta, no. 24202/10, 22 November 2011
Zehentner v. Austria, no. 20082/02, 16 July 2009
Zehnalova and Zehnal v. the Czech Republic (dec.), no. 38621/97, 14 May 2002
Zelikha Magomadova v. Russia, no. 58724/14, §112, 8 October 2019
Zhou v. Italy, no. 33773/11, 21 January 2014
Znamenskaya v. Russia, no. 77785/01, 2 June 2005
Zorica Jovanović v. Serbia, no. 21794/08, ECHR 2013
Zubaľ v. Slovakia, no. 44065/06, 9 November 2010